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6. 12.





# C

# ontents

## 목 차

I. 가이드라인 개요 .....	4
II. 기본원칙 .....	6
III.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	12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12
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17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19
4.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	25
5.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 .....	30
6.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이전 .....	35
7.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 .....	38
8.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	49
9.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52
10. 개인(신용)정보의 파기(삭제) .....	56
11.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61
12. 개인(신용)정보의 유출(누설)시 조치 방법 .....	66
IV.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FAQ .....	74
V. 업종별 개인(신용)정보 처리 사례 .....	115
《참고》 신용정보 관련 법령집 .....	125

## 1. 발간 배경

###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11.3.29.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9.30. 시행)
- '14.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 ▣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11)과 금융관련 법령인 신용정보법('95), 금융실명법('97) 및 전자금융거래법('07)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음
- 그러나, '14.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 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이 보완되거나 새로이 도입됨
- 금융회사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을 정착시키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을 안내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

## 2. 발간 목적

### ▣ 금융업무 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지원

- 관계 법령의 제·개정 취지 및 내용, 업종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융업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준 제시

##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기준 및 종합 대책을 통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에 대한 유의사항 및 관련 질의 응답 사례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

## 3. 가이드라인 구성

-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및 보호원칙
  -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 :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위탁, 보관, 삭제·파기 등
  -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FAQ
  - 금융분야 업종별 개인(신용)정보 처리 사례
    - : 은행, 보험, 증권, 신용정보업 등
- 또한 참고자료로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소개

## 4. 가이드라인 활용 및 저작권 표시

- 본 가이드라인의 저작권은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있음
-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신용정보법 적용대상)를 대상으로 함
- 누구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안내 등의 목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인용·편집 포함) 할 수 있으며
  -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출처 및 저작권 표시

\* 출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6.12.)

## 1 법 적용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임을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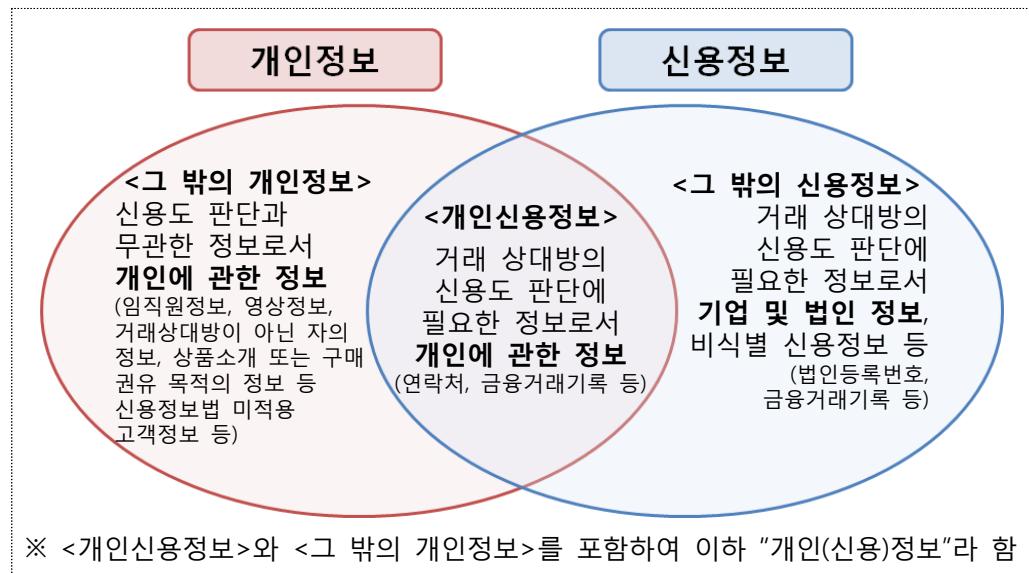
### 신용정보법 제3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개념 정리 및 법 적용 관계

### 1) 개념 구분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신용정보>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함

※ 위 그림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른 정보의 개념을 도식화한 것으로서 기타 금융 관계 법령(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음

-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이며,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 1.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에 관한 사항(2호~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

### 2.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 포함), 신용카드, 할부 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개인의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4.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 5. 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정보

- 개인과 관련한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한 정보 및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

**Q**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A** (법인의 정보)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지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에 관한 정보)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은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가 사업자 개인의 직업·소득수준·활동영역·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용되는 경우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이면서 동시에 사업자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집주소·휴대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출처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 【참고】 개인신용정보 정의 관련 참고 판례 발췌 :

〈서울고등법원 2010. 5. 10. 자 2009라1941 결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7호,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50조제1항제4호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동의 역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일반적·포괄적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동의로 해석되고, 채권자들이 제공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판매자의 판매정보는 같은 법 소정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판매자의 개인신용정보는 법률상 판매자가 구체적·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채무자가 임의로 제공하거나 사전에 일반적·포괄적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이 인정된다.

(이하 생략)

#### 【참고】 개인신용정보 종류 참고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과 결합되는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임

예를 들어, 성명, 연락처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며, 성명, 연락처와 거래금액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임

## 2) 적용 법률(신용정보법 적용대상)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적용

-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고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되,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적용

-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 (이하 ‘그 밖의 개인정보’라 한다)

- 은행법 등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 (예시) 은행법(§35의5), 자본시장법(§189), 금융지주회사법(§48의2) 등

- 신용정보 중 기업·법인에 관한 정보 및 비식별 신용정보 등(이하 ‘그 밖의 신용정보’라 한다)

-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되, 신용정보법 미적용 업종은 개별 법률 적용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계〉

구분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수집	개인정보 보호법 §15	신용정보법 §15, §16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15, §18	신용정보법 §32③·④, §33, §34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17, §18	신용정보법 §32, §34
고유식별정보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24	(수집시)신용정보법 §15, (이용·제공시)신용정보법 §32~§34
민감정보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23	(수집시)신용정보법 §16, (이용·제공시)신용정보법 §32~§34
위탁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27	신용정보법 §32
안전성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18⑤, §23②, §24③, §25⑥, §29	신용정보법 §19
신용정보활용체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법 §30	신용정보법 §3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31	신용정보법 §20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21	신용정보법 §20의2
유출(누설) 신고 및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35~§39	신용정보법 §35, §37, §38, §38의2, §38의3
	개인정보 보호법 §34	신용정보법 §39의2

### 3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

- 개인정보 처리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함
  -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이 법령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해당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처리 목적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 OECD 권고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일반 원칙을 아래와 같이 규정

#### 〈개인정보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OECD 가이드라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수집 제한의 원칙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안전성·최신성 보장	정보 정확성의 원칙
처리목적의 명확화	목적 명확화 원칙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이용 제한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안전 보호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공개의 원칙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 참여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책임의 원칙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적용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 제15조 및 제16조, 그 밖의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적용

※ 민감정보(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정보 등)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수집에 대하여는 본 가이드라인 4.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참조

### ▣ 개인(신용)정보 수집 원칙

- 개인(신용)정보 중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집 가능**
  - 단,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함
- ※ 위 내용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 3. 개인(신용)정보 제공 참조
-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
  - 정보주체에게 ①수집·이용의 목적, ②수집 항목, ③보유 및 이용기간, ④동의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 만14세 미만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금융회사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 외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한 정보(금융거래 내역 등)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행위에 해당
  - 따라서, 정보주체와의 계약 또는 거래에 불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15조)**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
- ②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 계좌이체거래를 위해서 수신자의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거래 체결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평가를 위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단 계약 미체결시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자체 없이 파기) 등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의식불명, 재난상태에 따른 고립, 주소불명, 연락처 불분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 ※ 다만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나 급박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④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 금융회사가 향후 소송이나 분쟁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제기 내역 및 대처 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등(단, 상당한 관련성과 합리적 범위 내의 수집에 한함)

##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 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 ① (필수항목) 이름, 고유식별정보, 집(직장) 주소, 연락처, 직업 등 공통 필수정보와 금융업권·상품별 필수정보를 구분
  - 질병보험 가입시 병력사항 등 업권·상품별 특수성에 따른 필수정보는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집
- ② (선택항목) 수집하는 목적과 제공처 등을 설명하고 동의하에 수집
  - 선택항목 동의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선택항목의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함

##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

- 금융회사가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함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 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해당 계약의 체결·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상품 소개·구매 권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필수정보로 볼 수 없음

### ※ (예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

- ◆ 필수정보
  - 공통 필수정보 : 이름, 고유식별정보, 집(직장) 주소, 연락처 등
  - 업권·상품별 필수정보 : 업권·상품별 특수성에 따른 필수정보(연소득 등 특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의 경우는 해당 가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 ◆ 선택정보
  -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 금리 혜택, 수수료 면제, 자산관리 등
  - 마케팅 홍보를 위한 정보 : 다른 상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권유 등

## ▣ 수집시 주의 사항

-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합리적으로 공정한 수단을 통해 수집하여야 함
  - 필요 최소한의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금융회사가 부담
- 금융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금융회사는 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됨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확실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등 신용정보법 제16조에 따라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

## ▣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 금융회사가 정보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회사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된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자에게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확인을 요청
- 개인(신용)정보의 부정수집에 가담하거나 부정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취득해서는 안 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집 출처 고지 의무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출처 등을 고지해야 함.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가 아닌 다른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이 적용 배제

##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서 등 서식 작성례

### ①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의 양식을 구분

☞ 별도의 양식으로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시)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로 양식 구분하여 각각 서명날인

### ②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을 최소화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당해 목적 수행에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항목은 삭제

### ③ 제3자 제공에 관한 고지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히 표시

예시) "관련 제휴사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 명을 기재, 특히 마케팅 목적 제공에 대하여는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

### ④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명확히 표시

☞ 제휴회사의 마케팅 활용 목적이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당해 제휴 회사가 그 개인(신용)정보를 보유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하여 명확히 기재  
예시) 거래종료 후 5년 또는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 ⑤ 글자크기, 줄 간격 등을 확대하는 등 정보주체가 읽기 쉽게 표기

예시) 항목구분 글자 최소 12p, 본문글자 최소 10p 및 줄간격 130% 이상 등

## 가독성 비교 예시

###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8p)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7p)

- 신용카드 이용 계약의 체결을 위한 본인 확인, 본인 신용조회,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카드내금 결제 등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6p)
- 2.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직장명, 부서, 직위, 주소 등), E-mail, (후대전화번호 등)
  - 농협 및 타금융회사와의 신용거래정보(본 등)의 이전·이후의 신용, 체크, 직불, 선불카드의 카드번호, 발급 및 해지·한도, 사용금액·기망점 구매 물품내역, 카드승인번호 등)의 실적을 포함한 카드 거래관련 정보 및 협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할부, 리스, 렌트, 채무보증현황 등)
  - 신용등급정보(재산, 체무, 소득, 납세실적 등)

###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13p)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12p)

- 신용카드 이용 계약의 체결을 위한 본인 확인,  
----(중략)---- 민원처리 등(10p)

#### 2.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적용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32조·제33조·제34조, 그 밖의 개인정보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적용

#### ①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한

-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목적외 이용 가능(신용정보법 제33조)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 각 호 참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알리고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
  - \*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개별적 동의 제외

- |  |
|--|
| ① 제공하는 자, ②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③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 ④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기관이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함

### [3] ‘그 밖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 수집 참조
-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로 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i><li>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li>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li><li>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li><li>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li>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i><li>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li>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ol> |
| ※ 4호~8호까지는 공공기관인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만 적용   |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적용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4조, 그 밖의 개인정보 제공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적용

#### 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신용정보법 제32조)
  - 동의를 받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  |
|--|
| ①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내용, |
| ④ 제공받는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동의를 얻는 수단은?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고 사후 고지
    - \* 유무선 통신에는 PDA, 스마트 폰 등 유무선 통신기기 활용 등 포함
  5. 그 밖에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 ※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함
- 다만,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동의 없이 제공 가능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지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자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자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 다만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일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음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또한,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을 통해 제공받는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함\*
  -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제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주체, 시기 및 방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공의 이유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7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시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열람가능토록 조치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다음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4.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	수임사실의 통지를 하는 때까지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시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열람가능토록 조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
5.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6.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7.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8.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10의2.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7호에 따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받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제3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
9. 신용정보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번제 의사 및 번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다음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시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열람가능토록 조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제공의 이유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
10.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
1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sup>주1)</sup>	
12.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sup>주1)</sup>	
13.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sup>주1)</sup>	
14.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15.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대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16.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sup>주2)</sup>	

주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자속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음

- 가.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시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다.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이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자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주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 가.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 나.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것을 정한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그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것을 정한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그 기한을 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한

## ②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제공(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목적외 제공은 별도 동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   |
|---|
| 1.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  |
|--|
|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4호~8호까지는 공공기관인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만 적용

- 위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 4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 적용 원칙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주민등록번호 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은 신용정보법 제1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적용

민감정보의 수집은 신용정보법 제1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적용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하여 신용정보법 제32조부터 제34조 적용

### 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가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고유식별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중 개인식별정보에 포함됨(신용정보법 제2조제2호 및 제34조, 시행령 제29조)

####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고유식별정보, 개인식별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고유식별정보 수집·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4조의2 적용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허용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리를 허용

-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등)는 금융실명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

### 국내거소신고번호의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국내 거소신고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하는 경우의 예

- 금융실명거래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실명)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를 위한 개인식별번호 처리(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음(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용정보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신용정보(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조항이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제공 가능 (3. 개인신용정보 제공 참조)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제공 가능한 경우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자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자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함)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등)는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상품소개 및 홍보 등)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 가능
-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이용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더라도 처리 불가능

## ② 민감정보의 처리

-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처리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법 제16조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가 금지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수집해서는 안 됨
  - 신용정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성생활정보 등도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 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수집 금지 정보에 해당

###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경우의 예

- 직업 등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당인·종교인임을 알게 되거나, 세금우대통장 개설을 통해 장애인·고엽제 피해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임을 알게 되는 등 간접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알게 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님
-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동의하에 수집 이용 가능
- 별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일반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인 동의 하에 수집 이용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의 민감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신용정보법에 따른 수집·조사 및 처리제한 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 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신용정보(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의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함
  - ※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공 가능<본 가이드라인 3. 개인신용정보 제공 참조>

### 보험업에서의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 부당이용 금지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적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타인 제공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보험업법 제177조)

### 보험업에서의 건강정보(진료기록) 제공

-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기를 청구받은 경우 그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이때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1항)

## 5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

### 적용 원칙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신용정보법 제17조가 적용되고, 그 밖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가 적용

※ 기타 금융관계 법령에서 업무위탁 관련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적용함

#### ①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업무 위탁

-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등을 지정한 자<sup>\*</sup>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 \*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한 자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자<sup>\*</sup>의 신용정보 처리 위탁시 금융위원회 보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 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암호화하거나 봉함(封緘)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연 1회 이상<sup>\*</sup> 교육하여야 함
  - \* 위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1회 이상
- 위탁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sup>\*</sup>를 받지 않아도 됨
  - \*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말하며, 본 가이드라인 3. 개인정보 제공 참조

-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에 따라 신용정보제공계약에 다음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함**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4)**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 마. 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 사항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1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이 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 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
  - 마.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3.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1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마.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가.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신용정보의 내용
  - 나.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라.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 마.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감독하는 사항(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등을 아래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
    - 1.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은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의 제3자에게 이전·제공 또는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
- 금융회사는 해당 업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 및 관리·감독 책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성격	신용정보법 제2조제1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
관리감독 책임	금융회사 자신(위탁자)이 관리감독 책임 부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가 관리감독 책임 부담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송업무 위탁</li> <li>- 전산센터 운영 위탁</li> <li>- 콜센터 · TM업무 아웃소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 사용시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항공사에 카드사용내역 제공</li> <li>- 대형마트에서 이벤트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후 보험회사 제공</li> <li>- 사업 · 업무 제휴* 등</li> </ul>
근거조항	신용정보법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신용정보법 제3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동의 여부	정보주체에게 내용을 공개 · 고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 "사업 · 업무 제휴"에서의 위탁과 제3자 제공 구분 : 제휴사가 단순히 금융회사를 대신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뿐 제공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리위탁에 해당하며,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② 그 밖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업무 위탁(개인정보 보호법)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방법

- 위탁업무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및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의 사항을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

- **제3자**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참고]** TM업무를 정보통신망법상 '취급 위탁'으로 판단한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08가합49696 판결 외 다수〉

'제3자 제공'과 '취급 위탁'은 모두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외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성격을 갖지만, 정보통신망법의 문언·규정 체계 및 외부로의 개인정보 제공을 위와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취급 위탁'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자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과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고, '제3자 제공'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자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이 타당하다. 즉, '취급 위탁'은 정보를 제공하는 측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3자 제공'은 정보를 제공받는 측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수탁자에 대한 감독 및 손해배상 책임

- 위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하는지 **감독**하여야 함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
- 따라서 수탁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탁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부담은 내부적으로 구상 가능

### 수탁자가 부담하는 주요 의무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됨
- 수탁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됨

## 6 영업양도·양수 등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이전

### 적용 원칙

영업양도·양수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할 경우 신용정보법 제32조가 적용되며, 그 밖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가 적용

#### ① 영업양도·양수시 ‘개인신용정보’ 이전

- 금융회사간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전 가능
-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 · 제7항에 따라 영업양도 · 분할 · 합병 등의 이유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함
  -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열람가능토록 조치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

<신용정보법에 따른 영업양도·분할 합병 등 개인정보 처리(제32조)>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⑤ <생략>

⑥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⑦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체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  |  |
|--|--|
| 1. 「은행법」에 따라 인기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 포함)                         | 11.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2. 금융지주회사  | 12.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 3. 한국산업은행  | 13.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4. 한국수출입은행   | 14.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 5. 농협은행  |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6. 중소기업은행  |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br>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br>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br>록을 한 자 포함) |
| 7. 한국주택금융공사  | 17. 기술신용보증기금   |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br>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br>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br>서대행회사 | 18. 신용보증기금   |
| 9.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19.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
| 10.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20. 한국무역보험공사   |
|  | 21.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 ② 영업양도·양수시 ‘그 밖의 개인정보’ 이전

- 영업 양도 등에 따라 ‘그 밖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 하려는 자가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이전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이전 가능
  -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전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게재(홈페이지 미운영시 사업장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이전받는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③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절차

- 양도자가 이전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양수자가 이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

III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 7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적용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보호법 제1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가 적용되며, 그 밖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가 적용

다만,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의무사항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가 적용

#### ▣ 개인신용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그 밖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16.1.1. 시행)에 따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sup>\*</sup>해야함
    - \* 단,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에서 정한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아울러,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사항 또한 준수하여야 함

####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적용 법령

- ▶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 ▶ 그 밖의 개인정보 :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금융실무상 개인신용정보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하나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면서 신용도 판단, 마케팅, 전자금융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정보를 구분하여 법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중 제정 취지나 내용이 사실상 일치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하나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도 각 법률의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 (예시)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작성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내부관리계획에 상응하는 내용을 포함해 작성한 후 수정 이력을 관리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산시스템 접속권한 부여·변경·말소 등의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등

#### <참고> 신용정보법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신용정보법 제20조제1항)
-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신용정보 회사등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 및 별표4의2)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한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내부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및 하위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됨
  - 내부관리규정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마련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그 특별한 사정을 내부관리규정에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마련한 내부관리규정이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4의2 참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와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비교 >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비 고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내부관리 계획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고시 §4①)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력 관리(고시 §4③)	• 내부관리규정 마련 (법 §20①, 규정 §22 및 별표4의2)	• 정부보호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 체계 등 계획 수립(법 제21의2④)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 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운용(규정 §19①) • 전산자료, 시스템, 해킹 및 악성코드 방 지 등 분야별 보호대책 수립(규정 §11 ~ §18)	• 주요 내용 사실상 일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4의2에 미반영 신용정보관리기준이 보다 엄격함)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필요최 소화 범위로 치등 부여(고시 §5①) • 인사이동시 자체없이 접근권한 변경 내역기록, 3년간 보관(규정 별표3 11-1-①) • 인사이동시 자체없이 접근권한 변경 내역기록, 3년간 보관(고시 §5②) • 개인정보보취급자별 별도의 사용자개정 별급 개인정보 개인정보취급자간 계정 공유금지 (고시 §5④)	• 신용정보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필요최소 한 인원에 부여(규정 별표3 11-1-①) • 인사이동시 자체없이 접근권한 변경 밀소, 내역기록, 3년간 보관(규정 별표3 11-1-②). ③ •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최소한 의 접근권한 부여, 권한부여 기록의 3년간 보관(규정 별표3 11-1-③) •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 로 치등 부여(규정 별표3 11-2-①)	• 업무담당자 이외의 자가 단말기를 무단 조작 못하도록 조치, 사용자계정과 비밀 번호 개인별 부여, 전산자료는 사용자 업 무별로 접근권한 통제(규정 §12~§13) • 단말기에 이동자 정보 등 주요정보 보관 금지, 단말기 공유 금지(규정 §13) • 전출·퇴직 등 인사조치 시 지체없이 해당 사용자 계정삭제·계정사용 중지·공동사용 상이) • 계정 변경 등 접근통제(규정 §13) • 사용자 계정 공동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별 사용자역 권리(규정 §13)	• 주요 내용 사실상 일치 (단, 사용자 계정 공 동사용을 예외적으 로 허용하는 것은 상이)
비밀번호 관리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고시 §5⑤) • 비밀번호 입력오류시 접근제한 등 기술 적 조치(고시 §5⑥)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규정 별표3 11-1- ⑤)	• 비밀번호 작성규칙 및 입력오류시 접속차 단 등 조치(규정 §32~§33)	• 주요 내용 사실상 일치
접근통제 조치	• 접근통제 조치(침입차단, 침입탐지 조치 포함)(고시 §6①) • 외부 접속시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인증수단 또는 인증수단 적 용(고시 §6②) • 개인정보가 열람권한 없는 자에게 개도지 않도록 시스템 및 PC 설정(규정 별표3 11-1-⑥)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및 컴퓨터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의한 개인신	•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 설치(규정 별표3 11-1- ④) • 개인신용정보가 열람권한 있는 자에게 개도지 않도록 시스템 및 PC 설정(규정 별표3 11-1-⑥)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 영,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 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규정 §15①) •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	• 주요 내용 사실상 일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신용정보업감독 규정이 보다 엄격함)

구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6(3)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업법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비 고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 접근통제 조치(고시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 없으면 자동 접속차단 조치(고시 §6(5))</li> <li>• 업무용컴퓨터만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접근통제시스템 적용제외, 이 경우 OS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사용(고시 §6(6))</li> </ul> </li> <li>•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비밀번호(고시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호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 송수신사,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해 전달시 암호화(고시 §7(2))</li> <li>- 비밀번호, 비밀번호(고시 §7(3))</li> <li>- 고유식별정보는 일별형 암호화(고시 §7(9))</li> <li>-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구간, DMZ구간 저장시 암호화, 내부망 구간 저장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는 암호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여부 및 범위결정(고시 §7(4))</li> <li>- 인자한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고시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자한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파기 등 절차 수립(고시 §7(5)(6))</li> <li>- 내부용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고유 식별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인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고시 §7(7))</li> </ul> </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정보처리시스템,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 관리모형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규정 별표3 II-1-⑦)</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규정 §15(1))</li> <li>• 정보보호시스템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방지시스템 포함(규정 별표 2, 2-다. 정보보호시스템 분류표)</li> </ul>	
개인정보 암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호화 대상 : 비밀번호, 비아이디, 개인신용정보, 개인정보 등 (규정 별표3 II-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호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 송수신시 보안 서버 등 통해 암호화(규정 별표3 II-3-②)</li> <li>-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 본인인증정보 저장 시 조회할 수 없도록 처리, 조회가 불가 피한 경우 조치시유·내용 등 기록·관리(규정 별표3 II-3-①)</li> <li>- 개인신용정보 PC 저장시 암호화(II-3-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시, 보조저장매체 등한 전달시 암호화(II-3-④)</li> <li>- 주민등록번호의 인터넷 구간, DMZ구간 저장시 암호화(규정 별표3 II-3-④)</li> <li>- 주민등록번호를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II-3-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를 업무용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저장·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인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규정 별표3 II-3-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작성기관과 신용조회기관과 서로</li> </ul> </li> </ul> </li> </ul> </li> </ul> </li> </ul> </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내용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호화 대상, 보조저장매체 전달시 암호화, 비밀번호 일정, 암호화 적용은 디소인, 우탁사 및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식별정보 제공 시 암호화 등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의 내부망 저장시 암호화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고시 준수 필요</li> </ul>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비 고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접속기록	<p>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인전한 암호화(규정 별표3 Ⅱ-3-⑤)를 사용하여 암호화(규정 별표3 Ⅱ-3-⑥) -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수탁자에게 제공(규정 별표3 Ⅱ-3-⑥)</p> <p>•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 정보조회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조회내용, 접속방법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적 기록 및 1년 이상 보존(규정 §13)</p> <p>•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 접속일시, 접속자, 접근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전신자료 사용일시, 사용자 및 자료 내용 확인기록, 사용자 로그 인, 애니메이션, 로그 등)</p> <p>• 개인신용정보보처리시스템 처리일시, 처리나역 등 접속기록 저장,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규정 별표3 Ⅱ-2-①)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 접속기록 유변조회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보관(규정 별표3 Ⅱ-2-②)</p> <p>• 개인정보보관기록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고시 §8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복으로 1회 이상 접검하고,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고시 §8③)</p>	<p>• 개인신용정보 처리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을 기록 관리(Ⅱ-5-②)</p> <p>•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Ⅲ-2-②)</p> <p>•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조회시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Ⅲ-2-③)</p>	<p>•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 정보조회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조회내용, 접속방법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적 기록 및 1년 이상 보존(규정 §13)</p> <p>•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 접속일시, 접속자, 접근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전신자료 사용일시, 사용자 및 자료 내용 확인기록, 사용자 로그 인, 애니메이션, 로그 등)</p> <p>•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Operating System) 계정에 대한 접근 기록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수립(규정 §14) 내부 IP주소 및 외부 IP주소의 인터넷 접속내용을 1년 이상 별도로 기록저장 §18)</p> <p>• 이용자 중요원장에 직접 접근하여 중요원장을 조회·수정·삭제·설정하는 경우에는 차업자 및 차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규정 §27)</p> <p>• 모든 일괄작업의 작업내용을 기록·관리(규정 §30)</p>	<p>•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기록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수립(규정 §14) 내부 IP주소 및 외부 IP주소의 인터넷 접속내용을 1년 이상 별도로 기록저장 및 신용정보업감독 규정이 보다 엄격함)</p> <p>• 주요 내용 시설상 일자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신용정보업감독 규정이 보다 엄격함)</p>
보안 프로그램	<p>•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백신소프트웨어 설치(규정 별표3 Ⅱ-4-①)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보안 프로그램 지동</p>	<p>•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수립·운용규정 §16)</p>	<p>• 주요 내용 시설상 일자</p>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업법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비 고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업데이트 공지시 즉시 업데이트 등 실시(고시 §9)	경보 발령 또는 업데이트 공지시 즉시 간단·점검(규정 별표3 II-4-②)	- 악성코드 감식·치료프로그램은 최신상태로 유지, 악성코드 감염에 대비하여 복구 절차 마련, 중요 단말기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매일 점검 등	- 악성코드 감식·치료프로그램은 최신상태로 유지, 악성코드 감염에 대비하여 복구 절차 마련, 중요 단말기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매일 점검 등	• 주요 내용 사실상 일치 (전자금융감독규정이 보다 엄격함)
단말기 보호	• 관리용 단말기 인가받은 지만 접근·본래 목적 사용 등 안전조치(고시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담당자만 주자, 외부 반출 등 금지된 중요단말기 지정 등 안전조치(규정 §12)</li> </ul>	• 주요 내용 사실상 일치 (전자금융감독규정이 보다 엄격함)
물리적 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문서 보관장소 출입통제, 짐금장치 보관 등(규정 §22의4)</li> <li>•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절차(고시 §11(1))</li> <li>•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신용평가모형 또는 무형관리모형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규정 별표3 II-1-⑦)</li> <li>•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는 보안장치에 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고시 §1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신실 위치 건물에 대해 경비원에 의한 통제 및 출입통제 보안대책 수립(규정 §9)</li> <li>• 전신실 상사출입은 사전 등록자에 허용하고, 그 밖의 출입자는 책임자에게 출입하고 관리기록부 기록·보관, 상사출입자 이외의 출입자에 대해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시스템 설치 등 적절한 조치(규정 §11)</li> <li>• 전신자료 및 전신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규정 §13)</li> <li>• 정기적으로 보조기기장비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책임자의 확인(규정 §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신실 상사출입은 사전 등록자에 허용하고, 그 밖의 출입자는 책임자에게 출입하고 관리기록부 기록·보관, 상사출입자 이외의 출입자에 대해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시스템 설치 등 적절한 조치(규정 §11)</li> <li>• 전신장소에 보관하는 내용은 다소 상이)</li> </ul>	• 주요 내용 사실상 일치 (전자금융감독규정이 보다 엄격함)
비상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재난 위기대응절차 마련 및 정기적 점검(고시 §12)</li> <li>• 재해·재난 백업 및 복구 계획 마련(고시 §12)</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재해·피업·태러 등에 대한 대응절차, 백업 또는 재해복구계획 마련 및 모의훈련 실시 등(규정 §23)</li> </ul>	• 주요 내용 사실상 일치 (전자금융감독규정이 보다 엄격함)
개인정보 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 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 이용,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등을 통해 파기(고시 §13(1))</li> <li>• 개인정보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치(규정 별표4의2 1.6.)</li> <li>• 상거래관계 종료 후 최장 5년 내 신용정보 삭제(규정 별표4의2 1.7.)</li> <li>- 선택적 신용정보는 3개월 내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시에 대비하여 보조기기장비 등 전산장비에 대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수립·운용(규정 §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기에 대한 세부 기준과 관련, 안전 확보 조치기준 (행자부 고시) 준수 필요</li> </ul>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비 고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출력·복사 인 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적 파일 형태 : 개인정보를 삭제 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li> <li>-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해당 부분을 미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적 신용정보는 현재 기래 중인 고객 정보와 분리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흐름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규정 별표3 11-5-①)</li> <li>• 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준수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 구축(규정 별표3 11-5-③)</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신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규정 §3)</li> <li>•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규정 §13)</li> </ul>
개인신용 정보 이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 관리모형 개발 위탁시 개인정보 제공금지, 모형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번역하여 제공 후 개별wise 즉시 삭제(규정 별표3 III-3-①)</li> <li>• 신용조회회사가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 모형을 개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형 개발 또는 검증 등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실제 개인정보 사용 금지(규정 별표 3 III-3-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규정 §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필요</li> </ul>

## ▣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바이오정보 : 지문, 얼굴, 흥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행동적 특징 정보
  - 신용정보법 제19조에 따라 제정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은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을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및 시기

- ▶ 암호화 적용 대상 :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 암호화 적용 시기 :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시 : '17.1.1.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시 : '18.1.1.
- ※ 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시행 : '16.1.1.

- 금융회사는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본인인증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암호화 처리하여 조회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조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회사유·내용 등을 기록·관리할 필요

## <금융회사의 관련 법령상 암호화 의무 적용 주요내용>

근거법	구 분	암호화 적용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li> </ul>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장시 암호화(단,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li> </ul>
	고유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저장시 암호화</li> <li>○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 저장시 암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암호화 미적용 가능</li> <li>-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적용 의무화(적용 시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li> </ul>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호화하여 저장하여 조회할 수 없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회가 불가피한 경우 조회사유·내용 등 기록·관리</li> </ul> </li> </ul>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시 SSL 또는 암호화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li> </ul>
	개인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에 저장시 암호화</li> </ul>
	주민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li> <li>○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저장시 암호화</li> <li>○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 저장시 암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암호화 적용시기 이전까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또는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암호화 미적용 가능</li> </ul> </li> <li>○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가 서로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li> <li>○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수탁자에게 제공</li> </ul>

※ (참고)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2-112호)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http://www.privacy.go.kr> - 자료실)

## <개인정보의 위험도 분석 점검 항목>

### ① (기관 기준) 점검 항목

※ 개인정보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환경에 관한 내용으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함

구 분	점 검 항 목
정책기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li> <li>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또는 관리계획(침해사고 대응계획 포함)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까?</li> <li>3. 외주인력 보안관리를 위해 보안서약서 집행, 비밀번호 노출 예방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li> <li>4. DB 서버에 접속하는 장비(PC, 노트북 등)에서 불법 또는 비인가된 S/W 사용을 방지하고 정품 S/W만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까?</li> <li>5. DB서버에 접근 가능한 자(내부직원, 위탁인력, 개발자 등)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까?</li> </ol>
네트워크 기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상시적으로 비인가 IP주소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까?</li> <li>7. 상시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사용을 통제하고 있습니까?</li> <li>8. 상시적으로 불법적인 해킹시도를 방지하고,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까?</li> <li>9. 상시적으로 바이러스, 웜 등의 네트워크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까?</li> <li>10.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로그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까?</li> <li>11.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패치 발생시 자체없이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습니까?</li> </ol>

###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준) 점검 항목

※ 개인정보파일이 운용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 分	점 검 항 목
DB 및 Application 기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 상시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비인가자의 DB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까?</li> <li>13. DB서버내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차단하고 있습니까?</li> <li>14. 상시적으로 DB 접속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남기고 있습니까?</li> <li>15. DB 접속기록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통제하고 있습니까?</li> </ol>

구 분	점 검 항 목
	<p>16. DB서버에 접속하는 관리자 PC가 인터넷 접속되는 내부망의 네트워크와 분리되어 있습니까?</p> <p>17.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DB 접근권한을 차등화하여 부여하고 있습니까?</p> <p>18. 개인정보취급자의 전보, 이적, 퇴사 등 인사 이동 발생시 자체없이 DB 접근권한을 변경하고 있습니까?</p> <p>19. DB접속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DB 로그인 비밀번호를 최소 3개월 마다 변경하고 있습니까?</p> <p>20. DB접속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입력시 5회 이상 연속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 계정잠금 등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까?</p> <p>21. DB 및 DB접속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인가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까?</p> <p>22. DB 및 DB접속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시 관리자 승인 후 사용하고 있습니까?</p> <p>23. DB서버 및 DB접속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하는 모든 개인정보취급자의 단말기(PC, 노트북 등)의 운영체제 보안패치를 제조사 공지 후 자체없이 수행하고 있습니까?</p> <p>24. HDD등 DB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시(폐기, 양여, 교체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고 있습니까?</p>
웹(Web) 기반  ※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	<p>25. 신규 웹 취약점 및 알려진 주요 웹(Web) 취약점 진단/보완을 년1회 이상 실시하거나, 상시적으로 비인가자에 의한 웹서버 접근, 홈페이지 위·변조 등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p> <p>26. 웹서버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보안패치를 제조사 공지 후 자체없이 수행하고 있습니까?</p>

## 8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 적용 원칙

신용정보에 대한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31조가 적용되며, 그 밖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가 적용

※ 다만, 신용정보활용체제 등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상응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공개 가능

#### ① 신용정보에 대한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작성하고 이를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두고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적용
- 신용정보활용체제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①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②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
  - ③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
  - ④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⑤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⑥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 ⑦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 (신용조회회사만 해당)

※ ② 및 ③의 사항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하며, ⑦의 사항은 신용조회회사만 해당

## ② 그 밖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금융회사는 정보주체가 해당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여 공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신용정보활용체제’ 또는 내부 규정 등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도 가능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파기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는 수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글자크기, 색깔을 다르게 하거나 진하게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는 <http://www.privacy.go.kr> 참고

##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신용정보활용체제 주요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용정보활용체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인터넷 접속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개인정보의 파기와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용정보조회회사만 해당)

- ※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의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수립·공개의무가 주어짐.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개의무가 모두 있으므로 각각 공개하거나, 함께 공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개해야 함.

## 9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적용 원칙

금융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20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가 적용

####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법 제20조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  
하여야 함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에 적용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위 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  
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 직전 사업연도 중 위 업무 수행 실적 및 대표이사·이사회에 보고한 실적을  
금융감독원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부칙 제2015-31호 제3조에 따라 2016년도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의 업무실적 및 보고실적부터 적용(2017년부터 제출)

※ (참고)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

문서번호: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00검사국장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 및 대표이사, 이사회에 대한 보고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b>1. 법 제20조제4항 각호의 업무수행 실적</b>			
구분	이행일(기간)	주요 내용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신용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여부 점검			
<b>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 실적</b>			
보고 주기		보고 내역	
구분	보고일	주요 보고사항 및 후속조치 등	
대표이사			
이사회			

※ 첨부서류

1.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보고서
2. 업무수행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첨부서류 1과 중복되는 경우 생략 가능)

0000년 00월 00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_\_\_\_\_ 서명 또는 (인)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sup>\*</sup>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하여야 함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임원 요건

- 사내이사
  -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
  -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등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임원인 경우에만 겸임 가능
    - 또한 준법감시인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제4항에 정의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함

## ② 그 밖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함
  - 다만, 금융회사의 인력 상황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겸임 가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및 권한
- 자격 : 사업주,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권한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함

## 10 개인정보의 파기(삭제)

### 적용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가 적용되며, 그 밖의 개인정보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가 적용

#### ① 개인정보의 삭제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함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방법
    -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
    - 나.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
    - 다.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 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내역을 3년간 보관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해당 정보 모두 삭제

#### 필수적인 개인정보와 그 밖의 개인정보 구분시 고려사항

1. 해당 개인정보가 없었다면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가 설정·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 여부
2. 해당 개인정보가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지 여부 등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설정하여야 함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제공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판단 참고기준 및 예시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된 날의 정의는 위에서 기술한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금융권역별, 금융회사별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기준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인별기준(개인의 경우 개인, 법인의 경우 법인 단위)으로 적용하거나 인별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거래건별 적용 가능

예시)

-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채권을 매각하는 등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시점
-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금융회사간의 모든 금융거래가 종료되거나 회원 탈퇴된 시점
-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모든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
-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모든 계좌가 폐쇄된 시점
- 그 밖에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회원을 탈퇴하거나 거래종료된 시점 등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 하여야 함
  -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되기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대상에서 삭제하고,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음

###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휴면예금(「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 예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제외)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법령에서 과기 또는 삭제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즉시 과기 또는 삭제하여야 함
  - \* 예) 신용정보법 제18조제2항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함

### ※ 개인신용정보의 분리보관 및 삭제 방법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2단계에 걸쳐 분리보관 또는 삭제하여야 함

구분	필수정보(구분방법-시행령§ 17의2②)		그 외 정보
	예외 경우(법§ 20의2②1~3호)	그 외	
[1단계] 3개월 이내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인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관리 (관리방법-시행령§17의2①)		삭제 (삭제방법- 시행령§ 17의2⑥)
[2단계] 5년 이내	1.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 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관리 (관리방법-시행령§17의2①) 2. 활용 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	삭제 (삭제방법- 시행령§ 17의2 ⑥)	-

□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

- (1단계)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접근권한을 분리하는 등 보안통제를 강화\*하여 운영
  - \* 같은 Table일 경우 일반 직원의 조회를 차단하거나 접근권한이 강화된 별도의 DB 또는 Table로 관리하고,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접근권한을 통제·기록 보존
- (2단계)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의 DB 또는 Table로 관리 하여야 하며, 1단계 접근권한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엄격히 통제\*하여 운영
  - \* 2단계 조치된 개인신용정보를 재이용하는 경우 1단계 접근권한보다 제한된 인원, 추가 승인절차 및 사후 감사 등 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개인신용정보 삭제방법

- 분리보관 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등으로 더 이상 보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분리된 별도의 DB 또는 Table 내의 개인식별번호, 고객번호, 계좌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정보의 재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함
- 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정보가 어떠한 경우에도 재식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식별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할 경우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4)

-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음(1~4까지 모두 적용)
  1. 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 할 것
  3. 보존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현황파악, 열람,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
  4. 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대표이사가 폐기결과를 확인 할 것

## ② 그 밖의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그 밖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함
  - 단, 개인정보를 제외한 그 밖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령상 보존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보존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
  - 개인정보를 제외한 그 밖의 개인정보에 대해 법령상 보존기한이 불분명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정보주체가 동의한 보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없이 파기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는 받았으나 개인정보 보존기한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특정한 조건으로(예 : 회원 탈퇴시 파기, 수집 목적 달성시 파기 등) 정한 경우는 해당 보유 목적이 완전히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 일정한 기간뿐만 아니라 특정조건에 대한 동의도 명시적인 동의에 해당

## ③ 보존 매체에 따른 파기(삭제) 방법

- 개인(신용)정보를 파기(삭제)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하여야 함
  - 전자적 파일 :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
  -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 11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적용 원칙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정정, 제공·이용 등의 철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37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0이 적용되고, 그 밖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적용

#### ①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①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

- 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함

##### 정보주체의 본인확인 방법(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

- ①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 ②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③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여 활용 가능)

- 정정청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용 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 조치
  - 금융회사는 삭제·정정한 개인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내 제공받은 자 및 해당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
- 정보주체의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7일 이내 조치·통보

##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 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 가능
- 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 가능

<참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낫콜) - 홈페이지 : [www.donotcall.or.kr](http://www.donotcall.or.kr)

- 금융권 두낫콜 서비스는 법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과제중 하나로 12개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시행
  -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 신용정보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연락중지 청구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
- 동 서비스는 마케팅 영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에 한하여 마케팅 등 영업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메시지 발송을 2년간 차단하는 것으로
  - 금융소비자와 체결한 계약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연락은 차단대상이 아니며,
  - 휴대전화 이외에 집전화·이메일 등 다른 매체를 통한 마케팅 연락까지 차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함

## ③ 신용조회사실 통지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신용조회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 가능

#### ④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sup>\*</sup>이 경과한 이후에**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3개월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위와 같은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통지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시에도 분리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휴면예금(「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 예금을 말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5.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7.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제외)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② 그 밖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① 개인정보의 열람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금융회사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항목(개인정보 보호법 제4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금융회사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 거절 가능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기관인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삭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함
- 열람 거부사유는 정정·삭제 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함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함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12 개인(신용)정보의 유출(누설)시 조치 방법

### 적용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시 통지·신고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39조의2가 적용되며, 그 밖의 개인정보의 유출시 통지·신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가 적용

※ 유출 경위에 따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금융사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또한 적용될 수 있음

#### ① 개인신용정보 누설시 통지 및 신고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지체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실을 통지해야 함

##### 개인신용정보 누설시 통지사항

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회사등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다만,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추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음

-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정보주체 통지와 더불어 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알리는 방법**

- 15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
- 15일간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 토록 조치
- 7일간 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에 그 사실을 게재

- 또한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 누설 신고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신용정보의 추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자체없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

**개인신용정보 누설시 조치사항 정리**

	1만명 미만 누설	1만명 이상 누설
정보주체 통지	○ (5일이내)	○ (5일이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신고	X  (단, 유출 경위에 따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적용)	○  (5일이내, 유출 경위에 따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적용)
홈페이지 게시	X  (유출규모 등이 명확치 않은 때는 게시도 병행함이 바람직)	○ (15일간)

#### 개인신용정보 누설의 예시(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4-2)

-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아래의 예시 및 이와 유사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 누설로 볼 수 있음
  -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 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② 그 밖의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

- 개인신용정보 외 그 밖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실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해야 함

####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사항

- 1) 유출된 개인정보항목
- 2) 유출 시점 및 경위
- 3)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③ 그 밖의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

- 만약 개인신용정보 외 그 밖의 개인정보가 1만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 통지와 더불어, 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함
- 또한, 개별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통지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해야 함(홈페이지 미운영시 사업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외 그 밖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출 사고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금융사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보고 필요

## <개인신용정보 누설 통지·신고 절차>

구분	세부내용	법적근거
유출통지 방법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	신용정보법 §39의2, 시행령 §34의2
통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li> <li>- 단,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정보주체 통지와 더불어 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5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li> <li>2. 15일간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토록 조치</li> <li>3. 7일간 주된 시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그 사실을 게재</li> </ol> </li> </ul>	신용정보법 시행령 §34의2①
통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②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li> <li>③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li> <li>④ 신용정보회사들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li> <li>⑤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li> </ul>	신용정보법 §39의2①
통지시기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 지체없이 (5일 이내)	신용정보법 §39의2①
통지연기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통지 가능(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함)	신용정보법 시행령 §34의2③
누설시 신고방법		
신고대상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용정보법 §39의2③,
신고기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법 시행령 §34의2④⑤ ⑥⑦
신고시기	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 지체없이(5일이내)	
신고방법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용정보회사들의 신용정보 누설신고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신고내용	상호(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본점(또는 기관) 소재지, 대표자 성명,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누설된 시점, 누설 경우,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관련한 피해구제 절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	별지 제18호 서식
신고시 고려사항	유출 경위에 따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금융사고로 분류되는 경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로 분류되는 경우) 병행 적용	

## ④ 신용정보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

-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
- 손해배상과 관련, 신용정보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및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및 법정손해배상 비교>**

구분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과징금	법정 손해배상
정의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정부에서 이익보다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원고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령이 정한 일정한 금액을 법원이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차이점	절차 : 민사소송 주체 : 개인	절차 : 행정처분 주체 : 정부	절차 : 민사소송 주체 : 개인
주요내용	금융회사 고의·중과실로 신용정보가 누설·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된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할 책임 있음  금융회사 등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적용 배제	전산시스템 보안대책의 미수립, 신용정보관련자의 업무 목적외 누설, 불법 누설된 일면서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한 경우,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최고 50억원)	법 위반으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의 입증책임은 기업에 있음
법 조항	신용정보법 제43조 제2항	신용정보법 제42조의2	신용정보법 제43조의2

- 다음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구분	보험 가입금액	구분	보험 가입금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0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	10억원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정보통신진흥협회)	20억원	예금보험공사	10억원
신용조회회사	20억원	정리금융기관(영 제21조제2항제8호) 정리금융공사(現 KR&C)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3항	면제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5억원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 비건설공제조합	5억원
은행(영 제21조제2항제2호_채권등록기 관)	20억원	채권등록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 기업은행),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제1조의 2제1항제2호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채권등록기관(한국은행, 국채법 시행규칙 제5조, 한국예탁결제원 공사채등록법 시 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5억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10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억원
금융지주회사	20억원	신용회복위원회	5억원
한국산업은행 (영 제21조제2항제2호 채권등록기관)	20억원	근로복지공단	5억원
한국수출입은행	20억원	소프트웨어공제조합	5억원
농협은행	20억원	엔지니어링공제조합	5억원
중소기업은행 (영 제21조제2항제2호 채권등록기관)	20억원	정리금융기관(영 제5조제1항제21호)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20억원	체신관서	10억원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 투자증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10억원	전기공사공제조합	5억원
명의개서대행회사	5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舊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5억원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억원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억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5억원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억원	중소기업중앙회	5억원
신림조합, 신림조합중앙회	5억원	한국장학재단	5억원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5억원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연합회	5억원	국민행복기금	5억원
보험회사	10억원	휴먼예금관리재단	5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0억원	금융감독원장 검사대상 대부업자 중 대 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2호, 제3 호,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4.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 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0억원	금융감독원장 검사대상 대부업자 중 대 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면제
신용보증기금	10억원	자본자 공제조합	5억원
신용보증재단	5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억원	유동화전문회사	면제

-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여야 하며, 보험·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신용정보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 500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면제

## 1 기본원칙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조제2호,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A

네,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실명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 실명법이 신용정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개인신용정보보호,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 및 분리보관 등 금융실명법에서 규율하지 않은 것은 신용정보법을 적용 합니다.

## 1-2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암호화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각기 상이한 범위의 고객정보 암호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와 같은 금융 회사는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고객정보를 암호화해야 하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 A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고 신용정보법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에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은 신용정보법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접근통제 및 암호화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정하는 바를 따르되, 신용정보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에서도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암호화 조치에 대하여도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외의 사항에 대한 암호화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암호화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령 준수(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있어서 금융회사 법률상충과 관련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1-3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이 상충될 시, 어떤 법이 우선하나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A

신용정보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신용정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규정하였으나 신용정보법상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등,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판단한 후 준수하셔야 합니다.

## 1-4

금융회사에 대하여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경우 어느 법률에 따라야 하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8조 및 제38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A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3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음

개인신용정보 외 그 밖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조하여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등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을 적용하고 ‘그 밖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외 다른 금융관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를 우선 적용하여야 함

※ (예시) CCTV 촬영 영상 등의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IV

##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Q  
**2-1**

계약자로부터 제출받는 법정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계약자 이외의 가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1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A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금융회사가 수집·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서류를 수집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 이외의 가족 정보 중 수집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받거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예시) 금융회사가 계약자 본인 이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은 경우로서 해당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및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검게 칠하여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보관

**2-2**

차세대 시스템 오픈 전 시스템 전면중단을 고객에게 공지(이메일 또는 문자)하고자 하는데, 이때 아래와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통지 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없을지요?

(한번이라도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그 뒤 거래가 없는 고객에 대해 민원 수신 가능성을 낮추고자 문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전에 비여신금융거래 동의서를 통해 동의 받은 고객

2)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

(관련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

**A**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그러므로 상기 1에 해당하는 고객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근거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울러 상기 2에 해당하는 고객의 정보 역시 정보주체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회사 직원이 과거 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을 정보주체와 협의 없이 몰래 가입시켰을 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A**

신용정보법 제33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을 시에는 같은 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며, 목적을 넘어가는 범위로 이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 위반사항임

## 2-4

유관기관 업무담당자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해당 담당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요?

(관련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 A

유관기관의 업무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명함 등을 주고받는 행위와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수집·이용 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 범위’라 함은 유관기관 업무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등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관계자간 상호 연락을 위해 공유하는 것을 말함

## 2-5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기 동의한 고객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기존 등록된 정보와 상이한 경우 추가적인 동의절차 없이 이 번호로 현행화 가능한지요?

(관련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 A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전화번호 등의 처리에 대하여 동의한 고객이라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발신자번호 표시 기능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전화번호로 고객 전화번호를 현행화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자번호가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고객에게 전화번호의 최신성 여부를 확인한 후 향후 이 번호로 현행화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 2-6

신용정보법 제33조에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속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금융거래 현황 조회 등을 금지할 수 있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0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22조

### A

금융회사 직원이 회사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금융거래 현황 조회 등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신용정보법의 입법 취지상 금융회사가 보유·관리하는 신용정보는 접근권한을 엄격히 관리하고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되어야 하는 바, 이에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등에서는 개인신용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를 개인신용정보취급자로 한정하고,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원 역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취급자 권한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속 및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법 제19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과 법 제20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 등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 및 내부관리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참고로, 법 제33조는 신용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조항으로서, 신용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역시 법 제19조 등에 따른 신용정보처리시스템 관리의무와 총돌되지 않아야 하므로, 법 제33조에 의해서도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속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금융거래 현황 조회 등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2-7

명의인이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명의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15조 및 제32조

### A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리인을 통해 명의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명의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이 위임장 등을 통하여 자신의 금융거래 처리 업무를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해당 대리인은 당해 금융거래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서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2-8

가족대리 또는 위임장 대리시 선택적 정보까지 동의 가능한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15조 및 제32조

### A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리인을 통해 명의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명의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선택적 정보 동의까지 위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융거래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위임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택적 정보의 처리까지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2-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11.9.30.)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대하여 법 시행후 금융거래시 동의서 징구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관련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A**

법 시행 전에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를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한다면 추가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전에 개설한 계좌로 법 시행 후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동의서를 징구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본인 동의하에 개인정보의 제공을 포함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법 시행 이후 기존 목적 범위 내에서 당초 동의 받은 제공처에 제공 가능합니다.

※ (예시)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혜택 등

**IV**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FAQ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3-1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17조 및 제3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6조

A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은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의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하며, 금융회사는 해당 업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 및 관리·감독 책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위탁	제3자 제공
성격	금융회사 자신의 목적·이익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이익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
관리감독 책임	금융회사 자신(위탁자)이 관리감독 책임 부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가 관리감독 책임 부담
예시	- 배송업무 위탁 - 전산센터 운영 위탁 - 콜센터·TM업무 아웃소싱 등	- 카드 사용시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항공사에 카드사용내역 제공 - 대형마트에서 이벤트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후 보험회사 제공 - 사업·업무 제휴* 등
근거조항	신용정보법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신용정보법 제3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동의 여부	정보주체에게 내용을 공개·고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 "사업·업무 제휴"에서의 위탁과 제3자 제공 구분 : 제휴사가 단순히 금융회사를 대신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뿐 제공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리위탁에 해당하며,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제3자 제공에 해당함

**3-2**

업무제휴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제휴업체(카드사, 공동 마케팅사 등)와 금융회사의 관계를 위탁 관계로 볼 수 있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17조 및 제3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6조

**A**

제휴업체는 통상적으로 각자의 업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금융회사와 위탁관계가 아니라 제3자 제공으로 보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은 기관 내부의 업무를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대신 처리토록 하는 일종의 아웃소싱(Outsourcing)을 말하는 것임

**3-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정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관련조문) 전자서명법 제2조제2항,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8조제4항

**A**

회사 차원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 판단된다면 동의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수단 별로 감독당국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4**

신용정보법 제32조상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되,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 까지가 이에 해당되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A**

기존의 동의 받은 목적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예 : 기존에 설정한 금융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는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5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한 번만 받으면 되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

### A

네, 동의 목적 또는 이용 범위의 변경이 없는 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 정보주체로부터 한 번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 3-6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지, 또는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 A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면 됩니다.

### 3-7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8항제2호의 재화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직접적인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 하여야 할까요?

(예: 예금가입 시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무료보험서비스 관련 동의)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 A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본 상품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직접적인 경우(예 : 항공마일리지 적립형 신용카드 발급시 항공사에 관련 정보 제공 동의 등)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

### 3-8

모 경찰서 A경위입니다. B고객이 금융사 ATM기에서 현금 인출 승인 후 현금을 찾아가지 아니하였고, 이를 인지한 B고객이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 후 우리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관을 대동하여 CCTV확인결과 C고객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해당 ATM의 출금 기록을 금융사에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 1) ATM의 기계정보 및 인출기록이 개인정보인지요?
- 2) (만약 개인정보라면) 영장발부 없이 긴급히 처리할 수 있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 및 제33조

### A

- 1) 단순 ATM의 기계정보 및 인출기록은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로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제공받을 정보의 자세한 내용에 따라서 개인신용정보가 될 소지도 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2)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5호, 제6호 및 제33조제3호에 따르면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한 경우나,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함

다만,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자료제출은 불가능하므로, 평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급 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 3-9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등(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필수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조문)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신용정보법 제15조

### A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제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제1항)

\*\*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정보를 상품 안내 등 마케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수 동의서가 아닌 선택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10**

지역신용보증재단 고객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자료제공처(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법령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아울러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종업원 수와 결합하여 타기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A**

사업자등록번호는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 가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의 특정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지만, 이러한 식별정보는 신용거래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의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만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종업원 수는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기업의 개황으로서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와 결합한 경우에는 기업신용정보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기업신용정보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에 근거한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11**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배송을 하기 위해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택배회사에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6조

**A**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사은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택배회사에 해당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은 배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어 고객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쇼핑몰에서 고객사은품을 구매한 후 배송 목적지를 알려주는 경우 포함)

또한, 금융회사가 DM업체에게 사은품 구매 또는 배송 업무를 일괄 위탁한 후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므로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위탁받는 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1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변경된 경우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관련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신용정보법 제32조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당초 동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도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13**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A**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다만,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정보주체의 동의의사를 대신 제출한 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4 위탁

4-1

기간이 매우 짧은 단발적인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공개나 수탁업체 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17조 및 제31조

A

위탁기간이 짧아 위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1회 이상 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위탁계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수탁자가 연 1회 이상(위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1회 이상)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위탁계약에 반영되어 있고,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가 그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또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5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파기, 분리보관 등)

5-1

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마케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마케팅 동의만 받는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가 적용되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A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수집 당시에는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망에서 신용정보와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5-2

금융거래 등 상거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삭제 대상인 개인신용정보는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A

선택정보에 한해 3개월 이내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즉 금융거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 종료 후 금융거래 관련 정보로 보관이 필요한 정보인지 확인절차를 통해 삭제대상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우대를 위해 직업 정보가 필요할 경우, 직업정보는 고객의 금리 우대 희망여부에 따라 선택정보가 되지만 수집한 이후에는 계약유지를 위한 필수 정보가 되어 3개월 이내 삭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5-3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민원처리 및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등의 목적으로 분리보관이 가능한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A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개인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목적 달성을 시 자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므로 민원처리 목적을 달성한 후 파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명시하고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나, 수집정보의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예시)

- 대출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고객님의 대출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재하신 연락처로 당사의 TM업무 위탁업체(OOO)에서 전화드릴 수 있습니다.
- 기재하신 정보는 대출신청과 관련한 통화를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약 30일)이후에는 정보가 삭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동의안함

IV

## 5-4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 종료 후 5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분리보관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A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분리보관이 필요한 경우 같은 항 단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어떤 단서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정보인지 확인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분리보관 하는 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열람 청구 등이나 감독 기관의 점검·조사 시 등에 금융회사는 분리보관을 결정하게 된 사유 및 근거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하기와 같은 경우에 분리보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sup>\*</sup>으로 정하는 경우
  - \* 대통령령은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의미하며 아래 내용 참고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 ▶ 휴면예금(「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을 말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 ▶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다만,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5-5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본인의 열람요구에 응하거나 법원, 경찰청 또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3항, 제32조제6항 및 제38조제1항

### A

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열람 요구는 신용정보법 제38조제1항 등 본인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며, 법원, 경찰청 또는 국세청의 요청은 관련 법령 이행을 위해 제공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에 따르면 법원 요청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요청은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자체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자체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등의 조세 관련 요청에 대해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상황별로 요구되는 바를 명확히 확인 후 제공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원 요청시 제출명령 수령 또는 영장 수령후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

아울러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르면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5-6

각 업권별 파기 가이드라인 및 개정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

삭제시 회사 내 모든 시스템에서 삭제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장에서만 삭제하면 되나요? 또한, 로그파일도 같이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 A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상거래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이 관리대상은 신용정보회사의 모든 시스템 내에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그파일에도 개인신용정보가 기록될 수 있으므로 해당 로그도 같이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타 법령상 근거해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이 가능하며,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 5-7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활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시기 또는 방법을 정하여 통지하면 될까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

### A

현재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한 통지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의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의2] 16. 법 제32조제6항제10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나.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것을 정한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그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것을 정한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그 기한을 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방법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5-8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폐기한 경우 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수집·이용·폐기한 경우에도 업무처리기록 보존 대상인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 A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수집·이용·폐기한 경우에도 업무처리 기록 보존 대상이 됩니다.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기록을 보존하는 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도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 5-9

상법 제33조를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요?

\*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상법 제33조

### A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법」제33조의 상업장부등의 보존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5-10

금융회사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었던 신용정보주체가 금융거래를 재개하게 되면,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라 별도로 분리 보관된 개인신용정보 중 활용이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5조 및 제32조, 상법 제33조

### A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었던 신용정보주체와 금융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15조 및 제32조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11**

선택적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시 그 정보의 보유 기간에 대해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어 3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동의받은 보유기간까지 보유가 가능 한지 혹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파기해야 하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제20조의2 및 제15조, 상법 제33조

**A**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20조의 2에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라 선택적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5-12**

“법령 또는 약관 등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한 날이 금융거래 종료 일입니다.”라는 문구를 동의서에 추가하거나 또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에 게시하면 시행령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 및 제5항

**A**

질문에 있는 예문의 내용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상 취지는 고객이 금융거래가 종료되고 종료에 따른 변화를 인지 할 수 있게 알리라는데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알려야 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은 고객이 자기정보가 언제 삭제될 것인지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기는 은행권역 동의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위 개인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sup>\*</sup>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증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 5-13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통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통지의 대상이 되는 “활용”은 분리보관 목적 이내의 활용으로 제한되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3

### A

원칙적으로 분리보관 중인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활용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3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3

- ▶ 신용정보회사들은 영 별표 2의2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제공요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지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지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제2의2(일부 발췌)

11. 법 제32조제6항제5호에 따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2.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 따라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3. 법 제32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개인정보의 누설 통지

6-1

신용정보가 업무목적 외로 누설되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누설의 정의 등)가 있을까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4의2

A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아래의 예시 및 이와 유사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누설로 볼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4의2. 3.1.1. 참고)

(예시)

- ▶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7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7-1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시스템 구축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용방법과 절차만 게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A

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용방법과 절차만 게시하고 영업점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시스템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내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합니다.

7-2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에 조회대상이 되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은 마케팅 목적의 이용·제공에 한정되는지요? 제휴업체와 수사기관 등 (법원·국세청 포함)에 제공하는 경우도 조회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A

신용정보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 이용 또는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등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조회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제1호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 하므로 조회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7-3

금융회사가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탁업무의 수행으로서 조회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A

해당 위탁업무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 위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7-4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용정보법 제35조제2항의 정기적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게시한다면 같은 조 제3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 A

신용정보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게시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 8 손해배상의 보장

**8-1**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준비금(또는 더 많은 금액의 준비금)을 적립하였다면 별도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43조 및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7제4항

**A**

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신용정보법에서 정하는 금액이상 적립하고 있다면 별도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준비금을 전자금융거래법뿐 아니라 신용정보법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준비금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주총에 의한 결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상품의 배상범위가 신용정보법 제43조에서 정하는 책임범위를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8-2**

전문투자자들 위주로 영업을 하는 외국계증권회사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가 있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7제5항

**A**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7제5항에 따라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에 대한 신용정보만 수집·이용·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대리인의 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정보라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가 있습니다.

**8-3**

### 개인신용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A**

신용정보법 시행령 부칙상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므로 ‘15.10.12일 까지입니다.

**8-4**

###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의 손해배상의 보장 관련 준비금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도 되는지요? 만약 충당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준비금 적립은 주총 이후 가능한 데 한시적으로 ‘충당금’으로 적립해도 법 위반사항이 아닌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43조의3

**A**

준비금은 충당금(부채계정)이 아닌 임의적립금(자본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임의적립금이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다만, 충당금 적립 또는 별도계좌 예치 등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차기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을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후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시점까지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IV**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FAQ

## 9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요건 및 업무

Q  
9-1

신용정보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외국소재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외국소재 수탁자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와 유사한 요건의 정보 보호인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A

신용정보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인적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인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자로 정하고 있는바,

외국소재 법인으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보호인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법인의 소재지법 또는 그 밖의 준거법에 따라 유사한 정보 보호인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인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9-2

신용정보법 제20조제3항에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원을 등기임원으로만 한정하나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

A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이거나 신용조사 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IV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FAQ

## 9-3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보험회사입니다. 임원은 아니지만 임원 역할을 수행하는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할 수 있을까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제3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 A

임원으로 정해야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타 법령에서 정하는 준법감시인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실상의 이사이자 임원으로 판단됩니다.

1. 사내이사
  2.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두었을 시 해당)
  3.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
- \* 동 조항에서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시장·부시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

따라서 임원 역할을 수행하는 준법감시인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9-4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임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6517호〉 제3조

## A

신용정보법 시행령 부칙 상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15.12.12부터 적용됩니다.

## 9-5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수행 업무에서 신용정보의 관리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 내규(신용정보 관련 규정, 지침 등)에 이와 관련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으면 법 준수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관리 및 보호 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하나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제4항

## A

반드시 별도의 관리 및 보호 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 내규에 신용정보의 관리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에 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적정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립한 계획의 정기적인 검토 및 개정을 통해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 9-6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제출하여야 할 연차보고서 서식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20조제5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조의2 및 별지 제1호 서식

## A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연차보고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세칙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금융법규 또는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0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10-1

은행영업점을 통한 카드모집의 경우에도 모집경로 확인대상인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A

네, 모집경로 확인대상입니다.

10-2

보험회사는 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하여서도 모집경로를 확인하여야 하나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A

대리점 소속 설계사도 포함됩니다.

10-3

모집업무수탁자가 없는 경우에도 확인한 사항을 알려야 하나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A

보고대상은 모집업무수탁자가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모집업무수탁자가 없는 경우는 등록기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0-4

등록기관의 확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A

등록기관의 확인 범위는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등록기관에 등록한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 11 기타

11-1

신용정보회사등의 주민번호 처리근거를 신용정보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A

아닙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른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에 대한 처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정확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15.1월 배포한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콜센터 상담시 고객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관련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A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시에는 해당 통화 상대방이 고객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과의 거래 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개인정보를 물어볼 수 있으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고 법적 근거 또한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가 고객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기타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개인의 경우 성명 및 주민번호)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므로, 금융회사 콜센터가 금융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자치부)

IV

금융  
권  
개  
인  
(신  
용)  
정  
보  
보  
호  
관  
련  
F  
A  
Q

## 11-3

회사내 직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요?

(관련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A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과 세금 원천징수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소속 직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인사관리나 급여 지급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자치부)

## 11-4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받아 주민번호를 단순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경우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관련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A

고객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해당고객으로부터 직접 신분증을 받아 확인 후 돌려주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고객이 사무실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맡기고 안내데스크에서 이를 단순 보관하는 행위도 개인정보의 수집행위는 아니므로 별도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 11-5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는 사용 가능한가요?

(관련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A

주민번호 앞자리의 생년월일은 주민번호의 체계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 시 국민이 공공기관에 신고한 날짜를 토대로 정의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은 주민번호를 이용한 숫자열이라 보기 어려우며, 생년월일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자치부)

## 11-Q

주민번호 뒷자리만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관련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A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수집·이용하여 회원의 유일성과 식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번호의 체계를 활용하여 주민번호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자치부)

## 11-Q

암호화해야 하는 바이오정보의 대상은 어디까지 인지요?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A

암호화 하여야 하는 바이오정보는 식별 및 인증 등의 고유기능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콜센터 등 일반 민원 상담시 저장되는 음성기록이나 일반 사진 정보는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바이오정보인 경우 원본 데이터와 가공되거나 생성된 특징정보 모두 암호화 대상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행정자치부)

IV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FAQ

## 11-Q

업무용 PC에서 고유식별정보나 바이오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암호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조문)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A

PC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상용프로그램(한글, 엑셀 등)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거나,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암호화해야 합니다.

바이오 정보의 경우, 복호화가 가능한 양방향 암호화 저장이 필요하나, 이는 식별 및 인증 등의 고유기능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콜센터 등 일반 민원 상담시 저장되는 음성기록이나 일반 사진 정보는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행정자치부)

## 11-Q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이 신설(시행 '16.9.30.)됨에 따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지 의무가 있는지요?

(관련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0조, 신용정보법 제32조

### A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가 아닌 다른 규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V

## 업종별 개인(신용)정보 처리 사례

※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타 업권의 개인정보 처리사례도 활용 가능

### 12 은행

#### 12-1 (은행)

은행이 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목적으로 임직원 및 그 가족(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지요? 아울러 위와 같이 은행에서 임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는 경우에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하여 신용정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용정보법을 적용한다면 임직원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또한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이용한 이후에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려야 하는지요?

#### A

「은행법」상의 감사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임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로부터 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별로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에 따른 동의를 요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를 감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우선 「은행법」상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을 적용해야 하며, 신용정보법에서 규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 사례가 신용정보법 제32조제4항제9호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법문에는 명시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법인 「은행법」에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제5항을 근거로 이를 신용정보법 제32조제4항제9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

V

업종별 개인(신용)정보 처리 사례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개인신용정보주체인 임직원 등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 가능 범위를 벗어난 확장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제출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의 은행 확인 의무 여부

**A**

금융회사가 정보주체가 아닌 사업주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사업주가 자신의 업무를 목적으로 처리하는 고객 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나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신의 업무를 목적으로 고객 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주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바, 적법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13 보험

### 13-1 (보험)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카드사, 공동마케팅사 등)를 위탁 관계로 볼 수 있는지요?**

**A**

제휴업체는 통상적으로 각자의 업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하므로 보험사와 위탁관계가 아니라 제3자 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은 기관 내부의 업무를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일종의 아웃소싱(Outsourcing)을 말하는 것임

### 13-2 (보험)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동의서에 서명하는 다수 계약자용 동의 서식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

하나의 동의서에 불특정 다수가 서명하는 형태의 동의 서식은 당해 동의 서식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동의서에는 한 사람의 동의 내용만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 형태의 동의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불특정 다수’라 함은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인을 말하며 계약 관계자나 가족 구성원, 특정 단체보험 가입자는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없는 바, 하나의 동의 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 13-3 (보험)

**보험 계약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당초 보험계약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이미 동의를 한 자의 경우에는 향후 보험금 청구시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13-4

(보험)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정보가 정당한 동의를 받은 것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요?

### A

제휴업체는 통상적으로 각자의 업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하므로 보험사와 위탁관계가 아니라 제3자 제공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휴업체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휴업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적 책임을 가지며, 아울러 보험사는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제휴업체에게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나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13-5

(보험)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3자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요?

### A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없이 수집·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에 따른 3자 배상책임 이행 및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제3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제3자 배상책임 이행시), 보험수익자의 고유식별정보(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시)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3-6

(보험)

보험회사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설계사의 개인 PC,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까지 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A

보험회사가 자신의 고용인 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관리·감독하는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 당국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설계사 개인 PC는 개인정보 자가진단 툴을 이용하여 정기 점검, 수시 또는 정기 교육 등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인식제고 등

## 13-7

(보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했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A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외 다른 금융관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를 우선 적용하여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도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계약 관련 정보 중 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V

## 13-Q (보험)

워크샵 등 개최에 따른 참가자 단체상해보험 계약시 개인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 인사부에서 인사·노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요?

### A

인사·노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7조 및 제18조). 이에 따라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를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직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타인의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제731조제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와 1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상법」 제735조의3제1항에 따라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상법」 제739조에 따라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체결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규약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체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상법」 제735조의3에서 말하는 규약의 의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는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2006.4.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에 생명보험가입에 관한 조항을 두고, 보험금의 지급은 사망퇴직금이나 사망위로금의 지급에 충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 근로자가 서명날인 하였다면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규약에 단체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퇴직금, 사망위로금 등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 14 증권

14-1  
(증권)

증권회사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법인대표자나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A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법인 대표자 및 대리인의 정보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해당 법인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대표자 및 대리인 등의 정보가 해당 법인의 정보로서가 아니라 특정 자연인의 개인정보로 처리되는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여야 합니다.

## 15 신용정보업

15-1  
(신용정보업)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 회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제35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요?

A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므로 채권추심회사가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는 신용정보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됨

V

업종별 개인(신용)정보 처리 사례

## 15-2

(신용정보업)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요?

## A

신용정보회사들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동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에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제7항에서는 제6항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권추심은 제32조제6항 제4호에서 규정)

따라서 신용정보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통지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동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15-3

(신용정보업)

(신용정보업)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2항 및 별표 2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임사실의 통지를 하는 때까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기 전까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공받기 전까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통지를 하나의 통지서(수임사실통지서 등)에 통합하여 발송해도 문제가 없는지?

## A

채권추심회사가 통지를 하는 대상은 각각의 경우가 모두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로 동일하며, 채권자에게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시기가 통지한 이후여서 해당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통합하여 통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참고 사이트

- 법제처(<http://www.moleg.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
  -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등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 게시판(<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공통 업무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금융감독원 정책 및 홍보물 등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privacy.go.kr>)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지침 및 참고자료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www.pipc.go.kr>)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개선, 권고 등에 대한 심의 의결 자료 등

V

업종별 개인(신용)정보 처리 사례



# 신용정보 관련 법령집



FSS  
www.fss.or.kr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목차



신용정보 관련  
법령집

I 신용정보법 • 129

II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 327



# 1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별첨, 양별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시행규칙 제2조 삭제 제2조(정의)
		제2조제1항제5호자목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제2조제3항제8호	제3조(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범위)
제3조(신용정보업의 육성)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b>제2장 신용정보의 허가 등</b>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제4조제1항제2호 · 제3호		제3조(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	제4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제4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허가 신용정보업을 한 경우 刑 5년,5천(§ 50②1)</li> <li>▶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 刑 5년,5천(§ 50②2) &amp; 허가취소사유(§ 14①1)</li> <li>▶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사유(§ 14①10)</li> </ul>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b>시행규칙</b>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b>제5조</b> (신용정보업 허가 등의 절차) <b>[별표 1]</b>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등의 절차(제5조제1항) <b>[별표 1의2]</b>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등의 신청서류(제5조제2항) <b>[제1호 서식]</b>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제5조제2항제1호) <b>[제2호 서식]</b> 신용정보업 변경허가신청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별첨, 양별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서(제5조제2항제2호) 【제2호의2 서식】 양도 · 양수 · 분할 · 합병 (예비인가, 인가) 신청서(제5조제2항제3호) 【제2호의3 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제4호)
제4조제4항	▶ 인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인허가취소사유(§ 14①9)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 제5조제1항제1호의 출자요건 위반시 인허가 취소사유(§ 14①2)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제6조(허가의 요건)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제6조(정보처리 · 정보통신설비) 【별표 2】 신용조회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에 필요한 정보처리 · 정보통신설비 요건(제6조제1항)
		제6조제3항제5호나목	제7조(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별표 1】 주요출자자 요건(제6조제4항)	제8조(주요출자자 요건)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자본금)	
제6조제2항	▶ 신용정보회사의 자기자본이 제6조제2항의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인허가 취소사유(§ 14①4)		
제6조제4항	▶ 업무정지 6개월, 전부(§ 14②1)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제7조(허가 등의 공고)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조본문 과태료 1천(§ 52④1)</li> <li>▶ 제8조단서 과태료 1천(§ 52④1)</li> </ul>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p>제9조(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감소의 신고)  <b>[제3호 서식]</b> 신용정보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서(제9조제1항)</p>
		제8조제2항	<p>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보고)  <b>[제4호 서식]</b> 신용정보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 보고서(제10조)</p>
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p>제11조(지배주주승인신청서 등)  <b>[제5호 서식]</b> 지배주주 변경승인신청서(제11조)</p>
제9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 刑 1년, 1천(§ 50④1)</li> </ul>	<b>[별표 1]</b> 주요출자자 요건(제9조제2항)	
제9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자 刑 1년, 1천(§ 50④2)</li> <li>▶ 제9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전부(§ 14②9, 범 <b>별표 제1호</b>)</li> </ul>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 · 양수 등의 인가 등)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 · 양수 등의 인가)	<p>제11조의2(신용정보업의 양도 · 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  <b>[별표 2의2]</b> 신용정보업의 양도 · 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제11조의2)</p>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제1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인가 신용정보업을 한 경우 刑 5년, 5천(§ 50②1)</li> <li>▶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경우 刑 5년, 5천(§ 50②2) &amp; 인가취소사유(§ 14①1)</li> </ul>		
제10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1천(§ 52③)</li> </ul>		<b>시행규칙</b>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2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b>[제6호 서식]</b> 신용정보업(휴업, 폐업) 신고서(제12조)
제11조(겸업)	제11조제1항 위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1천(§ 52④2) &amp;</li> <li>▶ 업무정지 3개월, 일부(§ 14②2)</li> </ul>	제11조(겸업)	<b>시행규칙</b> 제5조(겸업신고 등) 제13조(겸업신고 등) <b>[제7호 서식]</b>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신고서(제13조제2항)
제11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1천(§ 52④2) &amp;</li> <li>▶ 업무정지 6개월, 전부(§ 14②2)</li> </ul>	제11조의2(신용조회회사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제13조의2(신용조회회사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b>[제7호의2 서식]</b>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승인 신청서(제13조의2제4항)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1천(§ 52④2)</li> </ul>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1천(§ 52④2)</li> </ul>		제14조(임원의 겸직 금지) <b>[제8호 서식]</b> 신용정보회사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서(제14조제2항)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제14조제2항 [별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처분 사유 (제14조제2항제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조제2항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刑 3년, 3천(§ 50③1)</li> <li>▶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인허가 취소사유(§ 14①5)</li> </ul>		시행규칙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제6조)
제14조제2항제10호	<p>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제5호 위반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정지 1개월, 일부(§ 14②10)</li> </ul>		
제14조제2항제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을 해칠 우려 업무정지 2개월, 일부(§ 14②11)</li> <li>▶ 공익을 해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전부(§ 14②11)</li> </ul>		
<b>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 조사 및 처리</b>			
제15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원칙)			
제15조제2항본문	과태료 4천(§ 52①1)		
제16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刑 5년, 5천(§ 50②3) &amp;</li> <li>▶ 업무정지 6개월, 전부(§ 14②3)</li> </ul>	제13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17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위탁)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제9호 서식] 제15조제1항 신용정보 처리위탁보고 - 삭제 <2015.9.11.> [제10호 서식] 제15조제2항 반기별 신용정보 처리위탁 현황보고 - 삭제 <2015.9.11.>
제1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1천(§ 52④3)</li> </ul>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제17조제2항	▶ 요건미달자에게 처리를 위탁한 자 및 위탁받은 자 刑 1년, 1천(§ 50④③)		
제17조제4항	▶ 과태료 2,400(§ 52②①) & ▶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전부(§ 14②④)		
제17조제5항	▶ 과태료 800(§ 52④④)		
제17조제6항	▶ 刑 5년, 5천(§ 50②④)		
제17조제7항	▶ 과태료 1,600(§ 52③)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8조제1항	▶ 과태료 1천(§ 52④⑤)		
		제15조제2항	제16조(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15조제3항	제17조(신용조회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변경·관리)
			제18조(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제18조제2항	▶ 刑 1년, 1천(§ 50④④)	제15조제4항제6호	제18조의2(불이익 정보의 범위)
		제15조제5항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의 수립)	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업무정지 3개월, 전부(§ 14②4)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기준(제20조)
제19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刑 5년, 5천(§ 50②5)</li> <li>▶ 보안대책 미수립 과태료 4천(§ 52①2)</li> <li>▶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과징금 50억 이하(§ 42조의2①1)</li> </ul>		
제19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4천(§ 52①2)</li> </ul>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b>[별표 4]</b>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제21조)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 기록의 보존)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b>[별표 4의2]</b> 신용정보 관리기준(제22조 제1항)
제2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2천(§ 52②2)</li> </ul>		
제20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刑 1년, 1천(§ 50④5)</li> </ul>	제16조의2(신용정보회사등의 기록보존) [2016.3.12.]	
제20조제3항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2,400(§ 52②2)</li> </ul>	제17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등)	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대상 등)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제20조제5항	▶ 과태료 3천(§ 52①3)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2016.3.12.]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2016.3.12.]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2016.3.12.] 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
제20조의2제1항	▶ 과태료 1천(§ 52④6)		
제20조의2제2항	▶ 과태료 2,400(§ 52②3)		
제20조의2제3항	▶ 과태료 1천(§ 52④6)		
제20조의2제4항	▶ 과태료 800(§ 52④6)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 과태료 2,400(§ 52②4)		제23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b>제5장 신용정보업</b>			
<b>제1절 신용조회업 등</b>			
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	▶ 제22조제1항 업무정지 3개월, 일부(§ 14②5)	제18조(신용조회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 과태료 800(§ 52④7)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제22조의3(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금지)	▶ 업무정지 1개월, 전부(§ 14②6)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23조제5항 과태료 2,400(§ 52②5)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4조(공공단체의 범위) <b>[별표 5]</b> 공공단체의 지정범위(제24조)
		제19조제4항	제24조의2(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b>[별표 6]</b>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4조의2제2항)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별첨, 양별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집중관리 · 활용”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 · 활용)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신청서) 삭제 <2015.9.11.> 제25조의2(신용정보의 집중 · 관리기관) 삭제 <2015.9.11.>
		<b>[별표 2]</b>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 ·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제21조제3항)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제26조의2(추가 집중관리 · 활용 대상 정보) 삭제 <2015.9.11.>
제25조제3항제2호		제21조제5항	제26조의3(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업무의 분리)
제25조제3항제3호		제21조제6항제1호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b>[별표 2]</b> 신용조회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에 필요한 정보처리 · 정보통신설비 요건(제26조의4제1항)
		제21조제7항	<b>[별표 5의2]</b>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세부요건(제26조의4제2항)
		제21조제9항	<b>[별표 6]</b>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6조의4제3항)
제25조제6항	▶ 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의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刑 3년,3천(§ 50③2)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제26조의6(제재금의 최고한도 금액)
제26조제3항			제28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 · 심의 · 결정 사항의 보고) [제12호 서식]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 · 심의 · 결정 사항의 보고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제22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b>제2절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b>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제29조(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제27조제1항	▶ 업무정지 3개월, 일부(§ 14②5)		
제27조제3항	▶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 추심인등록을 하지 않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刑 1년, 1천(§ 50④6)		
제27조제4항	▶ 刑 1년, 1천(§ 50④7)		
제27조제5항	▶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미등록추심인, 다른 회사 소속 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추심인을 통하여 추심업무를 한 자 刑 1년, 1천(§ 50④8)		
제27조제7항	▶ 업무정지 중에 추심업무를 한 자 刑 1년, 1천(§ 50④9)		
제27조제8항	▶ 과태료 600(§ 52④8)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제27조제9항		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제27조(위임직 채권추심인 자격요건) 삭제 <2015.9.11.>
		제24조제2항	제30조(위임직채권추심인 자격요건) 【제13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신청서(제30조제2항) 【제14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부(제30조제4항)
제27조제10항			시행규칙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제31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삭제 <2015.9.11.>
제3절 삭제 <2013.5.28.>			
제28조 삭제 <2013.5.28.>		제25조 삭제 <2013.8.27.>	제32조 삭제 <2014.4.22.>
제29조 삭제 <2013.5.28.>		제26조 삭제 <2013.8.27.>	제33조 삭제 <2014.4.22.>
제30조 삭제 <2013.5.28.>			제33조의2 삭제 <2014.4.22.>
			제33조의3 삭제 <2014.4.22.>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과태료 800( § 52④9)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2016.3.12.]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2016.3.12.]	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2016.3.12.]
제32조제1항	▶ 刑 5년,5천( § 50②6)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제32조제2항	▶ 刑 5년, 5천(§ 50②⑥)	제28조제6항	제35조(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 제36조(표준 조회동의서의 작성) 삭제 <2015.9.11.> [2016.3.12.]
제32조제3항	▶ 과태료 800(§ 52④⑩)	제28조제7항	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
제32조제4항	▶ 구분 동의 과태료 3천(§ 52①④) ▶ 설명, 고지 과태료 800(§ 52①④)		
제32조제5항	▶ 과태료 3천(§ 52①④)		
제32조제6항제9호		제28조제11항제5호	제38조의2(금융질서문란행위자) [2016.3.12.]
제32조제7항	▶ 과태료 800(§ 52④⑩)	[별표 2의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제28조제12항)	제3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통보 또는 공지) 삭제 <2015.9.11.> [2016.3.12.]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등) [2016.3.12.]
제32조제8항	▶ 과태료 2천(§ 52②⑥)	제28조제13항	제38조의4(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2016.3.12.]
제32조제9항	▶ 과태료 1천(§ 52②⑥)		
제32조제10항	▶ 과태료 800(§ 52④⑩)		제39조(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2016.3.12.]	▶ 刑 5년, 5천(§ 50②⑦)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2016.3.12.]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2016.3.12.]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2016.3.12.]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2016.3.12.]	제39조의2(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2016.3.12.]
제35조제1항	과태료 800(§ 52④11)		
제35조제2항	과태료 800(§ 52④11)	제30조제7항	제4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2016.3.12.] [제15호 서식]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제40조제1항)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제36조제1항 과태료 2천(§ 52②7)	제31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40조의2(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 제37조제3항 과태료 2천(§ 52②8)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제40조의3(동의 철회의 방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제38조제2항	▶ 과태료 2,400(§ 52②9)		
제38조제3항	▶ 과태료 2천(§ 52②7,9)		
제38조제4항	▶ 과태료 800(§ 52②7,9)	제33조제3항	제42조(시정요청서) [제16호 서식] 신용정보 시정요청서
제38조제5항	▶ 과태료 2,400(§ 52②9) & ▶ 업무정지 1개월, 일부(§ 14②9, 별표 제3호)		
제38조제7항	▶ 과태료 1천(§ 52②7,9)		제43조(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2016.3.12.]	제38조의2제2항 ▶ 정보제공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천(§ 52②10) ▶ 정보제공중지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800(§ 52②10)	제33조의2(신용조회회사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2016.3.12.]	[제17호 서식]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제43조의2(신용조회회사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등) [2016.3.12.]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2016.3.12.]	제38조의3제2항 ▶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400(§ 52②11) ▶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800(§ 52②11)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 [2016.3.12.]	제43조의3(삭제 요구에 따른 통지방법) [2016.3.12.]
	제38조의3제3항 ▶ 분리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천(§ 52②11) ▶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800(§ 52②11)		
제39조(무료 열람권)	▶ 과태료 2천(§ 52②12)	제34조(무료 열람권)	
제39조의2(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34조의2(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제43조의4(신용정보 누설사실의 공시 기간)
제39조의2제1항	과태료 2,400(§ 52②13)		
제39조의2제3항	과태료 2,400(§ 52②14)	제34조의2제6항	제43조의5(신용정보의 누설신고) [제18호 서식]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누설신고서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34조의3(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제40조제1호~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刑 3년, 3천(§ 50③③) &amp;</li> <li>▶ 인허가 취소사유(§ 14①⑥)</li> </ul>		
제40조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刑 3년, 3천(§ 50③③) &amp;</li> <li>▶ 업무정지 1개월, 일부(§ 14②⑦)</li> </ul>		
제40조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2,400(§ 52②⑯)</li> </ul>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p>제41조제1항 위반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刑 3년, 3천(§ 50③④) &amp;</li> <li>▶ 허가취소사유(§ 14①⑪)</li> </ul>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심회사가 채권추심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추심행위를 한 경우 허가취소사유(§ 14①⑧)</li> </ul>		
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35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43조의6(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보고)
제41조의2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자 刑 3년, 3천(§ 50③⑤)</li> </ul>		
제41조의2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3천(§ 52①⑤)</li> </ul>		
제41조의2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1천(§ 52④⑫)</li> </ul>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제4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刑 10년, 1억(§ 50①) &amp;</li> <li>▶ 업무정지 6개월, 전부(§ 14②⑧) &amp;</li> <li>▶ 과징금매출액3%(§ 42조의2①②)</li> </ul>		
제42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刑 10년, 1억(§ 50①) &amp;</li> </ul>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별첨, 양별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정지 6개월, 전부(§ 14②8) &amp;</li> <li>▶ 과징금 매출액 3%(§ 42조의2①3)</li> </ul>		
제42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刑 5년, 5천(§ 50②8) &amp;</li> <li>▶ 업무정지 6개월, 전부(§ 14②8)</li> </ul>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35조의4(의견제출)	
		제3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제35조의6(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35조의7(결손처분)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35조의8(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제35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제43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
제44조(신용정보협회)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제7장 보적			
제45조(감독·검사 등)			
제45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1천(§ 52④13) &amp;</li> <li>▶ 업무정지 1개월, 일부(§ 14②9, 별표 제4호)</li> </ul>		
제45조제3항	▶ 과태료 1천(§ 52④13)		
제45조제4항	▶ 과태료 1천(§ 52④13) &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별칙, 양별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 업무정지 1개월, 일부(§ 14②9, 법 별표 제5호)		
제45조 제7항 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일부 (§ 14②9, 법 별표 제6호)		
제45조 제7항 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일부 (§ 14②9, 법 별표 제7호)		
제45조 제7항 제6호	▶ 업무정지 1개월, 일부 (§ 14②9, 법 별표 제8호)		
제46조 삭제 <2013.5.28.>			제45조 삭제 <2014.4.22.>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과태료 1천(§ 52②14)		제46조(회계처리기준등)
			제47조(세부사항)
			제48조(재검토기한)
제48조(청문)			
제49조(권한의 위임 · 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b>[별표 3]</b>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7조 제1항)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별칙)			
제51조(양별규정)			
제52조(과태료)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b>[별표 4]</b>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신용정보법 조문목차 및 제재규정 일람표 (형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조 항	별첨, 양별규정, 과태료	조 항	조 항
부칙		부칙	감독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2조(신용정보회사의 출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업무보고의 적용례)	
제3조(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내부관리규정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 회사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5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7조(법정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신용조회회사의 떨린 업무 및 겸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처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개인신용정보 제공 · 활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개인식별정보 제공 · 이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별첨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시행규칙 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lt;개정 2011.5.19., 2015.3.11.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신용정보</b>”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li> </ol>	<p><b>제2조(정의)</b>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기관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lt;개정 2011.8.17., 2014.2.11., 2015.9.11.&gt;</p>	<p><b>시행규칙 제2조 삭제</b> &lt;2011.8.18.&gt;</p> <p><b>제2조(정의)</b>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p>	<p><b>제2조</b> ①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인식별번호(제29조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와 <b>기업</b>(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 · 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의 성명 · 개인식별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b>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b>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b>제2조 ①</b>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직업 · 재산 · 채무 ·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 · 목적 · 영업실태 ·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概況), 대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p> <p><b>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감사인)</b>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5.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li> <li>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li> </ol>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p>5.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li> <li>나.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li> <li>다.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li> <li>라.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li> <li>마.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li> <li>바.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li> <li>사.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li> <li>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li> </ul>	
	제2조 ① 5. 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① 영 제2조제1항제5호 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p>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20조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기록을 보존하는 정보 중에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li> <li>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규정에 의한 채무재조정 약정정보</li> <li>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li> </ol>
	<p>제2조 ① 5.</p> <p>차.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p>	<p>제2조의2 ② 영 제2조제1항제5호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정보를 말한다.</p>
	<p>카.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p>	<p>③ 영 제2조제1항제5호카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반영하여 생성한 개인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등급 등을 말한다.</p>
	<p>타.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p>	<p>④ 영 제2조제1항제5호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를 말</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p> <p>파.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 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p> <p><b>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b></p> <p>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li> <li>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li> <li>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li> <li>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li> </ul>	<p>한다.</p> <p>⑤ 영 제2조제1항제5호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를 말한다)를 하고 신용정보와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 그 기술의 가액 또는 평가의견 등을 말한다.</p> <p><b>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b></p> <p>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lt;개정 2012.3.21., 2016.3.29.&gt;</p> <p>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다)</p>
제2조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	제2조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중 기업 및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p>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p> <p><b>제2조</b> 4. “신용정보업”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p>5.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p>		
<p>7.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p>	<p><b>제2조</b>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li> <li>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li> <li>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li> <li>4.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li> <li>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li> <li>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은행·보증기금·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연합회</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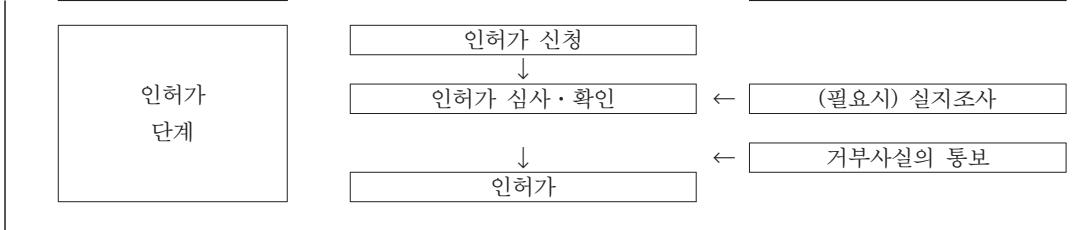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6의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제조합</li> <li>나. 공제회</li> <li>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li> </ul> <p>7. 감사인</p>	
	<p>제2조 ③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p>	<p>제3조(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16.9.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li> <li>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li> <li>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li> </ol>
<p>제2조</p> <p>8. “<b>신용조회업무</b>”란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p> <p>9. “<b>신용조사업무</b>”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0. “<b>채권추심업무</b>”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b>제2조</b>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 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p> <p>12. 삭제 &lt;2013.5.28&gt;</p> <p>13. “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 · 가공·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li> <li>나. 신용정보를 배달·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li> <li>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비슷한 행위</li> </ul>	<p><b>제2조</b> ④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p>	
<p><b>민사집행법</b></p> <p><b>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b>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입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p> <p><b>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b>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장제집행을 하여야 할 수 있다. &lt;개정 2014.5.20.&gt;</p> <p>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소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목개정 2014.5.20.]</p> <p><b>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b>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li> <li>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li> <li>3. 확정된 지급명령</li> <li>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li> <li>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li> </ol>		
<p><b>제3조(신용정보업의 육성)</b>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p> <p>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b>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b>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3.11.]</p>		
제2장 신용정보업의 허가 등		
<p><b>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b>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5.3.1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li> <li>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li> </ul> </li> </ul> <p>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4. 삭제 &lt;2013.5.28.&gt;</p>		
	<p><b>제3조(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b>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는 해당 업(業)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업무</li> <li>2.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 제공 및 구축 관련 자문업무(채권추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li> <li>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5.9.11.]</li> </ul>	<p><b>제4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b>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신용조사업에 딸린 업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현황조사 업무</li> <li>2.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li> <li>3.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홍보, 출판업무</li> <li>4.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업무</li> <li>5.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업무</li> <li>6.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등에 대한 대행 업무</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b>제4조</b>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b>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b>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7.8.3., 2009.4.1.>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0.2.1., 2009.4.1.>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	<b>시행규칙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b>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8.>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5.9.11.>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의견으로서 신용정보업 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그 의견을 알리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lt;신설 2015.9.11.&gt;</p> <p>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명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9.11.&gt;</p> <p>⑥ 그 밖에 신용정보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5.9.11.&gt;</p>
감독규정 제5조(신용정보업 허가 등의 절차)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p>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p> <p>2.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양도 · 양수 · 분할 ·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p> <p>3.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p> <pre> graph TD     A[예비인허가 단계] --&gt; B[절차안내]     B --&gt; C[예비인허가 신청]     C --&gt; D[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D --&gt; E[예비인허가 심사]     E --&gt; F[예비인허가]     D --&gt; G[인터넷 등]     D --&gt; H[(필요시) 공청회]     G --&gt; D     H --&gt; E     I[(필요시) 실지조사] --&gt; E     I --&gt; F     J[거부사실의 통보] --&gt; E     J --&gt; F   </pre>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re> graph TD     A[인허가] --&gt; B[인허가 신청]     B --&gt; C[인허가 심사·확인]     D["(필요시) 실지조사"] --&gt; C     E["거부사실의 통보"] --&gt; C     C --&gt; F[인허가]   </pre>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서식 및 별표 1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1호 서식
2.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
3. 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분할·합병 인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2 서식
4.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3 서식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

- ④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에게 3개월 이내(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자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흠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⑥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또는 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li> <li>2. 제5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 흠풀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li> <li>3. 신청인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li> </ol> <p>⑦ 금융위원회는 허가 또는 인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⑨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자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에 관하여 흠풀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⑪ 예비허가 신청 및 심사 절차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각각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로 본다.</p> <p>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p>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0.4.5., 2016.3.29.>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 말한다. <개정 2010.6.28., 2010.11.15., 2014.12.30., 2015.9.11., 2016.3.11., 2016.5.31., 2016.10.25.>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p> <p>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p> <p>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p> <p>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p> <p>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p> <p>6.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p> <p>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p> <p>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p> <p>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p> <p>5.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p> <p>5의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p> <p>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p> <p>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p> <p>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p> <p>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p> <p>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p> <p>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p> <p>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p> <p>1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p> <p>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p> <p>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p> <p>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p> <p>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p> <p>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p> <p>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p> <p>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p> <p>2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p> <p>22.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삭제 <2013.5.28.>	② 삭제 <2015.9.11.>	
<p><b>제6조(허가의 요건)</b>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p>	<p><b>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b>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lt;개정 2013.8.27., 2015.9.11.&gt;</p> <p>1. 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p> <p>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p>	
	<p>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 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p>	<p><b>제6조(정보처리 · 정보통신설비)</b> ① 영 제6조제1항 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 정보통신설비”란 해당 신용조회업무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정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처리 · 정보통신설비로서 <a href="#">별표 2</a>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b>감독규정 [별표2] 신용조회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에 필요한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요건</b> (제6조제1항 및 제26조의4제1항 관련)			
		구성	세부 요건
		시스템 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등 통신구간 암호화 시스템</li> <li>나. WEB서버(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li> <li>다. 저장장치</li> <li>라. 그 밖에 주변장치</li> </ol> </li> <li>2. 백업 및 복구시스템</li> <li>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li> </ol>
		시스템 성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li> <li>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li> <li>3.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li> </ol>
		보안체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li> <li>2. 침입을 탐지·경고·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갖출 것</li> <li>3. 내부네트워크와 신용조회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운용할 것</li> <li>4.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li> <li>5.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출 것</li> <li>6.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li> <li>7.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li> </ol>
		운용능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li> <li>2.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li> </ol>
		2.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3. 삭제 <2013.8.27.>	② 삭제 <2014. 4. 22.>
제6조 ①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제6조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1.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p> <p>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p>	
<p>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p>	<p>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p> <p><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b>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5.10.23., 2016.7.28.&gt;</p> <p>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b>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b>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p> <p>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li> <li>나. 6촌 이내의 혈족</li> <li>다. 4촌 이내의 인척</li> <li>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li> <li>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li> <li>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li> </u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족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족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족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족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p> <p>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임원</p> <p>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족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p> <p>1.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2.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2.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p> <p>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p> <p>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p> <p><b>제6조 ③</b> 4.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p> <p>5. 임원의 임면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또는 출자자</p> <p>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p>	
	<p>④ 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는 <b>별표 1</b>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p><b>제7조(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b>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신용정보회사의 주주가 영 6조제3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b>제8조(주요출자자 요건)</b> 영 제6조제4항 <b>[별표1]</b> 제1호라목3)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이란 주요출자자가 최대주주로서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전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제외)를 말하며 주요출자자가 금융회사의 임직원(직장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b>제6조</b> ① 4.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b>제7조(자본금)</b>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30억원을 말한다.	
②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1. 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b>제7조(허가 등의 공고)</b>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b>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b> 신용정보회사가 제4조제2	<b>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b> ① 법 제8조 본문에서 “	<b>제9조(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감소의 신고)</b> ① 신용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li> <li>2. 상호 등 정관의 변경</li> </ol>	<p>정보회사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a href="#">별지 제3호</a>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li> <li>2. 신용정보주체 및 채권자의 권리와 신용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li> <li>③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li> <li>1.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li> <li>2.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li> </ol>
	<p>②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li> <li>2.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li> <li>3.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계의 변경, 자구(字句) 수정 등에 관한 사항</li> </ol>	<p><b>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보고)</b> 신용정보회사가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a href="#">별지 제4호</a>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b> ①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p>	<p><b>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b>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예금자보호법」에</p>	<p><b>제11조(지배주주승인신청서 등)</b>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a href="#">별지 제5호</a>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려는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 미만 보유자는 제외한다. &lt;개정 2011.8.17.&gt;</p> <p>1. <b>신용조사회사</b>(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b>채권추심회사</b>(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b>신용조회회사</b>(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요출자자</li> <li>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li> </ul> <p>2. 삭제 &lt;2013.8.27.&gt;</p> <p>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b>별표 1</b>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을 말한다.</p>	<p>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의 효력은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 당시 주식 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합병 신주를 교부받아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가 되려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p>
	<p><b>제9조</b>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8.17.,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li> <li>2.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li> <li>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半期)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li> <li>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5.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p> <p>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5.4, 2010.11.2, 2011.8.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li> <li>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li> <li>3.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 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li> </ol> <p>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승인신청서 흠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p> <p>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11조</b> ⑤ 영 제9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승인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li> <li>2. 영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의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li> <li>3. 승인을 받으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b>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 · 양수 등의 인가 등)</b> ① 신용정보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 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b>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 분할합병)</b>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 할 수 있다.</p> <p>② 신용정보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제1항 및</p>	<p><b>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 · 양수 등의 인가)</b>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양도 · 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b>1. 양도의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일 것</li> <li>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li> <li>다.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li> </ul> <p><b>2. 양수 · 분할 · 합병의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li> <li>나. 사업의 양수 · 분할 ·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절할 것</li> <li>다. 사업의 양수 · 분할 · 합병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li> <li>라.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li> </ul> <p>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p> <p><b>제11조의2(신용정보업의 양도 · 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b>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p>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 감독규정 [별표 2의2] 신용정보업의 양도 · 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제11조의2 관련)

#### 1. 사업의 전부 양도

-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할 것
- 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다.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2. 사업의 일부 양도

-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할 것
- 나. 사업의 일부 양도 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다.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 라.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 3. 분할의 경우

- 가.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1) 신용정보업의 효율적 영위, 구조조정의 촉진 등 분할 목적이 타당할 것
  - 2)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 나.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1) 분할 이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2)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 3) 분할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 4)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 다. 소유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 분할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5조에 적합하고 주요출자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4. 합병의 경우

- 가.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1) 신용정보업의 효율적 영위, 구조조정의 촉진 등 합병의 목적이 타당할 것
  - 2)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 3)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 나.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1) 합병 이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2)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 3) 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 4)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 다. 소유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 합병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5조에 적합하고 주요출자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5. 사업의 양수

합병의 경우를 준용한다.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b>제10조</b> ④ 신용정보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b>시행규칙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b>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2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b> 규칙 제4조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b>별지 제6호</b> 서식에 따른다.</p>
<p><b>제11조(겸업)</b> ①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lt;개정 2013.5.28., 2015.3.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를 가공(加工)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li> <li>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li> <li>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li> <li>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또는 사회에 명백하게</li> </ol>	<p><b>제11조(겸업)</b>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 대행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한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li> </ol> <p><b>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b>자산관리자</b>”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lt;개정 2000.1.21., 2007.8.3., 2009.4.1.&gt;</li> <li>자산보유자</li> <li>「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li> <li>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li> </ol>	<p><b>시행규칙 제5조(겸업신고 등)</b> ① 신용정보회사(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려는 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겸업업무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 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li> <li>겸업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li> <li>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해약을 끼칠 수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p> <p>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법인(영 제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li> <li>2.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li> <li>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li> </ol> </li> <li>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li> <li>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ol> <p>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lt;개정 2000.2.1., 2009.4.1.&gt;</p> <p>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0.1.21.&gt;</p>	<p>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p> <p>②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겸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에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 등의 업무의 내용과 제1항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9.11.&gt;</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2. 외국인인 채권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 대행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한 경우	
제11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회사는 영 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 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의뢰에 따 른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 등의 업무로서 금융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p>제11조의2(신용조회회사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16.9.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li> <li>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li> <li>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li> <li>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 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li> <li>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li> </ol>	<p>제13조(겸업신고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겸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다.</p> <p>②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a href="#">별지 제7호</a>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의2(신용조회회사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① 영 제11조의2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li> <li>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li> <li>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 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li> <li>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투자·출자·출연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p> <p>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p> <p>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p> <p>8. 법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p>	
	<p>제11조의2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5.9.11.]</p>	<p>제13조의2 ② 영 제11조의2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li> <li>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li> <li>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승인을 신청한 내용이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li> <li>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p>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li> <li>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li> </ol>		<p>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p> <p>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p>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p> <p>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p> <p>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lt;개정 2007.12.14., 2008.2.29.&gt;</p> <p>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p> <p>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p> <p>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p> <p>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p>	<p><b>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b>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6.1.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li> <li>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li> </ol> <p>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lt;신설 2016.1.28.&gt;</p>
<p><b>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b></p> <p>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lt;개정 2011.7.25.&gt;</p> <p>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p> <p><b>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b>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p> <p>②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b>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b>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lt;개정 2014.5.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li> <li>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li> <li>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li> <li>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b>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b>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li> <li>2. 공업용수도사업</li> </ol>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p> <p>4. 자동차운송사업</p> <p>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p> <p>6. 하수도사업</p> <p>7. 주택사업</p> <p>8. 토지개발사업</p> <p>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p> <p>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p> <p>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p> <p>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p> <p>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p> <p><b>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b>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p> <p><b>제76조(설립·운영)</b>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

<p><b>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b>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gt;</p> <p>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p> <p><b>제3조의2(공직유관단체)</b>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4.12.30.&gt;</p> <p>1. 한국은행</p> <p>2. 공기업</p> <p>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p> <p>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p> <p>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p> <p>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p>
---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5.28.>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법 제1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임임원의 겸직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li> <li>상임임원의 겸직이 당해 신용정보회사 및 관련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것</li> </ol> <p>② 제1항에 따라 겸직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b>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3.5.28., 2015.3.11.&gt;</p>	<p><b>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b>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소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li> <li>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li> </ol> <p><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b>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3. 삭제 &lt;2013.5.28.&gt;</p> <p>4. 신용정보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난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p> <p>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p> <p>6.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p> <p>7. 삭제 &lt;2013.5.28.&gt;</p> <p>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p> <p><b>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4.1.14., 2014.5.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li> <li>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li> <li>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li> <li>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li> <li>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li> <li>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li> </ol> <p>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p> <p>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b>제14조</b>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3.5.28., 2015.3.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li> <li>2. 제11조를 위반한 경우</li> <li>3. 제16조에 따른 수집·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li> <li>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li> <li>5.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li> <li>6. 신용조회회사가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계열회사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li> <li>7. 제40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li> <li>8. 제42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li> <li>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li> <li>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li> </ol>	<p><b>시행규칙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b>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a href="#">별표</a>와 같다.</p>	
<p><b>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4.5.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li> <li>2. 업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li> </ol>		
<p><b>* 법 별표</b> &lt;개정 2015.3.11.&gt;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제2항제9호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삭제 &lt;2013.5.28&gt;</li> <li>3. 제38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li>4.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li>5. 제45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li> <li>6. 제45조제7항제4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ol>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7. 제45조제7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45조제7항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b>시행규칙 [별표] &lt;개정 2015.9.11.&gt; 행정처분의 기준(제6조 관련)</b>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 범위
1.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의 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1호	6개월	전부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9호, 법 별표 제1호	6개월	전부
3.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겸업을 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2호	3개월	일부
4.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한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겸업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2호	6개월	전부
5. 법 제16조에 따른 수집·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3호	6개월	전부
6. 법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4호	3개월	전부
7.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으로 채용·고용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직원으로 채용·고용하거나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5호	3개월	일부
8. 신용조회회사가 법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계열회사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6호	1개월	전부
9.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9호, 법 별표 제3호	1개월	일부
10. 법 제40조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7호	1개월	일부
1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또는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8호	6개월	전부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1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8호	6개월
1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9호, 법 별표 제4호	일부
14.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9호, 법 별표 제5호	일부
15. 법 제45조제7항제4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9호, 법 별표 제6호	일부
16. 법 제45조제7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9호, 법 별표 제7호	일부
17. 법 제45조제7항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9호, 법 별표 제8호	일부
1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 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2항제10호	일부
19.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11호	2개월
20.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11호	3개월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 조사 및 처리		전부
<p><b>제15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원칙)</b>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 · 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 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 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2.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p> <p>3.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3.11.]</p>		
<p><b>제16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제한)</b>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li> <li>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li> <li>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li> <li>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li> <li>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li> <li>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li> </ol>		
<p>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p>	<p><b>제13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제한)</b>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계약 · 공제계약 및 보험금 · 공제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lt;개정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li> <li>2.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li> <li>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제조합</li> <li>나. 공제회</li> </ul> </li> <li>4.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 · 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b>제17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b>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업무 범위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5조(해당 조문에 대한 별처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5.3.11.>	<b>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b> ① 법 제17조 제2항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3.29.>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한 자</li> <li>2.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자</li> <li>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한 자</li> <li>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자</li> </ol> <b>제17조</b>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b>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b>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b>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b>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b>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b> 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b>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b>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부터 7영업일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5.9.11.&gt;</p>	
<p>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3.11.&gt;</p>	<p>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보안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조치</li> <li>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봉함(封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조치</li> </ol>	<p>② 영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보안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란 별표 3의 II. 3.의 보호조치를 말한다.</p>
<p><b>제17조</b>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3.11.&gt;</p>	<p><b>제14조</b>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위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1회 이상)을 말한다. 이하의 항에서 같다) 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b>제17조</b> ⑥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lt;신설 2015.3.11.&gt;</p>	<p>관하여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위탁계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연 1회 이상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위탁계약에 반영되어 있고,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가 그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lt;신설 2015.9.11.&gt;</p> <p><b>제14조</b>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세부사항, 그 밖에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lt;신설 2015.9.11.&gt; [제목개정 2015.9.11.]</p>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7.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7호, 2015.7.22.,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b>제1조(목적)</b>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2.> <b>제2조(정의)</b>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개정 2015.7.22.>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7.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0호, 2015.6.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b>제1조(목적)</b>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5> <b>제2조(정의)</b>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p> <p>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p> <p>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p> <p>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p> <p>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p> <p>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p> <p>1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전자금융업자</p> <p>② 「외국계 금융회사」라 함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국내 지점 또는 계열사인 전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p> <p>③ 「계열사」라 함은 해당 금융회사와 주식보유 등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상법상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출자관계로 연결된 경우를 말한다(다만, 상장된 회사의 경우 소유지분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p> <p>④ 「금융거래정보」라 함은 금융회사(제2조제2항의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객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금융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해당 고객의 정보 및 금융거래행위의 결과로 생성된 고객의 거래내역 정보를 의미한다. &lt;개정 2015.7.22.&gt;</p> <p>⑤ 「정보처리」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lt;개정 2015.7.22.&gt;</p> <p>⑥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 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lt;개정 2015.7.22.&gt;</p> <p>⑦ 「전산사고」라 함은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장애, 재해, 파업, 테러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업무의 중단 또는 지연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⑧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3조(적용범위 등)</b> 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lt;개정 2015.7.22.&gt;</p>	<p>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종양회</p> <p>8.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p> <p>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p> <p>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p> <p>1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p> <p>12.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p> <p>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종양회,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그 종양회의 상호금융부문</p> <p>14. 기타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p> <p>② 이 규정에서 "업무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용역계약은 제외한다. &lt;신설 2005. 7. 27&gt;</p> <p>③ 이 규정에서 "업무수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3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국내외 본지점간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의 공급계약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으로 간주한다.</p> <p><b>제3조(업무위탁 등)</b>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li> <li>2.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li> <li>3.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li> </ol> <p>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lt;별표 1&gt;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lt;본호 삭제 2005. 7. 27&gt;</li> <li>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②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업의 인가등을 신청한 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lt;개정 2015.7.22.&gt;</p> <p>③ 삭제 &lt;2015.7.22.&gt;</p> <p><b>제4조(정보처리의 위탁)</b> ① 금융회사는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5.7.22.&gt;</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제2호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코스콤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에 원장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li> <li>2.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lt;개정 2015.7.22.&gt;</li> <li>3. 기타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li> </ol> <p>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수탁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을 계약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7.22.&gt;</p> <p>④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5조,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lt;개정 2015.7.22.&gt;</p> <p>⑤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전받은 정보를 당초 위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동의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된 처리와 관련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은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위한 전산설비 및 인력 구비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판단시 고려한다. &lt;개정 2015.7.22.&gt;</p> <p>⑦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정보주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회사</p>	<p>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비용·편익분석</li> <li>2. 금융이용자 피해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li> <li>3. 제3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위탁 또는 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li> <li>4. 제3자가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li> <li>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의 저촉여부</li> </ol> <p><b>제3조의2(업무위수탁기준)</b> 금융기관은 제3조에서 정한 업무위탁 등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lt;별표2&gt;에서 정하는 업무위수탁기준에 따라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b>제4조(보고)</b> ① 금융기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금융기관 제외)와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lt;별지 제1호 서식&gt;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 또는 수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li> <li>2. 제3조제3항 각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li> <li>3. 위탁 또는 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li> <li>4. 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내용</li> </ol> <p>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사전보고를 생략하고, &lt;별지 제2호 서식&gt;에 따라 반기현황을 당해연도 7월말 또는 익년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협회 등이 회원 금융기관의 현황을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다. &lt;개정 2005. 7.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금융기관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 또는 수탁 상대방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lt;개정 2005. 7. 27&gt;</li> <li>2. 금융기관이 약관 등을 보고하면서 당해 약관 등의 내용과 관련된 위탁 또는 수탁예정업무를 보고한 경우(제1항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lt;개정 2005. 7. 27&gt;</li> <li>3.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li> </ol> <p>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고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현황을 매반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5. 7. 27&gt;</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lt;개정 2015.7.22.&gt;</p> <p><b>제5조(특정정보의 보호)</b> ① 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7.22.&gt;</p> <p>② 금융회사는 위탁 처리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p> <p><b>제6조 삭제</b> &lt;2015.7.22.&gt;</p> <p><b>제7조(보고)</b> ①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 계약의 체결예정일로부터 30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7.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계약서(안) 사본</li> <li>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탁 운영기준'</li> <li>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 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li> <li>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li> <li>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li> <li>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7.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본호신설 2015.7.22.]</li> <li>8.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본호신설 2015.7.22.]</li> </ol> <p>②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의 체결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7.22.&gt;</p>	<p>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lt;개정 2015.7.22.&gt;</p> <p><b>제5조(변경권고등)</b> 감독원장은 업무위탁 또는 수탁이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를 자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5. 7. 27&gt;</p> <p><b>제6조(적용배제)</b>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05. 7. 27&gt;</p> <p><b>제7조 삭제</b> &lt;2005. 7. 27&gt;</p> <p><b>제8조(재검토기한)</b>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 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6.30]</p>	<p>부칙&lt;제2015-20호, 2015.6.30.&gt;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등 일괄개정규정)</p> <p>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별표 1]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p> <p>[별표 2] 업무 위탁 기준</p>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7.22]

④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반기 현황을 해당 연도 7월말 또는 이듬해 1월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협회 등이 회원 금융회사의 현황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금융회사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 상대방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나.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제2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이외의 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15.7.22]

⑤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보고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증전 제3항에서 이동]

**제8조(감독 및 검사)** ① 위탁 금융회사 및 해당 업무의 수탁회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되는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② 삭제 <2015.7.22.>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 현황을 매 반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정보처리 위탁행위 또는 위탁된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제7조제1항제2호의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2.>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

#### [서식 1] 업무 위수탁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05. 7. 27>

#### 업무 위수탁 보고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해당 감독국장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 위수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계약건명	
계약상대방(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 수)	
계약기간	
계약내용	

#### \* 첨부서류

- 계약상대방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1부
- 업무 위수탁 관련 계약(안) 사본 1부
- 동 규정 제3조제3항 각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1부
- 업무 위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부
- 업무 위수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내용 1부
- 기타 관련 또는 참고 서류 각 1부

대표이사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연락처 :

<b>신용정보법</b>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b>시행령</b>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b>시행규칙, 감독규정</b>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lt;개정 2015.7.22.&gt;  <b>부칙</b> &lt;제2015-27호, 2015.7.22.&gt;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서식 2] 상(하)반기 업무위수탁 현황 보고      &lt;별지 제2호 서식&gt; &lt;신설 2005. 7. 27&gt;</p> <p style="text-align: center;"><b>20××년도 상(하)반기 업무위수탁 현황 보고</b></p> <p>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해당 감독국장</p> <p>『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20××년 상(하)반기 중 업무위수탁 현황(제4조제1항에 의한 사전보고사항 제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2px;">계약건명</td><td style="padding: 2px;"></td></tr> <tr><td style="padding: 2px;">계약상대방(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 수)</td><td style="padding: 2px;"></td></tr> <tr><td style="padding: 2px;">계약기간</td><td style="padding: 2px;"></td></tr> <tr><td style="padding: 2px;">계약내용</td><td style="padding: 2px;"></td></tr> <tr><td style="padding: 2px;">계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td><td style="padding: 2px;"></td></tr> <tr><td style="padding: 2px;">사전보고대상에서 제외한 사유</td><td style="padding: 2px;"></td></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이사 (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작 성 자 : (직 위) (성명)</td></tr> <tr><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연 락 처 :</td></tr> </table>		계약건명		계약상대방(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 수)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전보고대상에서 제외한 사유		작 성 자 : (직 위) (성명)	연 락 처 :
계약건명																
계약상대방(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 수)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전보고대상에서 제외한 사유																
작 성 자 : (직 위) (성명)																
연 락 처 :																

**제17조** ⑦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 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감독규정 제15조** ③ 법 제1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련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재위탁자 또는 재수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p>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p> <p>3. 그 밖에 재위탁으로 인하여 재위탁자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p> <p>④ 수탁자가 전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 별표 4 중 재위탁에 관한 신용정보 보안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⑤ 신용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영,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b>위탁규정</b>”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b>신용정보회사등</b>”으로 본다.</p> <p>⑥ 제1항의 자가 수탁자가 영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 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본다.</p>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 <b>신용정보회사등</b> ”이라 한		제17조(신용조회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변경·관리)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영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다)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변경·관리하여야 한다.	<p>제2조제1항의 신용정보별로 등록·변경·관리 기준을 마련한다.</p> <p>②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의 선별기준(신용조회 회사만 해당한다)</li> <li>2.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별 정보 등록 방식에 관한 사항</li> <li>3.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제18조 각 호의 기간 이 만료된 정보의 등록시 제재에 관련한 사항</li> </ol> <p>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 이용자가 조회한 목적에 일치하는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18조(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어음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li> <li>2.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li> </ol> <p><b>제2조 ①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b></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p><b>제18조</b>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5.19.&gt;</p> <p>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11.5.19&gt;</p>	<p><b>제15조</b>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1.8.17.,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li> <li>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li> <li>3.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면책·복권 결정 및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li> <li>4.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li> <li>5.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li> </ol>	
	<p>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p>	<p><b>제18조의2(불이익 정보의 범위)</b> 영 제15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란 제2조의2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신용정보를 말한다.</p> <p><b>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b> ①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규정에 의한 채무재조정 약정정보</p> <p>3. 신용회복지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p> <p>② 영 제2조제1항제5호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정보를 말한다.</p>
	<p><b>제15조</b>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lt;신설 2011.8.17.&gt;</p> <p>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lt;신설 2011.8.17.&gt;</p>	<p><b>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b> ①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영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p> <p>2. 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p> <p>3. 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p> <p>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p> <p>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p>
<p><b>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b>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p>	<p><b>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b></p> <p>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p> <p>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b>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b>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b>별표 3</b> 과 같다.

### 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 I. 목적

이 기준은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I.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 1. 접근통제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 한다)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주체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한다.</p> <p>⑧ 신용정보회사등은 업무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개인신용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권한 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p>		<p>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li> <li>3.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li> </ol> </li> </ol>
<b>2.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b>		
<p>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p> <p>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한다.</p>		
<b>3. 개인정보의 암호화</b>		
<p>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는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사유·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li> <li>2. 웹서버에 암호화·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li> </ol> <p>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p> <p>④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② 제1항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한다.</p>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h3>5. 출력 · 복사시 보호조치</h3>		
<p>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p> <p>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p>		
<h3>III. 관리적 보안대책</h3>		
<h4>1.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h4>		
<p>①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폐기 등 관리 및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폐기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li> <li>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li> <li>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li> <li>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li> <li>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b>제19조</b>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b>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b>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a href="#">별표 4</a> 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감독규정 [별표 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제21조 관련)**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 마. 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 사항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1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이 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 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
- 마.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3.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1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마.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가.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신용정보의 내용
- 나.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라.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 마.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감독하는 사항(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b>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b>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lt;개정 2015.3.11.&gt;</p>		<p><b>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b>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은 <a href="#">별표 4의2</a>와 같다.</p> <p>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관리규정을 제1항의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마련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그 특별한 사정을 내부관리규정에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p> <p>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마련한 내부관리규정이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b>제20조</b>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li> <li>2.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li> <li>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li> </ol>	<p><b>제16조의2(신용정보회사등의 기록보존)</b>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그 정보를 수집·이용한 자, 수집·이용한 날짜, 수집·이용한 정보의 내용 및 수집·이용한 사유와 근거</li> <li>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자, 제공한 날짜,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및 제공한 사유와 근거</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그 정보를 폐기한 자, 폐기한 날짜, 폐기한 정보의 내용 및 폐기한 사유와 근거 [본조신설 2015.9.11.] [시행일 : 2016. 3. 12] 제16조의2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p><b>제17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등)</b> ①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15.9.11.&gt;</p> <p>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li> <li>2. 신용조회회사</li> <li>3.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li> </ol>	<p><b>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대상 등)</b></p> <p>① 영 제17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라 상시 종업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한다.</p>
<p><b>제20조</b>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lt;신설 2015.3.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li> <li>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p> <p>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p> <p>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b>제20조</b> ⑤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제4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 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3.11.&gt;</p>		<p><b>제22조의2</b>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10. 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li> <li>2. 제1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li> </ol>
<p>⑥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5.3.11.&gt;</p> <p><b>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b>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p>	<p><b>제17조</b> ③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내이사</li> <li>2.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li> </ol> <p><b>상법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b>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 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7.31., 2014.5.28.&gt;</p> <p>⑦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제6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본다. &lt;개정 2015.3.11.&gt;</p>	<p>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 한다.</p> <p>3.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p>	<p><b>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b>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p>
<p>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b>제17조</b> ④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9.11.&gt;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9.11.&gt;          ⑥ 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선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9.11.&gt;</p>	<p><b>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b>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b>제17조의2</b> ①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다</p>
		<p><b>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b>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이란 3개월을 말한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음 각 목의 방법</p> <p>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 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p> <p>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p> <p>다. 그 밖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p> <p>2. 제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p>	<p><b>제22조의3</b>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영 제17조의 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p> <p>③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b>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b>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등에 보관할 것</li> <li>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 할 것</li> <li>보존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현황파악, 열람, 대</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p> <p>4. 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대표이사가 폐기결과를 확인 할 것</p> <p>&lt;신설 2016.3.16&gt;</p>
<p><b>제17조의2</b>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와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로 구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개인신용정보가 없었다면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가 설정·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 여부</li> <li>해당 개인신용정보가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li> <li>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li> </ol>	<p><b>제17조의2</b>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6.9.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면예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을 말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ol>	<p><b>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b> &lt;제정 2016.3.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li> </ol>
<p><b>제20조의2</b>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 <li>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b>제17조의2</b>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6.9.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li> <li>위험관리체계의 구축과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3.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4.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5.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제15조제4항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p>	
<p><b>제20조의2</b>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관리기간, 삭제의 방법·절차 및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3.11.]</p>	<p><b>제17조의2</b> ④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p> <p>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제2호 및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⑦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15.9.11.]</p>	
<p><b>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b>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p>		<p><b>제23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b>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제5장 신용정보업		
제1절 신용조회업 등		
<p><b>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b> ① 신용조회회사(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li> <li>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li> <li>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 <li>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ol> <p>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 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② 신용조회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회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b>제18조(신용조회업 종사자의 결격요건)</b>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허가 · 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 · 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lt;개정 2015.9.11.&gt;</p> <p><b>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행정처분)</b>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0.3.12.&gt;</p> <p><b>제10조(적기시정조치)</b>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li> <li>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li> <li>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li> <li>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li> <li>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li> <li>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li> <li>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li> <li>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li> <li>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p>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19.]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li> <li>2.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으로부터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li> <li>3.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li> <li>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li> </ol>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①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대상자 및 수집·조사·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li> <li>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p> <p>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p>	
<p>제22조의3(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금지) 신용조회회사는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조회회사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li> <li>제32조제6항제4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li> </ol> <p>[본조신설 2015.3.11.]</p>	<p><b>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b></p> <p>3. "계열회사"라 함은 20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p>	
<p>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삭제 &lt;2015.3.11.&gt;</p> <p>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p>	<p>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p> <p>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15.9.11. 2016.9.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li> </ol>	<p>제24조(공공단체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범위는 <a href="#">별표 5</a>에 따른다.</p> <p><b>[별표 5] 공공단체의 지정범위(제24조 관련)</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li> <li>「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1.3.29., 2015.3.11.&gt;</p> <p>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한국전력공사법」      6. 「주민등록법」</p>	<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p>	<p>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8.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9.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1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p>
	<p><b>제19조</b>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는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lt;개정 2015.9.11.&gt;</p> <p>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3.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p> <p>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p> <p>5.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p> <p>6.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p> <p>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주기적 파일로 제공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5.4., 2015.9.11.&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전자정부법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b>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4.11.19.&gt;</p> </div>	
제19조 ④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은 <a href="#">별표 6</a> 제6호와 같다.	
제23조 ③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	⑤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lt;개정 2015.3.11.&gt;</p>	<p>용정보의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li> <li>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li> <li>3. 신용조회회사 [제목개정 2015.9.11.]</li> </ol>	
<p>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3.11.&gt;</p> <p>⑤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의 이용자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5.3.11.&gt;</p> <p>⑥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lt;개정 2015.3.11.&gt;</p> <p>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3.11.]</p>		
<p><b>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b>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4.11.19.&gt;</p> <p>1. 「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p>	<p><b>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b>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b>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b> ① 법 제5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 말한다. &lt;개정 2010.6.28., 2010.11.15., 2014.12.30., 2015.9.11., 2016.3.11., 2016.5.31., 2016.10.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li> <li>2. 금융지주회사</li> <li>3. 한국산업은행</li> <li>4. 한국수출입은행</li> <li>5. 농협은행</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p> <p>2. 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처리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다.</p>	<p>5의2. 수협은행 6. 중소기업은행 7. 한국주택금융공사 8.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0.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3.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5. 보험회사 16.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p>	<p>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7. 기술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 19.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0. 한국무역보험공사 21.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2.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p>
<p><b>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b> ①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gt;</p> <p><b>상법 제64조(상사시효)</b>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p>		
<p><b>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b>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5.3.11.&gt;</p>	<p><b>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b>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b>제25조</b> 삭제 &lt;2015.9.11.&gt; <b>제25조의2</b> 삭제 &lt;2015.9.11&gt;</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lt;개정 2010.5.4., 2011.8.17.,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li> <li>2. 집중관리·활용하려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li> <li>3.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li> </ol>	
<p><b>제25조</b>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5.3.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li> </ol>	<p><b>제21조</b>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 까지의 금융기관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11.1.17., 2012.1.25., 2015.6.30., 2015.9.11., 2016.9.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li> <li>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li> <li>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li> <li>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li> <li>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li> <li>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li> <li>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li> <li>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 정리금융공사 KR&amp;C]</li> <li>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li> <li>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li> <li>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舊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li> <li>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li> <li>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li> <li>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li> <li>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li> <li>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리공사</p> <p>17.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 舊 신용회복기금]</p> <p>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p> <p>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p> <p>20.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p> <p><b>산업 발전 법 제40조(공제조합)</b>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1. 기계·부품·소재산업 등의 자본재(資本財) 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재공제조합</p> <p>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p> <p><b>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b>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p>	
제21조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 ·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a href="#">별표 2</a> 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a href="#">별표 2</a> 에서 규정한 정보 외에 집중관리 ·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집중관리 · 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 · 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 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삭제 <2015.9.11>	
제25조 ②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 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④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 ·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정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③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2015.3.11.&gt;</p> <p>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p>		
<p>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p>	<p>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lt;신설 2015.9.11.&gt;</p> <p><b>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b> 다음 각 목의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li> <li>나.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중기관업무와 그 다른 업무를 구분하는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li> <li>다.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전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li> <li>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간 또는 그 기관의 유형·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업무집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해당 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을 마련할 것</li> </ul>	<p><b>제26조의3(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업무의 분리)</b>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이하 “기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집중기관업무와 구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무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장부를 마련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li> <li>나. 집중기관업무 관련 예·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것</li> </ul> </li> <li>2. 임직원(대표자인 임원, 감사는 제외한다)이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li> <li>3.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간에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할 것</li> </ol> <p>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제25조 ③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제21조 ⑥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집 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및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1.>	1.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설비 및 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① 영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집중관리·활용업무”로 본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구성</th><th style="text-align: left;">세부 요건</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스템 구성</td><td>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등 통신구간 암호화 시스템            나. WEB서버(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다. 저장장치            라. 그 밖에 주변장치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스템 성능</td><td>           1.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3.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안체계</td><td>           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            2. 침입을 탐지·경고·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갖출 것            3. 내부네트워크와 신용조회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            4.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5.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출 것            6.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7.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운용능력</td><td>           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2.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         </td></tr> </tbody> </table>		구성	세부 요건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등 통신구간 암호화 시스템 나. WEB서버(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다. 저장장치 라. 그 밖에 주변장치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시스템 성능	1.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3.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보안체계	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 2. 침입을 탐지·경고·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갖출 것 3. 내부네트워크와 신용조회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 4.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5.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출 것 6.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7.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운용능력	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2.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
구성	세부 요건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등 통신구간 암호화 시스템 나. WEB서버(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다. 저장장치 라. 그 밖에 주변장치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시스템 성능	1.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3.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보안체계	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 2. 침입을 탐지·경고·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갖출 것 3. 내부네트워크와 신용조회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 4.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5.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출 것 6.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7.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운용능력	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2.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b>제21조 ⑥ 2.</b> 상시고용인력에는 제2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신용조회회사</li> <li>나. 신용정보집중기관</li> <li>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li> <li>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li> </ul>	
	<p>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 &lt;신설 2015.9.11.&gt;</p>	<p><b>제26조의4 ②</b> 영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 기관 허가의 세부요건은 <b>별표 5의2</b>와 같다.</p>

#### 감독규정 [별표 5의2]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세부요건(제26조의4제2항 관련)

##### 1. 인력

가.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영 제2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가. 신용조회회사

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3) 그 밖에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1) 최근 5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된 사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 2. 물적 설비

가.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1) 집중관리 · 활용하는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 등 특별히 민감한 정보는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p> <p>(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p> <p>(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 ·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p> <p>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p> <p>(1) 과업 등 불시사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p>		<p>나.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p> <p>다.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p>
<p><b>3. 사업계획</b></p> <p>가. 사업계획이 이 법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p> <p>나. 내부통제장치 및 신용정보주체 보호</p> <p>(1) 총회(이사회가 설치된 경우 이사회 포함)와 경영진의 관계, 총회(이사회가 설치된 경우 이사회 포함)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적절할 것</p> <p>(2) 임직원의 법규준수, 정보보호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p>	<p><b>5. 지배구조 관련 사항</b></p> <p>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p> <p>나. 사원구성계획이 집중관리 · 활용에 참여하는 기관의 종류에 따른 대표성과 중립성을 만족할 것</p>	<p><b>6. 제26조의3에 따른 업무분리계획(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b></p> <p>가. 재무에 관한 사항</p> <p>(1)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사이에 별도의 회계장부를 마련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p> <p>(2) 집중기관업무에 관련된 예 · 결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p> <p>나. 인사에 관한 사항</p> <p>(1) 임원(대표권을 가진 이사, 감사를 제외한다)이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p> <p>(2) 집중기관업무의 독립성 및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할 것</p> <p>다. 조직에 관한 사항</p> <p>(1)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간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것</p> <p>(2)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 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p> <p>라. 시설에 관한 사항</p> <p>(1)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사이에 사무실 등 업무공간을 분리할 것</p> <p>(2)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사이에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 · 감독 · 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b>제25조</b>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내용·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신용조회회사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lt;개정 2015.3.11.&gt;</p>	<p><b>제21조</b> ⑧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li> <li>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li> <li>3.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4. 같은 종류의 업체 간에 협약의 불성립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집중 제한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5.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교환하거나 활용하는 등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li> <li>6.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li> </ol>	
	<p>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사이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 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li> <li>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li> <li>3. 신용정보집중기관 간</li> </ol> <p>⑩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가 제9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를 교환할 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9.11.&gt;</p>	<p><b>제26조의4</b> 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a href="#">별표 6</a>과 같다.</p> <p>④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여야 한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b>제25조</b>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lt;개정 2015.3.11.&gt;</p> <p>⑥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p>		
<p><b>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1.5.19., 2013.3.23., 2013.8.13., 2014.10.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li> <li>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li> <li>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li> </ol>	<p><b>제21조</b>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은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 &lt;개정 2015.9.11.&gt;</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b>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b>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li> <li>2.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li> <li>3. 신용정보의 가공·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li> <li>4.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li> <li>5. 다른 법령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li> <li>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li> </ol> <p>[본조신설 2015.3.11.]</p>	<p><b>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b> ①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li> <li>2. 제21조제9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로부터 위탁받은 조사 및 분석 업무</li> <li>3.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컨설팅 업무</li> </ol> <p>② 법 제25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와 관련한 교육·홍보·출판업무</li> <li>2. 기술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li> <li>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li> </ol> <p>[본조신설 2015.9.11.]</p>	<p><b>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b>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15.3.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li> <li>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li> <li>3.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li> </ol>
		<p><b>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b> ① 법</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p>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制裁金)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lt;개정 2015.9.11.&gt;</p> <p>② 제1항에 따른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lt;개정 2015.9.11.&gt;</p>	<p><b>제26조의6(제재금의 최고한도 금액)</b>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금의 최고 한도 금액은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건당 1백만 원으로 한다. &lt;개정 2016.10.20.&gt;</p>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	<p>③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lt;신설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업무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의 심의</li> <li>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심의</li> </ol>	
② 삭제 <2015.3.11.>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제목개정 2015.3.11.]	<p>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lt;개정 2015.9.11.&gt;</p> <p>[제목개정 2015.9.11.]</p>	<p><b>제28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심의·결정 사항의 보고)</b>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협의·심의·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a href="#">별지 제12호</a>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p>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제22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익성, 중립성, 업권별 대표성, 신용정보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3.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li> <li>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협회·중앙회·연합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li> <li>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한 공익성·전문성·중립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li> </ol> <p>②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1.]</p>	
<p><b>제2절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b></p> <p><b>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b> ①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li> <li>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 <li>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ol>	<p><b>제29조(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b> 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업무</li> <li>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li> </ol>	
<p>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 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p>	<p><b>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b>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말한다.	
<p><b>제27조</b>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li> <li>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b>위임직채권추심인</b>”이라 한다)</li> <li>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li> <li>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li> <li>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li> <li>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li> <li>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li> <li>⑥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li>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li> <li>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li> <li>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li> <li>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li> </ol>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⑦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항을 위반한 경우</li> <li>2. 제16조에 따른 수집·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li> <li>3. 제40조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li> <li>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한 경우</li> <li>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li> </ol> <p>⑧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⑨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4.5.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li> <li>5. 업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li> </ol>
	<p><b>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15. 9.11.&g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이하 “신용정보협회”라 한다)</li> <li>나. 신용정보협회가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li> <li>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li> </ol> </li> <li>2. 삭제 &lt;2015.9.11.&gt;</li> </ol> </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제27조 삭제 <2015.9.11>
	<p>②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그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9.11.&gt;</p>	<p><b>제30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b> ① 영 제24조 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이란 법 제44조의 신용정보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가 주관하는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p> <p>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a href="#">별지 제13호</a>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영 제2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협회의 장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a href="#">별지 제14호</a> 서식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p>
제27조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적·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 9. 11.> <b>제31조 삭제</b> <2015.9.11>
<b>제3절 삭제</b> <2013.5.28.>		
제28조 삭제 <2013.5.28.> 제29조 삭제 <2013.5.28.> 제30조 삭제 <2013.5.28.>	제25조 삭제 <2013.8.27.> 제26조 삭제 <2013.8.27.>	제32조 삭제 <2014.4.22.> 제33조 삭제 <2014.4.22.> 제33조의2 삭제 <2014. 4. 22.> 제33조의3 삭제 <2014. 4. 22.>
<b>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b>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3.29.> ②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7.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용조회회사만 해당한다)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li> <li>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li> </ol>	
<p><b>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b>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5.3.11.&gt;</p>	<p><b>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삭제 &lt;2015.9.11.&gt;</li> <li>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lt;개정 2015.9.11.&gt;</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li> <li>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li> <li>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li> <li>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li> </ol>	<p><b>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b>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별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면</li> <li>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li> <li>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li> </ol>	<p><b>전자서명법 제2조(정의)</b>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p> <p>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p>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p> <p><b>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정의)</b>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p>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p><b>제28조</b>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9.11.&gt;</p>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p>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lt;신설 2015.9.11.&gt;</p>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준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p>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lt;개정</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3.1.1.&gt;</p>	<p>2015.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li> <li>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li> <li>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li> </ol>	
	<p><b>제28조 ⑥</b>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li> <li>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li> <li>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li> <li>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li> </ol>	<p><b>제35조(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b> 영 제28 조제6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p><b>제36조</b> 삭제 &lt;2015.9.11.&gt;</p>
<p>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p>	<p><b>제28조 ⑦</b>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9.11.&gt;</p>	<p><b>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b> ①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영 제28조제7항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의서 사본을 제출받는 방식</li> <li>2. 법 제32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방식</p> <p>3.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방식</p> <p>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태, 정보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방식 중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제3호의 방식을 통해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사실 확인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3.11.&gt;</p> <p>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p>	<p>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li> <li>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다. <신설 2015.3.11.>	<p>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p> <p>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p> <p>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9.11.&gt;</p>	
<b>제32조</b>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li> <li>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li> <li>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li> </ul>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b>제28조</b>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2017.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li> </u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p> <p>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p> <p>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p> <p>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p>	<p>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p> <p>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p> <p>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p> <p>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p> <p>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p> <p>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p> <p>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p> <p>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p> <p><b>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b>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 <p>7.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lt;신설 2017.1.10.&gt;</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p> <p>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p>	<p><b>제28조 ⑪</b>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t;신설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li> <li>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li> <li>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li> <li>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li> </ol>	
	<p>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p>	<p><b>제38조의2(금융질서문란행위자)</b> 영 제28조제1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환거래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li> <li>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채무를 조정 받았거나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자</li> <li>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p> <p>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b>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검사)</b>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채권의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b>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b>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li> <li>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li> <li>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li> <li>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li> </ol> <p><b>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b> ①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32조</b>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1.5.19., 2015.3.11.&gt;</p>	<p><b>제28조</b>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lt;개정 2015.9.11.&gt;</p>	<p><b>제38조</b> 삭제 &lt;2015.9.11.&gt;</p> <p><b>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등)</b> 신용정보회사등은 영 별표 2의2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제공요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2. 해당 통지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li> <li>3. 해당 통지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li> </ol>
		<p><b>제32조</b>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p> <p><b>제28조</b> ⑯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lt;개정</p> <p><b>제38조의4(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b>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5.3.11.&gt;</p> <p>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3.11.&gt;</p>	<p>2011.8.17., 2015.9.11. &gt;</p> <p>⑯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lt;개정 2011.8.17., 2015.9.11.&gt;</p>	<p>호의 구분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을 이유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 관리</li> <li>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이미 거래가 종료되어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제1호에 따른 표시를 하고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li> </ol>
<p>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3.11.&gt;</p> <p>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3.11.&gt;</p>		<p><b>제39조(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확인)</b>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 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에 따라 제공받는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받는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li> <li>제공받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li> </ol> <p>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신용조회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신용조회회사가 법 제2조제8호의 업무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기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제공받는자의 확인을 갈음한다.
<p><b>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b>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5.3.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li> <li>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li> <li>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ol>		
<p><b>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b>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lt;전문개정 2015.3.11. &gt;</p>	<p><b>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b>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다음 각 호의 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lt;개정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li> <li>「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li> <li>「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li> <li>「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li> <li>「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li> </ol> <p><b>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b>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 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p> <p><b>여권법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b> ①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p> <p><b>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b>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p> <p><b>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b>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3.18., 2016.3.29.&gt;</p> <p><b>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b>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lt;개정 2014.3.18., 2014.5.20.&gt;</p>	
<p><b>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b>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li>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b>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b>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7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라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9.11., 2016.3.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li> </ol>	<p><b>제39조의2(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b>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란 7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법, 영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법</p> <p>가. 신용정보집중기관</p> <p>나. 신용정보회사</p> <p>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p> <p>라.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p> <p>2.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제1호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사무소·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p>	
제30조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9.11.>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④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나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lt;개정 2015.9.11., 2016.3.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li> <li>2.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li> <li>3. 성과관리</li> <li>4. 위탁업무의 수행</li> <li>5.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li> <li>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li> </ol> <p>⑤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lt;개정 2015.9.11.&gt;</p> <p>⑥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lt;신설 2015.9.11.&gt;</p>	
<p><b>제35조</b>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5.3.11.]</p>	<p><b>제30조</b>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통지의 요청을 받으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방법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기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9.11.&gt;</p> <p>⑧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조회나 제7항에 따른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9.11.&gt;</p>	<p><b>제4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b></p> <p>①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b>별지 제15호</b>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한다.</p> <p>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요청의 방법, 통지의 주기 및 수수료 등을 알려야 한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⑨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과 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9.11.&gt; [제목개정 2015.9.11.]</p>	
<p><b>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b>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 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p>	<p><b>제31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b>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lt;개정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li> <li>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신용정보. 이 경우 같은 호 마목, 사목, 카목, 타목 및 파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만 해당하고, 같은 호 자목 및 차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 및 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만 해당한다.</li> </ol> <p>② 법 제36조제1항에서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lt;개정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li> <li>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li> <li>3.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li> </ol>	<p><b>제40조의2(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b> 영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제2조의2제2항의 정보를 말한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b>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등의 철회권 등)</b></p> <p>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p> <p>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p>	<p>이 아니라는 사실 및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p> <p><b>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등의 철회권 등)</b></p> <p>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lt;개정 2015.9.11.&gt;</p> <p>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b>제40조의3(동의 철회의 방법)</b>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p> <p>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b>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b>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p>	<p><b>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b>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lt;개정 2015.9.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li> <li>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li> <li>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열람을 청구</li> </ol>	<p><b>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b>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자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p>	<p>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p>	<p>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를 등록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등록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li> <li>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li> <li>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li> </ol>	<p><b>제42조(시정요청서)</b>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43조의2(신용조회회사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이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제38조의2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신용조회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정보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신용조회회사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①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도용됨으로써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그 밖의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의뢰자”라 한다)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의뢰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제공의뢰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	제43조의2 ②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누설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누설 신고를 한 이후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2. 신용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식별번호(영 제29조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된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을 입증하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b>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b> 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③ 제2항의 정보제공 중지 및 통지 방법, 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3.11.]</p>	<p>3. 제1호 또는 제2호와 비슷한 사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p>	<p>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정보제공 중지 및 통지 방법, 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3.11.]</p> <p>② 법 제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제공의뢰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여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의 목적, 제공한 내용, 제공한 날짜</li> <li>정보제공의뢰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정보제공의뢰자, 의뢰의 목적, 의뢰된 날짜</li> <li>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면</li> <li>전화</li> <li>전자우편</li> <li>휴대전화 문자메시지</li> </ol> </li> </ol> <p>④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정보회사등에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통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정보회사등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9.11.]</p>	<p>② 법 제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제공의뢰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여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의 목적, 제공한 내용, 제공한 날짜</li> <li>정보제공의뢰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정보제공의뢰자, 의뢰의 목적, 의뢰된 날짜</li> <li>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면</li> <li>전화</li> <li>전자우편</li> <li>휴대전화 문자메시지</li> </ol> </li> </ol> <p>④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정보회사등에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통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정보회사등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9.11.]</p>	<p>③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p> <p>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p>

<b>신용정보법</b>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b>시행령</b>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b>시행규칙, 감독규정</b>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p> <p>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9.11.]</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3.11.]</p>		<b>제43조의3(삭제 요구에 따른 통지방법)</b>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p><b>제39조(무료 열람권)</b> 신용조회회사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34조(무료 열람권)</b>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란 4개월을 말한다. &lt;개정 2011. 8.17&gt;</p>	
<p><b>제39조의2(신용정보 누설통지 등)</b> ①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p>	<p><b>제34조의2(신용정보의 누설태적의 통지 등)</b>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하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li> <li>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li> <li>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li> <li>4. 신용정보회사등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li> <li>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li> </ol> <p>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별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등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금융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금융위원회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행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p>	<p>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li> <li>2.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li> <li>3. 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 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li> </ol>	<p><b>제43조의4(신용정보 누설사실의 공시기간)</b>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3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5일</li> <li>2.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5일</li> <li>3. 영 제34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7일</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3.11.]</p>	<p>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p> <p>④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란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p> <p>⑤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p> <p>⑥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그 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제6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p>	<p>제43조의5(신용정보의 누설신고) 영 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a href="#">별지 제18호</a>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1.]	
<p><b>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b>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5.3.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li> <li>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li> <li>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li> <li>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li> <li>6. 삭제 &lt;2013.5.28.&gt;</li> </ol>		
<p>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li> <li>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ul>	<p><b>제34조의3(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b> 법 제40조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나 방식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화</li> <li>2. 전자우편</li> <li>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li> <li>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본조신설 2015.9.11.]</li> </ol>	
<b>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① 채권추심회사</b>	<b>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b>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3. 5.28.&gt;</p>	<p>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p>	<p><b>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b>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제6조(수임사실 통보) 제8조(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p>
<p><b>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①</b>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본인의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모집업무(그 명칭과 상관없이 본인의 영업과 관련한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모집업무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이하 “불법취득신용정보”라 한다)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li> <li>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li> <li>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b>제35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①</b>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li> <li>「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모집인</li> <li>「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li> <li>「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li> <li>「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li> <li>「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li> </ol> <p>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li> </ol>	<p><b>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b>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p> <p><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③</b>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⑨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자(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p> <p><b>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b>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보관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 및 그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p> <p>2. 제1호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p>	<p>“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2.12.11.&gt;</p>
<p><b>제41조의2</b>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p>	<p><b>제35조의2</b> ③ 법 제4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모집업무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등록·등재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11.]</p>	<p>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1. 모집업무수탁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취득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 2.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도 알려야 한다. ⑦ 등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알린 사항을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1.]	<b>제43조의6(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보고)</b> 영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b>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b>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b>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b>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li> <li>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li> <li>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li> </ol>	<p><b>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b>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업부문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연평균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사업연도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li> <li>2.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에 대하여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진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고한도 금액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천억원 초과의 다섯 단계</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2. 최고한도 금액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0억원인 경우: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의 세 단계</p> <p>3. 최고한도 금액이 제4항에서 정하는 금액인 경우: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의 세 단계</p> <p><b>제35조의3</b> ④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신용정보회사들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들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li> <li>2. 해당 신용정보회사들과 같은 종류의 신용정보회사들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li> <li>3. 200억원</li> </ol>	
<p><b>제42조의2</b>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li> <li>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li> <li>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li> </ol>	<p>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법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p>	<p>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 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b>제42조의2</b> ⑧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위탁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그 모집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⑨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3.11.]</p>	<p><b>제35조의3</b> ⑦ 법 제4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15.9.11.]</p>	
	<p><b>제35조의4(의견제출)</b>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9.11.]</p>	
	<p><b>제3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b>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징금을 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5.9.11.]</p>	
	<p><b>제35조의6(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b> ① 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li> <li>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li> <li>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li> </ul> <p>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p> <p>③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li> <li>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li> <li>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li> </ul> <p>[본조신설 2015.9.11.]</p>	
		<p><b>제35조의7(결손처분)</b> 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li> <li>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li> <li>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li> <li>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li> <li>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li> <li>6. 그 밖에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9.11.]</li> </ul> <p><b>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b>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 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b>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신설 2015.3.11.&gt;</p> <p>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3.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li> <li>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li> <li>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li> <li>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li> </ol>	
--	--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p> <p>6.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p> <p>7.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도난·누출 후 해당 개인신용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p> <p>8.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p> <p>④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5.3.11.&gt;</p> <p>⑤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3.11.&gt;</p> <p>⑥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lt;개정 2015.3.11.&gt;</p> <p>⑦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5.3.11.&gt;</p>		
<p>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p>	<p>제35조의8(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①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배상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9.11.]</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li> <li>2.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li> </ol> <p>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p> <p>③ 제43조에 따른 청구를 한 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11.]</p>		
<p><b>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3.11.]</p>	<p>제35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법 제43조의3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집중기관</li> <li>2. 신용정보회사</li> <li>3.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li> <li>4.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15.9.11.]</li> </ol>	
	<p><b>감독규정 제43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b> ① 영 제35조의9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및 그자가 법 제43조의3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그 최소 가입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제1호에 따른 은행 중 지방은행 및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20억원</li> <li>2. 영 제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같은 항 제8호(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자, 제20호, 제21호(정리금융회사은 제외한다)의 자 및 영 제21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b>10억원</b></p> <p>3. 영 제35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영 제21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같은 조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 ·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b>5억원</b>. 다만, 영 제5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9호에 해당하는자가 소속 중앙회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신용정보처리 관련 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최소 가입금액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p> <p>④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 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500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 처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 감독규정 제43조의7 보험가입 기준 정리 (\*편집자)

영 제35조의9제1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0억원	영 제5조제1항제20호	한국무역보험공사	10억원
영 제35조의9제1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정보통신진흥협회)	20억원	영 제5조제1항제21호	예금보험공사	10억원
영 제35조의9제2호	신용조회회사	20억원	영 제5조제1항제21호	정리금융회사(영 제21조제2항제8호) 정리금융공사(現 KR&C)_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3항	면제
영 제35조의9제2호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5억원	영 제21조제2항제1호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5억원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영 제5조제1항제1호	은행(영 제21조제2항제2호_채권등록기관)	20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2호	채권등록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_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	20억 원
영 제5조제1항제1호	지방은행	10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2호	채권등록기관(한국은행_국채법 시행규칙 제5조, 한국예탁결제원_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1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10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3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2호	금융지주회사	20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4호	신용회복위원회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3호	한국산업은행(영 제21조제2항제2호_채권등록기관)	20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5호	근로복지공단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4호	한국수출입은행	20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6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5호	농협은행	20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7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6호	중소기업은행(영 제21조제2항제2호_채권등록기관)	20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8호 감 제43조의7제1항제3호	정리금융회사(영 제5조제1항제21호)	면제
영 제5조제1항제7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9호	체신관서	10억 원
영 제5조제1항제8호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 투자증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증개회사	10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10호	전기공사공제조합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8호	명의개서대행회사	5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11호	주택도시보증공사(舊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9호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12호	중소기업진흥공단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10호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1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11호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14호	중소기업중앙회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12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5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15호	한국장학재단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13호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16호	한국자산관리공사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14호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연합회	5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17호	국민행복기금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15호	보험회사	10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18호	휴면예금관리재단	5억 원
영 제5조제1항제16호	여신전문금융회사	10억 원	영 제21조제2항제19호	금융감독원장 검사대상 대부업자 중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5억 원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3.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4.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7호	기술보증기금	10억원	영 제21조 제2항제19호  감 제43조의 7제1항제3호	금융감독원장 검사대상 대부업자 중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 1.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2.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면제
영 제5조제1항제18호	신용보증기금	10억원	영 제21조제2항제20호	자본재 공제조합	5억원
영 제5조제1항제19호	신용보증재단	5억원	영 제21조제2항제21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억원
영 제5조제1항제19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억원	영 제21조제2항제22호 감 제43조의7제1항제3호	유동화전문화회사	면제
<b>제44조(신용정보협회)</b> ①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회사들 사이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신용정보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신용정보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2. 신용정보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 3. 신용정보업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b>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b>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업무 2. 신용정보업 관련 교육업무 및 출판업무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④ 신용정보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3.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 위탁한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p>							
제7장 보칙								
<p><b>제45조(감독·검사 등)</b>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li> <li>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li> <li>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li> <li>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li> <li>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li> <li>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li> </ul>	<p><b>제4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b>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284 932 1848 1100"> <tr> <td><b>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b></td> </tr> <tr> <td>제3장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td> </tr> <tr> <td>제13조(검사결과의 보고)</td> </tr> <tr> <td>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td> </tr> <tr> <td>제1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td> </tr> <tr> <td>제16조(자체징계 제한)</td> </tr> </table>	<b>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b>	제3장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13조(검사결과의 보고)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제1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제16조(자체징계 제한)	<p><b>제46조 삭제</b> &lt;2013.5.28.&gt;</p> <p><b>제45조 삭제</b> &lt;2014. 4. 22.&gt;</p>
<b>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b>								
제3장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13조(검사결과의 보고)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제1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제16조(자체징계 제한)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b>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b> ①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매 분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p>		<p><b>제46조(회계처리기준등)</b> ① 신용정보회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p> <p><b>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b>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p> <p>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p> <p>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신용정보회사는 결산재무제표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연도말 업무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47조(세부사항)</b>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7.1.>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 및 신용정보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9.11.>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7조제1항 관련)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신청의 접수 1의2.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승인 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 또는 보고의 접수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의 인가 신청의 접수 5.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업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겸업 승인 신청의 접수 7. 법 제13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상임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8.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보고의 접수 8의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의 접수 8의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신용조회회사의 보고의 접수(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포함한다)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신청의 접수 10.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보고의 접수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변경 권고 11. 삭제 <2015.9.11.> 12.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제공 대상 신용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13.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 요청의 접수 14.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15.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5의2.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5의3.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시정 요구	15의4.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보고의 접수 15의5.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감독	
	<p><b>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b> ① 금융위원회(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4.8.6., 2015.9.11.&gt;&gt;</p> <p><b>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b>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lt;개정 2016.9.29&gt;</p> <p>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및 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9조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업 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겸업 승인에 관한 사무</li> <li>5. 법 제13조에 따른 임원 겸직 승인에 관한 사무</li> <li>6.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li> <li>7. 법 제27조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li> <li>8. 법 제38조제4항·제5항·제7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li> <li>9. 법 제45조에 따른 감독·검사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li> <li>10. 법 제4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li> <li>11.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li> <li>1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li> </ol> <p><b>제37조의2</b> ②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lt;신설 2014.8.6., 2015.9.11.&gt;&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채권추심업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11조에 따른 겸업 업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사무</li> <li>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채용·고용 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li> </ol> <p>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lt;신설 2014.8.6., 2015.9.11.&gt;&gt;</p> <p>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lt;신설 2014.8.6., 2015.9.11.&gt;&gt;</p> <p>[본조신설 2012.1.6.]</p>	
<p>제50조(벌칙) ①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 자</li> <li>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li> <li>3. 제16조를 위반한 자</li> <li>4.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li> <li>5.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li> <li>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li> <li>7.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li> <li>8.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자</li> </ol>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3년</b> 이하의 징역 또는 <b>3천만원</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li> <li>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li> <li>3.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li> <li>4.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li> <li>5.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li> </ol>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1년</b> 이하의 징역 또는 <b>1천만원</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li> <li>2. 제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li> <li>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그 위탁을 받은 자</li> <li>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li> <li>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li> <li>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li> <li>7.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li> <li>8.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li> <li>9.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전문개정 2015.3.11.]</li> </ol>		
<b>제51조(양벌규정)</b>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제52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b>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b> 법 제52조제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li> <li>2. 제19조를 위반한 자</li> <li>3.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자</li> <li>4.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li> <li>5.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li> </ol>	<p>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a href="#">별표 4</a>와 같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li> <li>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li> <li>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li> <li>4. 제21조를 위반한 자</li> <li>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li> <li>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li> <li>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li> <li>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li> <li>9.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자</li> <li>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li> <li>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li> <li>12. 제39조를 위반한 자</li> <li>13.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li> <li>14.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li> <li>15. 제40조제7호를 위반한 자</li> </ol> <p>③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를 위반한 자</li> <li>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li> <li>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li> <li>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li> <li>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li> <li>6. 제2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li> <li>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li> <li>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li> <li>9. 제31조를 위반한 자</li> <li>10. 제32조제3항·제7항·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li> <li>11. 제35조를 위반한 자</li> <li>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li> <li>13.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li> <li>14.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li> </ol>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3.11.]</p>		
<p>부 칙 &lt;법률 제14122호, 2016.3.29.&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부 칙 &lt;법률 제13216호, 2015.3.11.&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p>	<p>부 칙 &lt;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gt;</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부 칙 &lt;제26517호, 2015.9.11.&gt;</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p>	<p>시행규칙 부 칙 &lt;제1191호, 2015.9.11.&gt;</p> <p>이 규칙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2016- 40호, 2016.10.20&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제3호,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2, 제38조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다만, 제16조의2, 제1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3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 32호, 2016.9.21> 이 규정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정보회사의 출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과 관련된 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31호, 2015.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의2, 제40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보고의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실적 및 보고실적에 대한 보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9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3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내부관리규정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을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2호)은 폐지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b>제7조(법정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b>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b>제8조(신용조회회사의 뛸린 업무 및 겸업에 관한 경과조치)</b>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조회회사가 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의 뛸린 업무 또는 제11조에 따른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용조회회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까지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제9조(처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4조제6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로 한다.	
<b>제10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b>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를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p><b>제11조(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b>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를 말한다)"로 한다.</p> <p>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의7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하고, 제19조의9 제2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를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로 한다.</p>	
<p><b>제12조(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b> 제3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적법하게 제공·활용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13조(개인식별정보 제공·이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b> 제34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14조(별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별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p>		

신용정보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 2015.9.12.] [총리령 제1191호, 2015.9.11.] [시행 2016.10.20.] [금융위고시 제2016-40호, 2016.10.20., 일부개정]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부칙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⑨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6.22.>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시행령 [별표 1] 주요출자자 요건(제6조제4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요건	구분
<p>1. 주요출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p> <p><b>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b>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6.5.29.&gt;</p> <p>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경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일 것</p> <p>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해당 기준을 넘을 것</li> <li>2)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업종과 유사한 업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넘을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 업종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목·다목·라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li> </ol> <p>다.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p> <p>라. 다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사실이 경영하려는 업무의 전전한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li> <li>2)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법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li> <li>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li> </ol>
	<p><b>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금융 관계 법령)</b>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lt;개정 2009.10.9., 2010.11.15., 2016.7.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16.7.28.&gt;</li> <li>2. 삭제 &lt;2016.7.28.&gt;</li> </ol> <p><b>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관련법령)</b>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lt;개정 2016.8.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채 등록법」</li> <li>2. 「공인회계사법」</li> <li>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li> <li>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li> <li>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li> <li>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li> <li>7. 「금융지주회사법」</li> <li>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li> </ol>

요건	구분
<p>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p> <p>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 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의 설립에 관한 법률」</p> <p>9. 「기술보증기금법」</p> <p>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p> <p>11. 「농업협동조합법」</p> <p>12. 「담보부사채신탁법」</p> <p>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 <p>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p> <p>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p> <p>16. 「보험업법」</p> <p>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p> <p>18. 「부동산투자회사법」</p> <p>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 <p>20. 「산업발전법」</p> <p>21. 「상호저축은행법」</p> <p>22. 「새마을금고법」</p> <p>23. 「선팩투자회사법」</p> <p>24.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p> <p>25. 「수산업협동조합법」</p> <p>26. 「신용보증기금법」</p> <p>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p> <p>28. 「신용협동조합법」</p> <p>29. 「여신전문금융업법」</p> <p>30. 「예금자보호법」</p> <p>31. 「외국인투자 촉진법」</p> <p>32. 「외국환거래법」</p> <p>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p> <p>34. 「은행법」</p> <p>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 <p>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p> <p>37. 「전자금융거래법」</p> <p>3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p> <p>39. 「주택법」</p> <p>40. 「중소기업은행법」</p> <p>4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p> <p>42. 「채권의 공정한 주식에 관한 법률」</p> <p>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p> <p>44. 「한국산업은행법」</p> <p>45. 「한국수출입은행법」</p> <p>46. 「한국은행법」</p> <p>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p> <p>48. 「한국투자공사법」</p> <p>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p>
<p>2. 주요출자자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p>	<p>제1호가목 ·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 서 개인인 경우</p>	<p>가.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p>
<p>4. 주요출자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p>	<p>가. 제1호가목 ·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 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 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9.1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 ·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제21조제3항 관련)

1. 개인

구분	집중관리 · 활용 대상 정보	
가. 식별정보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나. 신용거래정보	<p>1) 대출 · 당좌거래 등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정보            가) 대출 현황            나) 당좌예금 · 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            다)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p> <p>2)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정보            가) 신용카드의 발급 · 해지 사실 및 결제 · 미결제 금액(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이용한도,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한도            다) 신용카드의 분실 · 도난 등 사고발생, 그 발생한 사고종결에 따른 보상, 그 밖의 사고 종결의 처리 사실</p> <p>3) 보험상품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구분에 따른</p>	<p>정보.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업,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등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보험상품을 포함한다.</p> <p>가)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보: 보험계약 현황,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 관한 정보(성명, 개인식별번호, 직업 및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및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정보</p> <p>나)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보험금의 청구 · 지급 현황, 보험금의 지급 사유(질병에 관한 정보, 손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사실, 그 밖의 보험사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보험금청구권자(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는 피해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성명, 개인식별번호, 피보험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p>
다. 신용도판단정보 등	<p>1)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 사실            2) 대위변제 · 대지급 발생 사실            3) 어음 · 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 사실            4) 증권의 투자매매업 · 투자증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정보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증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p>	<p>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입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p> <p>5) 금융질서 문란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정보            가)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            다) 보험사기 사실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p>

구분	집중관리 · 활용 대상 정보
	<p>6)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정보</p> <p>가) 법원의 회생 · 간이회생 ·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 · 면책 · 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 말소 결정 사실</p> <p>나) 국세 · 지방세 · 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 · 과태료 · 과징금 ·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p> <p>다) 사회보헤험료 · 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p> <p>라)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 · 사망 · 이민 · 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 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p> <p>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p>

## 2. 기업 및 법인

구분	집중관리 · 활용 대상 정보
가. 식별정보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 · 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종목, 대표자의 성명 · 개인식별번호
나. 신용거래정보	<p>1) 대출 · 당좌거래 등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사)까지의 정보</p> <p>가) 대출 ·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현황</p> <p>나) 시설대여 현황</p> <p>다) 신용보증 현황</p> <p>라) 보증보험 현황</p> <p>마)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p> <p>바) 당좌예금 · 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p> <p>사) 가)부터 바)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p> <p>과 관련된 기술성 · 시장성 ·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만들어진 정보</p> <p>2)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정보</p> <p>가) 신용카드의 발급 · 해지 사실 및 결제 · 미결제 금액(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나) 신용카드의 분실 · 도난 등 사고발생, 그 발생한 사고종결에 따른 보상, 그 밖의 사고 종결의 처리 사실</p>
다. 신용도판단정보(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도 포함한다)	<p>1) 기업 및 법인의 신용도 판단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바)까지의 정보</p> <p>가) 대출금, 신용카드 자금,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 사실</p> <p>나) 대위변제 · 대지급 발생 사실</p> <p>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사실</p> <p>라) 어음 · 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 사실</p> <p>마) 무보증차채의 상환불이행 사실</p> <p>바) 가)부터 마)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p> <p>과 관련된 기술성 · 시장성 ·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 대출, 신용보증 등에 대하여 연체, 대위변제 등이 발생한 사실</p> <p>2) 증권의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정보</p> <p>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p>

구분	집중관리 · 활용 대상 정보
	<p>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용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입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p> <p>3) 금융질서 문란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li> <li>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li> <li>다) 보험사기 사실</li> <li>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li> </ul> <p>4)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원의 회생 · 간이회생 ·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 선고 · 면책 · 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 말소 결정 사실</li> <li>나) 국세 · 지방세 · 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 · 과태료 · 과징금 ·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li> <li>다) 사회보험료 · 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li> <li>라)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 · 사망 · 이민 · 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 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li> <li>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li> </ul>
<p>라.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p>	<p>1) 계열기업체 현황 등 회사의 개황</p> <p>2) 사업의 내용</p> <p>3)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p> <p>4) 자본금 증자 및 사채 발행 현황</p> <p>5)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정보</p> <p>가)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 · 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p> <p>나) 기술신용정보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p> <p>6)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 · 폐업, 양도 · 양수, 분할 · 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p>

## [시행령 별표 2의2] &lt;개정 2017.1.10.&gt;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제28조제12항 관련)

제공의 이유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
1. 법 제32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7일 이내	제3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
2. 법 제32조제6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제3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
3. 법 제32조제6항제3호에 따라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제4호의 경우에는 수임사실의 통지와 함께 알리는 방법을 포함한다)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4.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임사실의 통지(이하 이 호에서 “수임사실의 통지”라 한다)를 하는 때까지	
5.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6.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7.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8.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4호에 따라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제공의 이유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
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9.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5호에 따라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사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10.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6호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0의2. 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이 영 제28조제10항제7호에 따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받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제3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
11. 법 제32조제6항제5호에 따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12.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 따라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13. 법 제32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의 이유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
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자	있다. 가.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다.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이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14. 법 제32조제6항제8호에 따라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15. 법 제32조제6항제9호 및 이 영 제28조제11항에 따라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16. 법 제32조제6항제10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나.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것을 정한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그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 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방법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공의 이유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
		다. 개인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것을 정한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그 기한을 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한	에 해당하는 방법

####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5.9.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금액
가.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 단서를 위반하여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1호	1,000
나.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 중단 또는 폐업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3항	1,000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겸업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2호	1,000
라.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업한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2호	1,000
마.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2호	1,000
바.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겸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2호	1,000
사.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4,000
아.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3호	1,000
자.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1호	2,400
차.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4호	800
카.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재위탁한 경우	법 제52조제3항	1,600
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5호	1,000
파.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2호	4,000
하.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2호	4,000
거.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2호	2,000
너. 법 제20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임월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2호	2,400
더.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3호	3,000
러. 법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6호	1,000
머. 법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3호	2,400
버. 법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6호	800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금액
서.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처분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4호	2,400
어.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7호	800
저.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5호	2,400
처. 법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8호	600
커.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9호	800
터.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제4항제10호	800
페.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구분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제1항제4호	3,000
허.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제1항제4호	800
고. 법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제1항제4호	3,000
노. 법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알리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제4항제10호	800
도. 법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제2항제6호	2,000
로. 법 제32조제9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리관리하지 않은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제2항제6호	1,000
모. 법 제32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제4항제10호	800
보.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11호	800
소.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11호	800
오.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 또는 중지한 근거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7호	2,000
조.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나 사후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8호	2,000
초.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9호	2,400
코.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제2항제7호 또는 제9호	2,000
토.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제2항제7호 또는 제9호	800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금액
포.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9호	2,400
호.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제2항제7호 또는 제9호	1,000
구.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10호	2,000
누.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의 중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10호	800
두.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11호	2,400
루. 법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11호	1,000
무. 법 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11호	800
부.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무료로 제공하거나 열람토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12호	2,000
수.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13호	2,400
우. 법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14호	2,400
주. 법 제40조제7호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15호	2,400
추. 법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5호	3,000
쿠. 법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12호	1,000
투. 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13호	1,000
푸.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52조제4항제14호	1,000

감독규정 [별표 1의2]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등의 신청서류(제5조제2항 관련)

1. 신용정보업

구분	예비인·허가	인·허가
1. 신용정보업 영위허가 (신용정보업부 추가영위 허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신청서</li> <li>- 정관(안)</li> <li>-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li> <li>- 발기인 종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li> <li>-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 계획</li> <li>- 출자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인서(출자비율 5%미만인 개인출자자는 제외)</li> <li>-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서</li> <li>- 출자자가 금융회사인 경우는 당해 금융회사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및 당해 금융회사의 일반현황</li> <li>- 출자자가(당해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출전자 중 최다 출자자에 한함)가 일반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li> </ul> <p>* 신청인이 이미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첨부서류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가 법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li> <li>-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li> <li>- 주요출자자가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li> <li>-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 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li> <li>- 임원(예정자 포함)이력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업 허가신청서</li> <li>-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li> <li>- 재무제표</li> <li>-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li> <li>-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li> <li>- 발기인 종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li> <li>-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 확인서류</li> <li>- 자본금 납입증명 서류</li> <li>- 외국인출자자인 경우 외국인의 출자가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li> <li>-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가 법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li> <li>-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li> <li>- 주요출자자가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li> <li>-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서류</li> <li>-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자료</li> <li>- 임직원에 관한 서류</li> <li>- 임원의 이력서</li> <li>-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li> <li>-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필요시 이를 확인하는 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li> <li>-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li> <li>- 회계처리 · 감사 · 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li> <li>- 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li> </ul>

구분	예비인·허가	인·허가
2. 분할·합병 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 ·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li> <li>- 분할 · 합병 목적 및 사유</li> <li>- 정관변경(안)</li> <li>-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li> <li>- 재무제표</li> <li>- 2년간의 사업계획서(분할 · 합병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li> <li>- 분할 · 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li> <li>- 분할 · 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li> <li>-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칭, 주소 등)</li> <li>-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li> <li>-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계획</li> <li>-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 · 합병 인가 신청서</li> <li>- 분할 · 합병 목적 및 사유</li> <li>-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li> <li>-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li> <li>- 재무제표</li> <li>- 2년간의 사업계획서(분할 · 합병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li> <li>- 분할 · 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li> <li>- 분할 · 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li> <li>-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칭, 주소 등)</li> <li>-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li> <li>-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li> <li>-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li> <li>-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li> </ul>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변경(안)</li> <li>-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li> <li>-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li> <li>- 임원 이력서</li> <li>-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li> <li>-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li> <li>- 회계처리 · 감사 · 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li> </ul>
3. 사업양수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양수 예비인가 신청서</li> <li>- 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li> <li>- 정관변경(안)</li> <li>-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li> <li>- 재무제표</li> <li>-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수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li> <li>- 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양수 인가 신청서</li> <li>- 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li> <li>-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li> <li>-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li> <li>- 재무제표</li> <li>-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수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li> <li>- 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li> </ul>

구분	예비인·허가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li> <li>-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li> <li>-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li> <li>-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li> <li>-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li> <li>-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li> <li>- 양수회사의 양수자금 조달계획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li> <li>-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li> <li>-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li> <li>-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li> <li>-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li> <li>- 임원 이력서</li> <li>-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li> <li>-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li> <li>- 회계처리 · 감사 · 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li> </ul>
4. 사업양도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양도 예비인가 신청서</li> <li>-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li> <li>- 정관변경(안)</li> <li>- 재무제표</li> <li>-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도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li> <li>-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li> <li>-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li> <li>-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양도 인가 신청서</li> <li>-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li> <li>- 정관</li> <li>- 재무제표</li> <li>-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도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li> <li>-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li> <li>-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li> <li>-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li> <li>- 사업양도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li> <li>-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li> <li>-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2. 신용정보집중기관

예비허가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예비허가신청서</li> <li>- 정관 또는 정관(안)</li> <li>- 재산목록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 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li> <li>-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 회의록))</li> <li>-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공익위원회 및 소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안)(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li> <li>- 영 제2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li> <li>- 영 제2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집중기관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함)</li> <li>- 영 제21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li> <li>-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li> <li>-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li> <li>-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1부</li> <li>-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li> <li>-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li> <li>- 정관 또는 정관(안)</li> <li>- 재산목록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 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li> <li>-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 회의록))</li> <li>-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공익위원회 및 소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안)(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li> <li>- 영 제2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li> <li>- 영 제2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집중기관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함)</li> <li>- 영 제21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li> <li>-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li> <li>-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li> <li>-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1부</li> <li>-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li> <li>- 법인등기부등본</li> <li>-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li> <li>-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li> <li>- 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감독규정 [별표 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관리기준
1. 신용정보 처리기준	1.1. 개인식별정보 (영 제29조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의 처리에 대한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 동의</li> </ul>
	1.1.1. 동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li> <li>▶ 수집하려는 개인식별정보의 항목</li> <li>▶ 수집된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li> <li>▶ 동의 사항 변경 시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 후 동의 획득</li> </ul>
	1.1.2. 동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li> <li>▶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li> <li>▶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li> <li>▶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고지</li> <li>▶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li> </ul>
	1.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li> <li>▶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li> <li>▶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li> <li>▶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고지</li> <li>▶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li> </ul>
	1.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li> <li>▶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li> <li>▶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li> <li>▶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li> <li>▶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사전고지</li> <li>▶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li> </ul>
	1.3.2. 필수적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제3자 제공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의 관련성</li> </ul>
	1.3.3. 선택적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3자 제공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사실</li> <li>▶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3자 제공 시의 혜택</li> </ul>
	1.4. 동의를 받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거나 각각의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사항을 쉽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li> <li>▶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복수인 경우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li> </ul>

구 분		관리기준
		별 또는 다수 그룹으로 구분
1.5. 신용정보의 제공	1.5.1. 신용정보의 제공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의 보안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별표 4를 적용</li> <li>▶ 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3을 적용</li> </ul>
	1.5.2.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li> </ul>
	1.5.3. 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li> <li>▶ 1.5.1.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 또는 반납에 관한 사항의 결과 확인</li> </ul>
1.6. 신용정보의 삭제	1.6.1. 파기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치</li> </ul>
1.7.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법 제20조의2)	1.7.1. 선택적 신용정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선택적 신용정보 삭제</li> </ul>
	1.7.2. 필수적 신용정보 분리 보관 및 접근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필수적 신용정보(이하 “필수적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현재 거래 중인 고객 정보와 분리 보관</li> <li>▶ 필수적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 지정</li> <li>▶ 관리책임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 한하여 필수적 신용정보 접근 가능</li> <li>▶ 필수적 신용정보의 취급 권한부여 및 이용 내역 기록보존(최소 3년)</li> </ul>
	1.7.3. 신용정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내에 신용정보 삭제</li> <li>▶ 개인신용정보 삭제의 시행 및 확인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책임 하에 수행</li> <li>▶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삭제 후 파기 결과를 확인</li> <li>▶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li> </ul>
	1.7.4. 신용정보의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2의 필수적 신용정보 취급자 제한을 준용</li> </ul>

구 분		관리기준	
2. 신용정보 관리 · 보호인	1.8.1.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1.8.1. 신용정보 보호 조치의무	▶ 1.5.1. 신용정보의 제공계약 준용
		1.8.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의 교육의 내용	▶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 의 누설 발생시 조치	2.1. 신용정보 관리 · 보호인	2.1.1.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업무	▶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 ▶ 별표 3의 관리적 보안대책에서 정하는 업무 ▶ 정보유출 대응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 ▶ 관리적 보안대책 시행결과에 따른 시정 · 개선에 필요한 조치
		2.1.2.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공개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공개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
3. 신용정보 의 누설 발생시 조치	3.1.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의 예시	3.1.1.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에 대한 통제 상실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아래의 예시 및 이와 유사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 누설로 볼 수 있음 ▶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3.2.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누설의 통지	3.2.1. 통지 사항	▶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회사등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3.2.2. 통지 시기 및 방법 등	▶ 신용정보회사등은 누설 발생 확인 시 3.2.1의 사항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

구 분		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설된 신용정보의 신용정보주체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적인 공개 조치</li> <li>▶ 3.2.1의 사항 통지 후 미확인사실에 대하여는 확인즉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li> </ul>						
3.3. 누설 신고	3.3.1. 신고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li> <li>▶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누설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li> </ul>						
4.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4.1.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법 제35조)	<table border="0"> <tr> <td>4.1.1. 절차 보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정보주체가 영 제30조제3항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후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li> <li>▶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조치</li> </ul> </td> </tr> <tr> <td>4.1.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지 청구권 보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간격은 연1회 이상 가능하도록 통지 시스템 구축</li> <li>▶ 영 제30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는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채택</li> </ul> </td> </tr> </table>	4.1.1. 절차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정보주체가 영 제30조제3항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후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li> <li>▶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조치</li> </ul>	4.1.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지 청구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간격은 연1회 이상 가능하도록 통지 시스템 구축</li> <li>▶ 영 제30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는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채택</li> </ul>		
4.1.1. 절차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정보주체가 영 제30조제3항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후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li> <li>▶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조치</li> </ul>							
4.1.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지 청구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간격은 연1회 이상 가능하도록 통지 시스템 구축</li> <li>▶ 영 제30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는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채택</li> </ul>							
	4.2.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법 제38조)	<table border="0"> <tr> <td>4.2.1. 절차 보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주체가 영 제30조제3항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후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정정 청구 가능한 시스템 또는 절차 마련</li> <li>▶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9조 및 영 34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정보에 대한 무료 열람권 제공</li> <li>▶ 신용정보의 정정청구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 처리결과 및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 절차 고지</li> </ul> </td> </tr> <tr> <td></td> <td>4.2.2. 사실 조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정청구를 접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 조사에 착수</li> <li>▶ 정정 사유 확인 즉시 개인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 및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중단</li> <li>▶ 정정 후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정정 사실 고지</li> </ul> </td> </tr> </table>	4.2.1. 절차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주체가 영 제30조제3항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후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정정 청구 가능한 시스템 또는 절차 마련</li> <li>▶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9조 및 영 34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정보에 대한 무료 열람권 제공</li> <li>▶ 신용정보의 정정청구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 처리결과 및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 절차 고지</li> </ul>		4.2.2. 사실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정청구를 접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 조사에 착수</li> <li>▶ 정정 사유 확인 즉시 개인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 및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중단</li> <li>▶ 정정 후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정정 사실 고지</li> </ul>	
4.2.1. 절차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주체가 영 제30조제3항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후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정정 청구 가능한 시스템 또는 절차 마련</li> <li>▶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9조 및 영 34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정보에 대한 무료 열람권 제공</li> <li>▶ 신용정보의 정정청구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 처리결과 및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 절차 고지</li> </ul>							
	4.2.2. 사실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정청구를 접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 조사에 착수</li> <li>▶ 정정 사유 확인 즉시 개인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 및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중단</li> <li>▶ 정정 후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정정 사실 고지</li> </ul>						
	4.3.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table border="0"> <tr> <td></td> <td>4.3.1. 절차 보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확인 방법 및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처리결과 고지의 업무처리방법 마련</li> </ul> </td> </tr> <tr> <td></td> <td>4.3.2. 고지 사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주체와의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li> <li>▶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li> </ul> </td> </tr> </table>		4.3.1. 절차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확인 방법 및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처리결과 고지의 업무처리방법 마련</li> </ul>		4.3.2. 고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주체와의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li> <li>▶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li> </ul>
	4.3.1. 절차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확인 방법 및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처리결과 고지의 업무처리방법 마련</li> </ul>						
	4.3.2. 고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주체와의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li> <li>▶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li> </ul>						

구 분		관리기준	
(법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li> <li>▶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그 다른 정보</li> </ul>
4.4.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의 철회권 (법 제37조)	4.4.1. 절차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등의 철회 청구 시스템 또는 절차 마련</li> <li>▶ 1.3.3.의 고지사항에 법 제37조제1항 · 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등의 철회권 및 영업 목적 연락중지 청구권 행사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포함</li> </ul>
	4.4.2. 고지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회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신규 제공중단 및 신용정보의 영업 목적 연락 중지 조치</li> <li>▶ 제공동의 철회권 행사로 인하여 중단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의무</li> </ul>
4.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법 제38조의3)	4.5.1. 절차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마련</li> </ul>
	4.5.2. 고지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 삭제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삭제 조치</li> <li>▶ 삭제 후 그 결과를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li> <li>▶ 삭제청구에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 사유의 근거 및 안전한 보관에 관한 사항을 개인신용정보주체에 통지</li> <li>▶ 개인신용정보 삭제청구 처리 대장(최소 3년이상 보존)</li> </ul>
5. 신용정보 활용 체제의 공시 (법 제31조)	5.1. 공시 방법	5.1.1. 신용정보활용 체제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li> <li>▶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 · 후를 비교하여 공개</li> </ul>
	5.2. 작성기준	5.2.1. 필수적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li> <li>▶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li> <li>▶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li> <li>▶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li> <li>▶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li> <li>▶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 · 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li> </ul>

구 분		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용조회회사만 해당)</li> </ul>								
	5.2.2. 임의적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li> <li>▶ 신용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li> </ul>								
	6.1. 정보의 수집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6.1.1. 수집의 제한</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서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수집항목을 구성·관리</li> <li>▶ 수집항목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집항목을 조정</li> </ul> </td></tr> <tr> <td>6.1.2. 수집절차·방법의 표준화</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화된 정보수집을 위한 정보수집 기준 마련</li> <li>▶ 정보 수집시 수집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마련</li> </ul> </td></tr> <tr> <td>6.1.3. 수집정보의 검증 및 정정</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li> <li>▶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정보의 정정·삭제 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li> <li>▶ 검증업무가 수집업무와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li> </ul> </td></tr> </table>	6.1.1. 수집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서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수집항목을 구성·관리</li> <li>▶ 수집항목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집항목을 조정</li> </ul>	6.1.2. 수집절차·방법의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화된 정보수집을 위한 정보수집 기준 마련</li> <li>▶ 정보 수집시 수집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마련</li> </ul>	6.1.3. 수집정보의 검증 및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li> <li>▶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정보의 정정·삭제 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li> <li>▶ 검증업무가 수집업무와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li> </ul>		
6.1.1. 수집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서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수집항목을 구성·관리</li> <li>▶ 수집항목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집항목을 조정</li> </ul>									
6.1.2. 수집절차·방법의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화된 정보수집을 위한 정보수집 기준 마련</li> <li>▶ 정보 수집시 수집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마련</li> </ul>									
6.1.3. 수집정보의 검증 및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li> <li>▶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정보의 정정·삭제 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li> <li>▶ 검증업무가 수집업무와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li> </ul>									
6. 신용조회 업무	6.2. 신용등급의 산출 및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6.2.1. 신용등급의 산출</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평가시 평가대상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li> <li>▶ 등급산출의 적정성 심의 기준, 절차 마련(등급평정위원회 등)</li> <li>▶ 심의시 독립적인 의사결정 보장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li> </ul> </td></tr> <tr> <td>6.2.2. 모형검증 등 사후관리</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1회 이상 평가모형의 변별력 검증을 시행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최소 3년)</li> <li>▶ 평가업무와 독립적으로 검증 업무가 처리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li> <li>▶ 모형검증 결과를 보고받는 별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li> <li>▶ 기업평가이후 폐평가기업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 신용 등급 변경 기준 및 업무처리절차</li> </ul> </td></tr> <tr> <td>6.2.3. 이해상충 방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급 산출과 관련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li> <li>▶ 기업평가 관련 평가조직 및 영업조직의 분리</li> </ul> </td></tr> <tr> <td>6.2.4. 정보제공시 차별·강요금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뢰인에게 정보제공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취급 금지</li> <li>▶ 평가서 발급 의뢰인에게 상품·서비스의 가입·이용 강제 금지</li> </ul> </td></tr> </table>	6.2.1. 신용등급의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평가시 평가대상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li> <li>▶ 등급산출의 적정성 심의 기준, 절차 마련(등급평정위원회 등)</li> <li>▶ 심의시 독립적인 의사결정 보장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li> </ul>	6.2.2. 모형검증 등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1회 이상 평가모형의 변별력 검증을 시행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최소 3년)</li> <li>▶ 평가업무와 독립적으로 검증 업무가 처리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li> <li>▶ 모형검증 결과를 보고받는 별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li> <li>▶ 기업평가이후 폐평가기업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 신용 등급 변경 기준 및 업무처리절차</li> </ul>	6.2.3. 이해상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급 산출과 관련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li> <li>▶ 기업평가 관련 평가조직 및 영업조직의 분리</li> </ul>	6.2.4. 정보제공시 차별·강요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뢰인에게 정보제공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취급 금지</li> <li>▶ 평가서 발급 의뢰인에게 상품·서비스의 가입·이용 강제 금지</li> </ul>
6.2.1. 신용등급의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평가시 평가대상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li> <li>▶ 등급산출의 적정성 심의 기준, 절차 마련(등급평정위원회 등)</li> <li>▶ 심의시 독립적인 의사결정 보장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li> </ul>									
6.2.2. 모형검증 등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1회 이상 평가모형의 변별력 검증을 시행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최소 3년)</li> <li>▶ 평가업무와 독립적으로 검증 업무가 처리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li> <li>▶ 모형검증 결과를 보고받는 별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li> <li>▶ 기업평가이후 폐평가기업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 신용 등급 변경 기준 및 업무처리절차</li> </ul>									
6.2.3. 이해상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급 산출과 관련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li> <li>▶ 기업평가 관련 평가조직 및 영업조직의 분리</li> </ul>									
6.2.4. 정보제공시 차별·강요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뢰인에게 정보제공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취급 금지</li> <li>▶ 평가서 발급 의뢰인에게 상품·서비스의 가입·이용 강제 금지</li> </ul>									

감독규정 [별표 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4조의2제2항 및 제26조의4제3항 관련)

### 1. 식별정보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영 [별표 2]의 식별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해당 개인, 기업 및 법인	등록사유발생시	식별정보와 연결된 정보의 이용기관

1)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등록정보 보유기관으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b>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b>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 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7.8.3., 2009.4.1.>	다. <개정 2008.2.29., 2009.10.1.>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
다. <개정 2008.2.29., 2009.10.1.>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거래정보

#### (1) 개인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b>가. 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b>				
대출현황(대출일자, 대출금액, 담보현황, 카드론·현금서비스 실적 등 포함)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해당 개인 (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등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li> <li>○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회사는</li> </ul>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 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해당 정보를 영 제21조제 2항의 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채권 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간	해당 개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채무보증현황(채무보증일자, 채무보증금액 등 포함)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당좌·가계당좌예금개설 및 해지 현황	은행(농·수협 포함)	위와 같음	위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li> <li>○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li> </ul>
<b>나. 신용카드 관련 거래 정보</b>				
신용카드현황(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 <sup>주)</sup>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관련거래 정보(신용판매·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용잔액, 연체금액, 신용판매·현금서비스 신용공여한도 등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등록기관에 해당하는 자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 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사고 종결에 관한 보상 및 처리정보 <sup>주)</sup>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b>다. 보험계약 관련 거래정보</b>				
보험계약 현황(보험계약일, 보험기간, 보험상품명, 급부명,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회사명 및 보험계약 상태, 피보험목적물 정보, 청약정보(청약시부터 계약 또는 거절시까지만 보유 가능) 등 포함)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체신관서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해당 개인	위와 같음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체신관서 중 등록기관에 해당하는 자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 관한 정보(성명, 개인식별번호, 직업 및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등 포함)	위와 같음	해당 개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하 “ <b>해당 보험계약</b> ” 이라 함)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모집업무수탁자 정보(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모집업무수탁자의 이름 · 명칭 및 등록번호 등 포함)	위와 같음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보험금 청구 · 지급 현황(사고접수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보험금 지급일자, 보험금액, 실지급금액, 병원 · 정비공장 정보 등 포함)	위와 같음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권자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보험금 지급사유(사고발생일시, 사고원인, 질병 · 부상 · 치료정보, 피해물 및 보상정보,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사고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피해자 정보(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위와 같음	해당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피해자	위와 같음	위와 같음
<b>라.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b>				
코넥스소액전용투자계좌 관련 계좌 개설 및 폐쇄 정보 등	투자중개업자	해당 개인	등록사유발생시	투자중개업자

주) 신용카드결제금액, 신용카드의 도난 · 분실 등 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사고 종결에 관한 보상 및 처리정보는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 (2) 기업 및 법인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b>가. 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b>				
신용 공여 현황 <sup>1)</sup> (담보, 한도거래, 신용공여기간 등 포함)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업 및 법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 할 수 있음)</li> <li>○ 주채무계열 및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체</li> </ul>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li> <li>○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회사는 해당 정보를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 영 제2조제3항제7호의 감사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li> </ul>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현황	은행(농·수협 포함)	○ 해당 기업 및 법인	위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li> <li>○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li> </ul>
<b>나. 신용카드 관련 거래 정보</b>				
신용카드현황(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 <sup>2)</sup> , 연체정보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위와 같음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위와 같음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 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sup>2)</sup> , 사고 종결에 관한 보상 및 처리정보 <sup>2)</sup>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b>다.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b>				
코넥스소액전용투자계좌 관련 계좌 개설 및 폐쇄 정보 등	투자중개업자	해당 기업체	등록사유발생시	투자중개업자

- 주 1)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8-33조에서 정한 신용공여, 그 밖의 금융회사는 이에 준하는 정보  
 2) 신용카드결제금액,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 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사고 종결에 관한 보상 및 처리정보는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에 한함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조의3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02.9.23, 2002.12.18, 2004.6.30, 2005.7.19, 2005.11.30, 2006.3.16, 2006.11.16, 2007.12.28, 2009.6.24, 2009.12.31, 2010.7.27 2014.12.26, 2016.12.20> **신용공여의 범위**

1. (신용공여의 범위)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은행 대차대조표상 난내 및 난외 항목으로 한다.

계정	대분류	소분류
은행계정	대차대조표 난내 (대출채권)	원화대출금 <sup>1)</sup> , 외화대출금, 은행간외화대여금 <sup>2)</sup> ,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매입어음, 매입외환 <sup>3)</sup> , 팩토링채권, 신용카드채권, 직불카드채권,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콜론, 사모사채
	(유가증권)	CP(보증어음 포함), 대여유가증권, 공모사채 <sup>4)</sup> , 후순위수익증권 <sup>5)</sup>
	(기타)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sup>10)</sup> , 예치금
	난외	확정지급보증 <sup>6)</sup> , 미확정지급보증 <sup>7)</sup> , 자산유동화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원화대출약정, 외화대출약정, 역외외화대출약정, 배서어음,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매입약정
신탁계정 <sup>8)</sup>	대차대조표 난내 (대출채권)	대출금 <sup>1)</sup> ,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금전채권, 사모사채
	(유가증권)	매입어음, 신용카드채권, 공모사채 <sup>9)</sup> , 후순위수익증권 <sup>5)</sup>
	(기타)	여신성가지급금, 예치금
	난외	대여유가증권,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종금계정	대차대조표 난내 (대출채권)	할인어음, 할인무역어음, 팩토링어음, CMA할인어음, CMA할인무역어음, CMA팩토링어음,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지급보증대지급금
	(유가증권)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 포함), 운용리스자산(운용리스선급금 포함)
	(기타)	여신성가지급금
	난외	어음지급보증, 무역어음인수 담보배서어음매출

주: 1) 상업어음 할인 제외

2) 법 제37조제6항제3호, 동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시에 한함

3) 2002년 말까지 최초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D/A어음 매입은 “매입외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 제79조제3항제1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만기보유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공모사채(금융채를 포함)에 한함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중 제1종 수익증권을 제외한 것으로, 무액면인 경우에는 자산실사기관의 유동화자산평가액에서 제1종 수익증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

6) 입찰보증 제외

- 7) 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토록 되어 있는 선수금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중 은행의 환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미입금선수금 해당 선수금환급보증금액은 제외  
 8)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 신탁계정에 한함  
 9)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공모사채(금융채를 포함)에 한함  
 10) 미수미결제현물환 제외
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항목은 법 제35조에 의한 동일한 개인·법인 및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산출대상 및 이 규정 제79조 주체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산출기준'에서 정한 위험가중치 0% 적용 국가(이하 "위험가중치 0% 국가"라 한다)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나. 위험가중치 0% 국가 이외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현지통화표시 신용공여. 다만 현지통화표시 채무 범위내에 한한다.  
 다. 자행예금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1)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한 공공기관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또는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또는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인 기관 또는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마. 위험가중치 0% 국가의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 은행에 의해 보증된 신용공여  
 바. 위험가중치 0% 국가의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투자증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리스크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 등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와 해당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에 의해 보증된 신용공여  
 사. 위험가중치 0% 국가 이외 국가의 은행에 대한 잔존만기 1년이내의 신용공여와 동 은행의 보증을 받는 잔존만기 1년이내 신용공여  
 아. 국제개발은행(IBRD, IADB, AsDB, AfDB, EIB)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 은행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자. 위험가중치 0% 국가의 공공부문에 대한 신용공여, 동 부문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부문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차. 기타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  
 (1) 내국신용장어음 매입  
 (2) L/C발행에 의한 환어음매입 등  
 카. 정부가 출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감독과 건전성규제를 받는 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동사에 대한 신용공여
3. (신용공여산출방법) 신용공여금액은 대차대조표 해당 항목에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난외항목의 경우 대차대조표 난외에 계상된 금액에서 2.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45.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하는 형식의 신용공여는 다음과 같이 신용공여를 계상한다.

가. 자산보유자(Originator)와 유동화전문회사간 자산매매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자산유동화 관련 용어 정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나. 매각거래인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각 채무자(Obligor)에 대한 채권잔액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해당 채무자에 신용공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입거래인 경우에는 자산보유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 다만, 장래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리볼빙 방식 유동화 포함)에는 차입거래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5. (신용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용공여를 계상한다.

### 가. 보장매입자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가)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및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 신용사건 발생시 수취하기로 한 계약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이 경우 보장매도자는 2.에서 정한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증권업자, 종합금융회사에 한한다.

(나) 채권 형태의 신용파생상품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기 수취한 채권매각대금을 차감한다. 다만, 신용보장 대상 자산의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수목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자산이 2.에서 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1차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 : 다수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자산 채무자의 신용공여금액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3) 2차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 : 2차 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매입한 금융기관은 1차 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동시에 보유하거나 또는 1차 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을 이전할 수 있다.

(가)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다수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두 번째로 낮은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나) 1차 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4) 신용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신용보장 대상 자산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신용보장대상 자산과 신용파생상품의 표시통화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92% 상당액에 대하여 신용위험 이전을 인정한다.

### 나. 보장매도자

(1)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가)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 :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45.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한다.

(나) 채권형태의 신용파생상품 : 채권매입 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신용파생상품 부분)와 보장매입자(일반채권 부분)에 대한 신용공여로 각각 계산한다.

(2) 신용보장 대상 자산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신용보장대상자산(1차 부도종결조건인 경우) 또는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1개의 자산을 제외한 모든 신용보장 대상 자산(2차 부도종결조건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한다.

## 6. (예대상계)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85. 가.에서 정한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상계후 잔액을 신용공여액으로 할 수 있다.

7.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는 다음의 자산을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분류한 국가신용도 5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및 정부지분 50% 이상인 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중 담보해당금액
- 나. Standard & Poor's, Moody's, Fitch IBCA 등 국제전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중 담보해당금액
- 다.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목적물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신용공여중 양도담보금액의 80% 해당금액
- 라. 수출대금이 해외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되고 동 수출대금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양도담보를 취득한 신용공여중 담보해당금액
- 마.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수출계약과 관련된 선수금환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중 대출금액이내 범위에서의 선수금환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금액
- 바.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에 에치되어 관리되는 선수금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중 기입금된 선수금액

8.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특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경우 동 공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 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9. <삭제 2014.12.26>

10. (청산은행에 대한 특례)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에 따른 청산은행의 청산자금(청산은행이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금을 그의 본점에 대하여 한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 · 법 제35조의2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영업기금 차감항목 및 신용공여한도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2.20>

**금융투자업규정 제8-33조(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336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23과 같다.

<별표 23> 종합금융회사의 신용공여<sup>1)</sup>의 범위(제8-33조 관련)

대분류	소분류
B/S 난내	
(대출채권)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콜론, 할인어음(무역 · 팩토링어음 포함), CMA할인어음(무역 · 팩토링어음 포함),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매입외환, 외상채권매입, 환매조건부매수
(증권)	사모사채, 자회사 <sup>2)</sup> 발행회사채, 대여증권
(리스채권) <sup>3)</sup>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금금 포함), 운용리스자산(운용리스선금금 포함)
(기타)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주석 <sup>4)</sup>	확정지급보증 <sup>5)</sup> , 미확정지급보증, 외화대출약정, 역외외화대출약정, 어음지급보증, 무역어음인수, 담보배서어음매출

주: 1)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 00>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0%, 10% 또는 20%인 자산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다만,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경우(“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산출시에는 동 자회사가 2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일지라도 동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신용공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2) 종합금융회사 자회사

3) 리스채권의 신용공여액은 금융리스, 운용리스 모두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함

4)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 00>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에 따른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을 산출함

5) 입찰보증 제외

### 3.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대출금 등의 연체 현황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input type="radio"/> 해당 개인 <input type="radio"/> 해당 기업 및 법인 <input type="radio"/> 관련인 <sup>주)</sup>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input type="radio"/>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input type="radio"/>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대위변제, 대지급 발생 현황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현황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어음·수표 거래정지 처분 또는 부도거래 현황	위와 같음	<input type="radio"/> 해당 기업 및 법인 <input type="radio"/> 관련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매매·증개 관련 정보	금융투자업자 중 등록정보 보유기관	<input type="radio"/> 해당 개인 <input type="radio"/> 해당 기업 및 법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영 [별표 2]의 금융질서 문란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input type="radio"/> 해당 개인 <input type="radio"/> 해당 기업 및 법인 <input type="radio"/> 관련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해당 개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주)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한함

#### 4.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증자 및 사채발행계획 확정내용	협조기관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업 및 법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li> <li>○ 주채무계열 및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li> </ul>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li> <li>○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li> </ul>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 실적 등과 영 [별표 2]에 의한 신용능력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해당 기업 및 법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5. 기술신용정보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기술신용정보(기술신용평가가액과 이와 관련된 평가의견은 제외한다.) <sup>주)</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보증기금</li> <li>○ 신용조회회사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li> </ul>	해당 기업 및 법인	등록 사용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기업 및 법인의 기술신용등급, 신용공여 현황 및 신용도판단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위와 같음	위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보증기금</li> <li>○ 신용조회회사 중 기술신용 정보 등록기관</li> </ul>

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영 제2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집중

## 6. 공공정보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경제법령 위반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위반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li> <li>○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li> </ul>
-사망자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의 변경정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해당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23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보유정보 등록 시는 당해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정함</li> <li>○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보유정보 등록시기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li> </ul>	위와 같음
-국외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정보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회생 · 간이회생 · 개인회생 결정, 파산 · 면책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말소 결정 등 법원의 재판 · 결정정보 -국세 · 지방세 · 관세의 체납정보 -과태료 · 사회보험료 ·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 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규정에 의한 채무제조정 약정정보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정보 -그밖의 공공정보(특허권,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등)	위와 같음	해당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정함</li> <li>○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 보유정보 등록시기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li> </ul>	위와 같음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납부에 관한 정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위와 같음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신용조회회사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정보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액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신용조회회사(단,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제5조제2항제1호 관련)  
(앞면)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90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법인의 목적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p> <p>금융감독원장 귀하</p> <p>※ 구비서류</p> <p>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p> <p>2. 재무제표</p> <p>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p> <p>4. 그 밖에 별표 1의2의 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p>		

(뒷면)

대표자 및 입원에 관한 사항	
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정보처리 · 정보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계
그밖의 시설	

[별지 제2호 서식] 신용정보업 변경허가신청서(제5조제2항제2호 관련)

신용정보업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대표자의 성명		신용정보업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상호		허가번호
	본점 소재지		
변경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제5조제2항제1호 관련)  
(앞면)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90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법인의 목적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p> <p>금융감독원장 귀하</p> <p>※ 구비서류</p> <p>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p> <p>2. 재무제표</p> <p>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p> <p>4. 그 밖에 별표 1의2의 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p>		

(뒷면)

대표자 및 입원에 관한 사항	
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정보처리 · 정보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계
그밖의 시설	

[별지 제2호 서식] 신용정보업 변경허가신청서(제5조제2항제2호 관련)

신용정보업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대표자의 성명		신용정보업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상호		허가번호
	본점 소재지		
변경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별지 제2의2호 서식] 양도·양수·분할·합병(예비인가, 인가) 신청서(제5조제2항제3호 관련)

양도·양수·분할·합병(예비인가,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0일)			
양수 합병 법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원에 관한 사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법인의 목적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양도 피합병 법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원에 관한 사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 감사				
	본점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법인의 목적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존속 법인	상호	구분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원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법인의 목적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정보업의(양도, 양수, 분할, 분할합병, 합병)의(예비인가, 인가)를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2. 재무제표 3. 사업양도·양수, 분할·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그 밖에 별표 1의2의 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수수료 _____ 없음						

## [별지 제2의3호 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제4호 관련)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90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신청인 에 관한 사항	집중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허가받고자 하는 집중기관의 유형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집중관리·활용하려는 신용정보의 범위		
교환대상자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0000년 00월 00일</p> <p>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p>		
금융감독원장 귀하		
<b>* 구비서류</b> 1. 정관 또는 정관(안) 2.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3. 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4. 그 밖에 별표 1의2의 제2호에 따른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수수료 없음

## [별지 제3호 서식] 신용정보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서(제9조제1항 관련)

신용정보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대표자의 성명		신용정보업 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상호		허가번호
	본점소재지		
변경 사항	1. <input type="checkbox"/>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 <input type="checkbox"/> 상호 등 정관의 변경		
변경 사유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0000년 00월 00일</p> <p>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p>			
금융감독원장 귀하			
<b>* 구비서류</b>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9조제2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신용정보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 보고서(제10조 관련)

신용정보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 보고서			처리기간 15일
보고자	대표자의 성명		신용정보업 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상호		허가번호
	본점소재지		
변경 사항	1.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중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계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변경 사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별지 제5호 서식] 지배주주 변경승인신청서(제11조 관련)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상호(성명), 업종, 국적,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본점소재지(주소지) 등
- 2.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 현황(주식수, 지분율, 취득방법, 취득금액 등)
- 3.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 할 주식의 취득계획(발행회사명 및 개황, 주식취득 목적,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수, 지분율, 예정시기, 취득방법 등)

■ 첨부서류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1부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가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1부
5.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전 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부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 변동내역서 포함) 및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부
7. 그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신용정보업(휴업, 폐업) 신고서(제12조 관련)

신용정보업(휴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호		허가번호	
본점소재지		허가일자	
휴업기간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폐업연월일	0000년 0월 0일
사유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휴업, 폐업)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0000년 00월 00일</p> <p>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p> <p>금융감독원장 귀하</p> <p>※ 첨부서류</p> <p>신용정보업 허가증</p>			
		수수료	
		없음	

## [별지 제7호 서식]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신고서(제13조제2항 관련)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신고서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하고자 하는 업무 및 업무방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				
<p>금융감독원장 귀하</p> <p>※ 구비서류</p> <p>1. 겸업업무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전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p> <p>2. 겸업업무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p> <p>3. 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p>				
				수수료
				없음

## [별지 제7의2호 서식]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승인 신청서(제13조의2제4항 관련)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상호	
	주소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승인받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p>「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p> <p>금융감독원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겸업업무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조회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li> <li>겸업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li> <li>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li> <li>신용조회회사가 의뢰를 받고자 하는 공공목적의 조사·분석 등의 업무의 내용</li> </ol>		<p>수수료</p> <p>없음</p>

## [별지 제8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

신용정보회사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성명		겸직대상법인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업종	
	직위			대표자	
	연락처			법인번호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					
겸직 사유					
<p>「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p> <p>금융감독원장 귀하</p>					
<p>※ 구비서류</p>					<p>수수료</p> <p>없음</p>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15.9.11.>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2015.9.11.>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2의3호로 이동 <2015.9.11.>

[별지 제12호 서식]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심의·결정 사항의 보고(제28조 관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심의·결정 사항의 보고		처리기간 15일
협의	1. 협의·심의·결정 일자 <input type="checkbox"/>	
심의	2. 협의·심의·결정 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결정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협의·심의·결정과 관련된 서류	수수료 없음
----------------------------	-----------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서(제30조제2항 관련)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록대상자	자격 구 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input type="checkbox"/>	자격증 번호 ( )	
		<input type="checkbox"/> 신용관리사	<input type="radio"/> 연수기관 :	
	성명	<input type="checkbox"/> 연 수	<input type="radio"/> 연수기간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E-mail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용정보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부(제30조제4항 관련)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E-mail		
소속회사		
등록번호		등록일자
자격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용관리사	자격증 번호 ( ) 합격일( 년 월 일) _____회차
	<input type="checkbox"/>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연수기관:</li> <li><input type="radio"/> 연수기간:</li> </ul>
주소		
【변경 사항】		
연 월 일	내용	
.....	.....	
.....	.....	
.....	.....	
.....	.....	

## [별지 제15호 서식]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제40조제1항 관련)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

## 귀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당사가 년 월 일(통지요구일)부터 최근 3년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직접 제공한 경우에 한함)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이용내역

이용날짜	이용목적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 □ 제공내역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 기재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내용 별도 첨부

본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대표이사 (인)

담당자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영업점 주소	

## &lt;첨부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 작성 방법&gt;

- 이용 및 제공된 신용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신용등급(평점)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으로 구분
  - 종류별로 세부설명을 기술할 것
  
- 이용목적에 대한 안내
  - 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동의에 근거한 이용 또는 다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구분하여 명시
  
- 제공받은자의 범위
  - 이용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공공기관, 그밖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본인 등 당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 기재
  
- 제공한 목적에 대한 안내
  - 여신심사, 신용카드발급, 신용상황변동확인, 신용정보 집중(수집), 채권추심, 신용조사, 고용, 민원처리, 재판, 수사, 본인조회 등으로 구분
  - 종류별로 세부설명을 기술할 것
    - (예) 여신심사 : 대출, 지급보증 등의 신규 취급, 기간연장, 한도변경, 여신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
  
- 그밖의 안내 사항
  - 그밖에 본 통지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내용 기재

## [별지 제16호 서식] 신용정보 시정요청서(제42조 관련)

신용정보 시정요청서			처리기간 : 15일
요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및 정정청구기관			
시정요청내용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p>			
<p>금융감독원장 귀하</p> <p>※ 첨부서류</p> <p>1.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1부 2.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1부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p>		수수료	없음

## [별지 제17호 서식]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제43조 관련)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처리기간
			15일
보고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
	대표자의 성명		
	본점 또는 기관 소재지		
보고 내용	1. 시정요청 내용		
	2. 발생사유		
	3. 시정조치 내용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_____ 서명 또는 인</p> <p>금융감독원장 귀하</p>			
			수수료
			없음

## [별지 제18호 서식]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누설신고서(제43조의5 관련)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누설신고서		처리기간 : 즉시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 인등록번호(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
본점 또는 기관의 소재지		대표자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누설된 시점		
누설 경위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관련한 피해구제 절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b>※ 구비서류</b> 1. 누설경위와 관련한 증거서류 등 관련문서 2.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관련한 증빙서류 등 관련문서		수수료  없음

## 2

##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정 2008. 5. 6  
개 정 2009. 9. 30  
개 정 2011. 9. 30  
개 정 2013. 1. 29  
개 정 2015. 11. 25  
개 정 2016. 7. 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연차보고서)** 규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2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규정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15.11.25.>**

**제4조 삭제 <2015.11.25.>**

**제5조 삭제 <2015.11.25.>**

**제5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보고)** ① 규정 제43조의6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보고 서식은 <별지 제3호의2 서식>과 같다.

② 규정 제43조의6에 따른 등록기관의 보고 서식은 <별지 제3호의3 서식>과 같다.

**제6조(회계처리 불일치 보고서)** 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른 불일치의 내용과 사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보고서)** ①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47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업무보고서는 회계연도말은 결산 결과, 매분기말은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부칙<2008.5.9>**

이 세칙은 200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은 201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 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9.30>**

이 세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9>**

이 세칙은 201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5>**

이 세칙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5호 서식> 업무보고서는 2016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  
서부터 적용한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

문서번호: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00검사국장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 및 대표이사, 이사회에 대한 보고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1. 법 제20조제4항 각호의 업무수행 실적		
구분	이행일(기간)	주요 내용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 구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신용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여부 점검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 실적		
보고 주기		
보고 내역		
구분	보고일	주요 보고사항 및 후속조치 등
대표이사		
이사회		

※ 첨부서류

1.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보고서
2. 업무수행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첨부서류 1과 중복되는 경우 생략 가능)

0000년 00월 00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서명 또는 (인)

&lt;별지 제2호 서식&gt;

폐업에 따른 보유정보 처리 결과 보고서				처리기간 15일
제출자	성명(대표자)		신용정보업 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상호 또는 명칭		허가번호	
	본점 및 지점 소재지		폐업일자	
			폐업사유	
처리 내용	1. 대상자료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input type="checkbox"/> 그밖에 신용정보가 수록·보관된 파일등  2. 처리일자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3. 처리방법 :  4. 처리결과 :  ※ 입회인(소속, 직위, 성명)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에 따른 보유정보 처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제출자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의2 서식>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보고			
<p>문서번호:</p> <p>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00검사국장</p>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2제6항에 따라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등을 확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p>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모집경로 등 확인 사항(법 제41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확인 사항)			
구분	확인일 (대상기간)	주요 내용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목적 달성, 이용기간 종료 등에 따라 적절히 파기하였는지 여부		
개인신용정보를 위탁한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첨부서류

1. 모집경로 등 확인의무 이행에 관한 증빙서류
2.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적절히 보관, 파기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개인신용정보를 위탁한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0000년 00월 00일

0000 대표이사 \_\_\_\_\_ 서명 또는 (인)

&lt;별지 제3호의3 서식&gt;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확인 등 보고사항 보고				
문서번호: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00검사국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알린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자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영 제35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내역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상호	보고일	주요 내용		

※ 첨부서류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등록기관에 보고한 서류의 사본		
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불일치 사유보고서				
보고자	상호		신용정보업 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대표자		허가번호	
	본점 소재지			
보고 내용	1. 재무제표와 업무보고서 불일치 내용  2. 불일치 사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보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이하 별지 서식(업무보고서) 및 별표(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는 생략